의정활동보고서

제312회 정례회(2019. 11. 6 ~ 12. 20)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기해년이 시작된 지도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밤낮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도민의 뜻을 대변하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올리며, 올 한 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어 오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경 우리 지역을 강타한 두 차례의 태풍으로 도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

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내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지역이 조기에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진 판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는 아직까지 감염사례가 없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양돈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역량을 고려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도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종합대응책을 마련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를 농업분야 체질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한 태풍과 가뭄 등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및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14일에는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많은 수험생과 가족들이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설계하며 공부에 매진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수능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4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년도 예산 및 2019년도 추경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민생현장 중심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적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있어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질문을

통해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민의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겨울철 화재예방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3백만 도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장 경 식

차 례

Ⅰ. 개 황 ····· 11

Ⅱ. 의사일정 ····· 13

Ⅲ. 의안처리 ····· 26

Ⅳ. 민원처리 ····· 27

Ⅴ. 본회의 보고사항 ····· 29

Ⅵ. 5분 자유발언 ····· 36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36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39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44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48

□ 윤승오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51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54

Ⅶ.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7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57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68

□ 김하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81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95

□ 김성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105

□ 남용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118

부 록

□ 조 례 안(38건) ····· 133

□ 규 칙 안(1건) ····· 327

□ 예 산 안(4건) ····· 331

□ 결 의 안(2건) ····· 349

□ 기 타 안(1건) ····· 353

□ 동 의 안(4건) ····· 357

Ⅰ.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12회 정례회는 2019년 11월 6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2월 20일까지 45일간의 회기 동안 5차의 본회의와 35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1월 6일(수) 14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목) 11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한 후, 세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2일(금) 14시에 개의하여 어제에 이어 세 분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을 들은 후 폐회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월) 11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두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45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2020년도 예산 및 2019년도 추경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에도 열악한 지방재정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민의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소중한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13회 임시회로 2020년 1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다. 집회일시 : 2019년 11월 6일(화)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9년 11월 6일 ~ 12월 20일(45일간)

나. 개의횟수

ㅇ 본회의 : 5회(누계 115회)

ㅇ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35	3	5	4	5	3	3	4	8	-
누 계	603	49	78	73	64	55	57	66	86	75

※ 누계는 제11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6(수) 14:00 (제1차)	○ 5분 자유발언(박미경,김상조 의원) □ 안건처리 ○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문화환경위원회)	
11.21(목) 11:00 (제2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하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11.22(금) 14:00 (제3차)	○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김성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남용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9(월) 11:00 (제4차)	○ 5분 자유발언(김영선·박영환 의원)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20(금) 11:00 (제5차)	○ 5분 자유발언(윤승오·김상헌 의원) □ 안건처리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20(금) 11:00 (제5차)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안(재정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1(목) 16:20 (제1차)	□ 안건처리 ○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12. 9(월) 13:30 (제2차)	□ 안건처리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12. 16(월) 11:00 (제3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5(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투자유치실 소관)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변인 소관)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11. 26(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조정실 소관) ㅇ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11. 27(수) 11:00 (제3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11. 28(목) 10:00 (제4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직극행정 운영 조례안 ㅇ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2(목) 10:00 (제5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래전략기획단 소관)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ㅇ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ㅇ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20~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기획조정실 소관) ㅇ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ㅇ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환동해지역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ㅇ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5(월) 10:00 (제1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치행정국 소관)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정책관 소관)	
11. 26(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관 소관)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1. 27(수) 11:00 (제3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복지건강국 소관)	
12.9(월) 14:00 (제4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공무원교육원 소관)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성책관 소관) ㅇ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어싱가족정책관 소관)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ㅇ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문화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5(월) 10:00 (제1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국·경북도서관 소관)	
11. 26(화) 10:00 (제2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ㅇ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11. 27(수) 00:07 (제3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문화환경위원회 소관)(계속)	
12. 9(월) 14:00 (제4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소관)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ㅇ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19(목) 10:40 (제5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자산매각 관련 특별업무보고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5(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11. 26(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 동의안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업기술원 소관)(계속)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계속) ㅇ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농축산유통국 소관)(계속)	
12. 9(월) 14:00 (제3차)	□ 안건처리 ㅇ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ㅇ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ㅇ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ㅇ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ㅇ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ㅇ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6(화) 10:30 (제1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재난안전실 소관)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11. 27(수) 10:30 (제2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12. 9(월) 14:00 (제3차)	▢ 안건처리 ㅇ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ㅇ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ㅇ 201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재난안전실 소관) ㅇ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ㅇ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건설도시국 소관) ㅇ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소방본부 소관)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5(월) 11:00 (제1차)	▢ 안건처리 ㅇ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ㅇ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6(화) 11:00 (제2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7(수) 11:00 (제3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ㅇ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ㅇ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9(월) 14:00 (제4차)	▢ 안건처리 ㅇ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ㅇ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ㅇ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ㅇ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1. 29(금) 10:30 (제3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조정실 소관 • 자치행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 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2. 2(월) 10:30 (제4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 소관 • 재난안전실·소방본부 소관 • 문화관광체육국·농업기술원 소관	
12. 3(화) 10:30 (제5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감사관·교육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 소관 • 일자리경제산업실·농축산유통국·건설도시국 소관	
12. 4(수) 10:30 (제6차)	□ 안건처리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대변인·의회사무처 소관 • 동해안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해양수산국 소관 • 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 소관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고
12. 5(목) 10:30 (제7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ㅇ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2. 6(금) 0:02 (제8차)	▢ 안건처리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ㅇ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2. 18수) 10:30 (제9차)	▢ 안건처리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산업실 소관 • 문화관광체육국·농축산유통국·환경산림자원국·농업기술원·보건환경연구원·의회사무처 소관 • 여성가족정책관·교육정책관·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공무원교육원 소관 •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12. 19(목) 10:30 (제10차)	▢ 안건처리 ㅇ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동해안진략산업국(총무과·종합민원실)소관(계속) ㅇ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ㅇ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ㅇ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계류 ©	비고
				계 ⓐ	가결		부결	폐안			
					원안	수정					
계		63 (413)	60 (405)	59 (403)	56 (369)	3 (32)	0 (2)	0 (0)	1 (2)	3 (8)	
조례안	소 계	38 (225)	38 (221)	38 (221)	37 (201)	1 (19)	0 (1)	0 (0)	0 (0)	0 (4)	
	의회 제안	26 (152)	26 (148)	26 (148)	25 (139)	1 (9)				(4)	
	도지사 제출	7 (48)	7 (48)	7 (48)	7 (40)	(8)					
	교육감 제출	5 (25)	5 (25)	5 (25)	5 (22)	(2)	(1)				
규칙안		1 (3)	1 (3)	1 (3)	1 (3)						
예산·결산		4 (20)	4 (20)	4 (20)	2 (11)	2 (9)					
동의·승인		6 (56)	5 (55)	4 (53)	4 (48)	(4)	(1)		1 (2)	1 (1)	
건의안		1 (2)	1 (2)	1 (2)	1 (2)						
결의안		2 (32)	2 (32)	2 (32)	2 (32)						
기타안		11 (75)	9 (72)	9 (72)	9 (72)					2 (3)	

※ ( )안은 제11대(제301회~제312회) 의회 누계

Ⅳ.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11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단위 : 건)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5 (37)	2 (10)		(2)	1 (6)	2 (3)	(1)	(10)	(2)	(3)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4)			(2)			(1)	(1)		
행 정 보건복지	2 (8)	2 (7)								(1)
문 화 환 경	(9)							(9)		
농수산	(7)	(3)							(2)	(2)
건 설 소 방	1 (6)				1 (6)					
교 육	2 (3)					2 (3)				
특 별 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이송	
계	4 (35)	4 (35)				2
의회운영						
기획경제	(4)	(4)				
행 정 보건복지	2 (7)	2 (7)				1
문화환경	(9)	(9)				
농 수 산	(7)	(7)				
건설소방	(5)	(5)				1
교 육	2 (3)	2 (3)				
특별위원회						

※ ( )내는 제11대 의회 실적

Ⅴ.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63건(조례안 38, 규칙안 1, 동의안 6, 예산안 4, 건의·결의안 3, 기타안 11)

2. 처리 의안 : 60건

○ 원안가결 의안 : 56건(조례안 37, 규칙안 1, 동의안 4, 예산안2, 건의·결의안 3, 기타안 9)
○ 수정가결 의안 : 3건(조례안 1, 예산안 2)
○ 철　　회 의안 : 1건(동의안 1)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38건(원안가결 37, 수정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1	2019.12.16.	의회운영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019.12. 9.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11.28.	최병준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
6	〃	조주홍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	남영숙 의원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8	2019.11.28.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9	〃	임무석 의원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	김준열 의원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
11	〃	박판수 의원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이선희 의원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3	〃	오세혁 의원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	김하수 의원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
15	〃	박창석 의원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
16	〃	윤승오 의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	도기욱 의원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	박권현 의원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
19	〃	이종열 의원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
20	〃	도지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19.10.25.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건명	비고
23	2019.10.25.	박태춘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24	〃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	김영선 의원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
26	〃	박판수 의원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
27	〃	김대일 의원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28	〃	도지사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9	〃	〃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2019. 9.11.	임미애 의원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 폐지조례안	〃

○ 규 칙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9.11.28.	박차양 의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 동 의 안 : 6건(원안가결 5, 철회 1, 계류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9.11.28.	교육감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원안가결
2	2019.11.11.	도지사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9.10.25.	〃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
4	〃	교육감	2020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류
5	〃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철회
6	〃	〃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 예 산 안 : 4건(원안가결 2, 수정가결 2)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9.11.28.	도지사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2	〃	교육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3	2019.11.11.	도지사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4	2019.10.25.	교육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 건 의 안 : 1건(원안가결 1)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9.12. 9.	농수산 위원장	기후변화 및 농지범용화에 대응한 배수개선시설 설계기준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 결 의 안 : 2건(원안가결 2)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9.12.16.	의회운영위원장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	2019.12. 9.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 기 타 안 : 11건(원안가결 9, 계류 2)

연번	접수일	발의자	안 건 명	비고
1	2019.12. 9.	의장	2019년도 경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원안가결
2	〃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기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4	2019.11.29.	배진석 의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매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계류
5	〃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 매각과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	〃
6	2019.11.21.	교육감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원안가결
7	〃	도지사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
8	2019.11. 6.	의장	2019년도 경상북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9	〃	〃	휴회의 건	〃
10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11	〃	〃	제312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접수일자 : 2019. 9.11.(제311회 임시회)
- 처리일자 : 2019.12.20.(제312회 제2차 정례회)

Ⅲ. 조례·규칙 공포 사항 : 39건(도 29, 교육청 9, 도의회 1)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1	제4276호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2019. 12. 30.	도
2	제4277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	제4278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
4	제4279호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	제4280호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	〃
6	제4281호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	〃
7	제4282호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
8	제4283호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9	제4284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0	제4285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
11	제4286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
12	제4287호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3	제4269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2. 26.	교육청
14	제4270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15	제4271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	〃	〃
16	제4272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7	제4273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8	제4274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9	제4275호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0	제4288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2020. 1. 2.	〃

연번	공포번호	자치법규명	공포일	비고
21	제4289호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2020. 1. 2.	교육청
22	제79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2019. 12. 30.	도의회
23	제4290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1. 9.	도
24	제4291호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5	제4292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
26	제4293호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	〃
27	제4294호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	〃	〃
28	제4295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29	제4296호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	〃
30	제4297호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1	제4298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	〃
32	제4299호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
33	제4300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
34	제4301호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5	제4302호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	〃
36	제4303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7	제4304호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
38	제4305호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
39	제4306호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	〃	〃

Ⅵ. 5분 자유발언

□ 2019년 11월 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박미경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 세계문화유산과 청정자연환경을 즐기는 생활체육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관광정책수립과 시행 촉구 관련 ≫

바른미래당 소속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북 북부권역의 세계문화유산과 청정 자연환경이 결합된 관광산업의 동반 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청이 2016년 2월 안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도청 이전에 따라 안동을 비롯하여 7개 시·군의 주민들은 낙후된 북부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한지 4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부푼 꿈은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기 전 2015년 북부권의 인구는 48만 명이었습니다. 도청이전 이후 2018년 인구는 47만 명으로 약 7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인구유입은 미미하고 북부권 시·군에서의 유입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동시와 예천군의 구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안동시 인구 9천 명이 신도시로 이주하였고, 예천읍의 인구가 호명면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구도심의 공동화와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구도심의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워라밸의 추세에 따라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관광정책은 관광지 중심지에서 도심 관광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권의 주요 도심이 관광지로 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되어야 합니다.

안동을 북부권역 관광클러스터의 행정거점으로 하여 세계인이 경북 북부권을 찾아오는 관광클러스터가 가동되어진다면 북부권 전체 관광업이 동반 성장할 것입니다.

안동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해 탈춤축제에 100만 명, 하회마을 190만 명 등 총 760만 명이 찾는 명실상부한 북부권의 최대 관광도시입니다. 또한 영국 왕실이 두 번이나 방문했던 하회마을과 도산·병산서원, 고택 등 많은 전통문화유산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곧 관광객 천만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광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의 경제는 호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의 23개 시·군 중 안동시의 고용률은 19위, 무역수지는 22위로 나타나 봉화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별 생산량에서도 관광업과 관련되는 숙박·음식업의 GRDP가 도·소매업, 농림어업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증가하는 관광객이 고용확대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계문화유산과 청정 자연환경을 결합한 생활체육과 스포츠 동호인들이 머물고 즐기는 관광상품 개발과 정책추진을 촉구합니다.

안동은 안동댐, 임하댐, 그리고 낙동강이 있습니다. 수자원을 활용한 요트, 카누 등 수상스포츠 인프라 구축, 또는 철인 3종 경기, 마라톤 대회, 그리고 자전거 마라톤 대회인 그라폰 대회 등을 유치하거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코스 개발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활체육과 동호인들이 즐기는 스포츠는 대회 당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필히 하루 전에 방문하여 사전답사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가족들까지 함께 오게 되면 수만 명이 먹고 자는, 그리고 머무는 관광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에게 머물기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대형 이벤트를 만들고 그 이벤트 속에서 구도심을 활용한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심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안동을 비롯한 북부권 7개 시·군을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과 청정 자연환경을 즐기는 생활체육과 스포츠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1월 6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상조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한 경북형 마을돌봄터 마련 촉구 관련≫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가 추진하는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를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공공돌봄으로 확대해줄 것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은 학교의 방과 후 돌봄과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돌봄을 주도하는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방과 후 돌봄은 돌봄학급 수 편성이 부족하고 이용시간에 대한 제약으로 학부모들이 이용불편을 겪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느끼는 돌봄 공백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학교의 방과 후 돌봄은 주로 6시경에 종료되고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다 보니 추가 돌봄이 필요한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 등 다른 대체안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일반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 강화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북형 마을돌봄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 7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표 1을 봐 주십시오.

<표 1> 경북도내 초등학생 학교 방과후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초등학생	소계	방과후돌봄 초등학생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131,374명	24,637명	17,755명	5,725명
100%	17.9%	13.5%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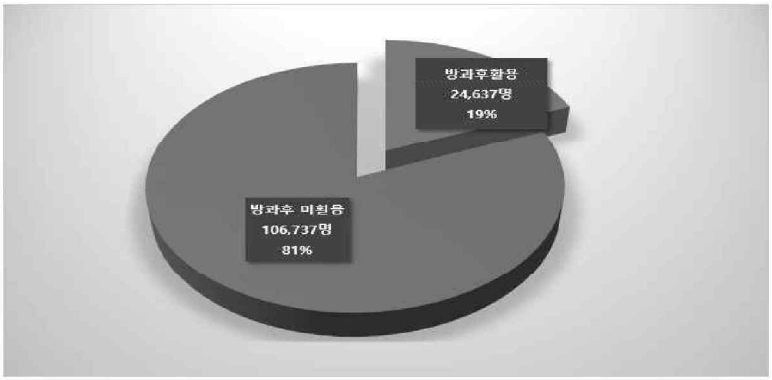

보는 바와 같이 경북 도내 초등학생 13만 2,000여 명 중 학교 방과 후 돌봄은 1만 8,000명, 지역아동센터 한 6,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8%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최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경상북도 마을기반 방과 후 돌봄서비스 효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돌봄 공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기간은 방학 때입니다, 35%. 학원 또는 돌봄 종료 후 아이 혼자 있는 시간이 약 33%로 조사되었으며, 방과 후 돌봄 종료 후 학부모의 귀가 시간 차로 인한 돌봄 공백으로 추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약 41%, 오후 6시에서 8시 30%였습니다.

돌봄을 이용하는 자녀가 학교 정규수업 이후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으로 초등 돌봄교실 등 돌봄기관이 60%로 가장 많았으며,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 공간을 마련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장소에 대한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안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약 52%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의 유휴교실이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안전한 돌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밖에 설치하고 있는 경북형 마을돌봄터가 이런 학부모들의 요구에 적합한 장소인지, 돌봄 공백에 따른 추가 돌봄을 해소할 수 있을지, 보건복지부는 왜 초등학교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든 것인지 의문입니다.

경북도에서 추진한 2019년 마을돌봄터 7개소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밖의 장소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표 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2> 경북형 마을돌봄터 설치 현황(개소완료 :4, 개소예정 3)

시군	센터명	설치 장소	운영형태	개소일
포항	구룡포 마을돌봄터	임대건물(농협은행)	직영	4.10
영주	희망나무 마을돌봄터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직영	5.30
구미	도량 마을돌봄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위탁	9.2
경주	안강 행복 마을돌봄터	안강 청소년문화의 집	직영	9.6
영덕	영덕군 마을돌봄터	영덕군 블루센터	미정	10월 예정
안동	행복안동 마을돌봄터	화성 드림파크 관리동 3층	미정	10월 예정
영양	영양군 마을돌봄터	원광어린이집	미정	12월 예정

본 의원이 조사한 경북 도내 23개 시·군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은 총 3,200여 개로 파악되었습니다.

표 3을 보십시오.

<표3> 23개 시군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및 유휴교실 현황

구분	총학생수	방과후돌봄		유휴교실		
		학생수	교실	총교실수	총학급수	유휴교실수
합계	131,374	17,755	902	9,655	6,433	3,222

이에 본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마을돌봄터 설치를 적극 요구합니다.

또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마을돌봄터는 시·군이 직접 운영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학교는 아동과 학부모가 신뢰하는 공간이면서, 접근성이 좋은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학부모들은 돌봄의 가장 적합한 장소로 학교 유휴교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마을돌봄터를 설치하는 경우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즉시 이용할 수 있으며, 방과 후 돌봄과 연계 시 이동 동선이 짧아 안전하게 추가 돌봄에 참여하여 학교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간기관에 위탁하거나 시·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학교 밖 시설에 마을돌봄터를 설치할 경우 돌봄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소 임대료를 절감하여 돌봄 프로그램 및 간식 등 보다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돌봄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이 없이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마을돌봄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2월 9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김영선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 고령가야의 고분 발굴 및 문화 계승 관련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또한 찬란한 신라문화를 가능하게 하고 일본 스에키 문화를 만든 가야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2017년 2월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2018년 1월 경남, 전북과 함께 7개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6가야 중 대가야, 성산가야와 고령가야가 있었습니다만 7개 고분군 중 경북지역 고분군은 아쉽게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가야는 경북 고령, 성산가야는 경북 성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고령가야는 어디인지 아시는지요?

전면에 사진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고령가야 오봉산 고분군 전경

고령가야국 태조 김고로왕 추모제

도굴구가 있는 훼손된 고분

파헤쳐져 훼손된 고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고령가야를 옛 함창군, 지금의 상주시 함창읍 일대에 있었던 고대국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창읍 증촌리에는 경북 지정 문화재 제26호로 지정된 고령가야 태조 고로왕릉이 있고, 전국적으로 3만5,000여 명의 함창 김씨 후손들이 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3일이 되면 함창 김씨 고로왕 후손 300여 명이 모여 왕릉에서 대제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대제를 봉행하는 왕릉은 조선 선조 25년 경상도 관찰사 김수와 함창현감 이국필 등이 무덤 앞의 묘비를 통해 가야왕릉임을 확인하고 숙종 38년에 왕명으로 묘역을 정비한 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고령가야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이 있고 후손들이 있으며, 매년 추모제를 봉행하는 왕릉이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상주시 고령가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무관심으로 고령가야의 유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상주시 함창읍 신흥리를 비롯해 이안면, 공검면 일원에 있는 오봉산 고분군에서 이미 618기의 고분이 확인되었고 약 700여 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이미 많은 고분들에서 도굴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추진한 '가야문화권 중장기 종합 조사·연구 계획'에는 고증된 유물이 부족해 상주의 고령가야가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안일한 경북의 문화정책으로 고령가야라는 귀중한 고대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일피일 발굴을 미루는 사이에 고분은 도굴

되고 가야사를 다시 조명할 수 있는 유물들과 고령가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들이 넓어 물자가 풍부하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로 예부터 살기 좋은 상주시는 경상감영이 있었던 경상도의 대표도시입니다. 고령가야는 살기 좋은 상주에 있었던 가야제국 중 하나입니다. 학계의 지배적 견해가 그러하고 고령가야의 태조 김고로 왕릉과 그 후손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후손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고령가야 고분군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여 문화를 계승한다면 상주시를 새롭게 알리는 귀중한 문화자산이 될 것입니다. 경북의 귀중한 문화자산인 고령가야 고분군이 더 이상 방치되어 도굴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9년 12월 9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 박영환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공정관리 촉구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영천 출신 박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상북도 체육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경북도체육회는 제24차, 제25차 이사회에서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고, 도내 23개 시·군 체육회 역시 경북도체육회 규약을 준용,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며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도내 전체 체육계가 회장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습니다.

경북도체육회장의 경우 3명의 회장 후보들이 거론되며, 시·군 체육회 역시 시 중심으로 다수의 후보군이 물망에 오르면서 경쟁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웅도 경북체육을 이끌 적임자인지, 체육회의 조직 화합과 공정한 행정을 이끌어갈 엄정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있는지, 경북체육 수장으로 도민들이 수긍할 사람인지에 대한 세간의 평가 속에 체육인들 앞에는 능력과 인품을 갖춘 중량감 있는 민간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특히 경북은 내년 10월 구미에서 101회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써 체육회장의 위상과 막대한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민간체육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의 난맥상을 통과 의례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벌써부터 갈등과 반목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진흙탕, 깜깜이 선거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체육인들은 물론이고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민간체육회장의 옥석을 고르는 일과 그에 따른 미래의 체육 발전 청사진은 전적으로 체육인들의 의식 있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시·도, 시·군에서는 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첫 민간체육회장이라는 상징성을 위해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추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회장의 자질과 경제력, 체육발전을 위한 봉사자세 등 중량감 있는 인물을 합의 추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체육인들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위탁이 되지 않아 각 체육회마다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는 상황 속에 선거경험이 전무하다 보니 시행착오 등 혼선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첫 민간체육회장 선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적임자에 대한 평가와 곳곳에서 들리는 파열음과 과열조짐, 유력 정치인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거나 '단체장의 사전 낙점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공정선거 관리를 위한 지방체육회 차원의 노력은 매우 미약하기만 합니다. 선거법 위반 신고포상금 1,000만원

지급과 지방체육회 차원의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하는 것 이외의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기탁금과 분담금도 문제입니다. 선거기탁금은 도 체육회장은 5,000만 원, 시·군 체육회도 지역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매년 회장 분담금은 시·군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일부 시 체육회장의 경우는 매년 5,0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탁금과 분담금은 기회의 불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능한 인재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체육회 규약과 선거규정에 의해 첫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법 개정 취지와 맞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 등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민간 체육회장 선출이 체육행정의 새로운 이정표와 뜻깊은 출발선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번 민간체육회장 선출로 경북체육의 변화와 혁신, 새로운 경북체육 행정의 전환기를 맞아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도 퇴임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되어 버린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물로 앉혀 체육회를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및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체육회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며, 새로운 경북체육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인물이 첫 민간체육회장에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2월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윤승오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 경상북도의 생활임금제도 도입 촉구 관련 ≫

경상북도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북도와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임금 노동 빈곤층의 확대와 소득 불평등입니다.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노동비용의 지속적인 절감이라는 기업의 경영 효율성 강화 논리는 공공부문에도 침투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 부문에서 노동시장 양극화, 불안정한 고용, 실질적인 임금 저하라는 폐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도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 기준으로 매달 174만 원, 연간

2,09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도청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 원이며 매달 209만원에 연간 2,5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기간제 노동자보다 연간 414만 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남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도는 도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이라면 생활임금은 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미국에서 1994년부터 본격화되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를 시·도별로 보면 대구, 경북, 울산,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최근에는 경남이 2019년 8월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시·도에서는 시·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노동자뿐 아니라 시·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또 시·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는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되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활임금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빈곤의 경계에서 힘들어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9년 기준, 경북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는 기간제 노동자 1,307명, 일용직 노동자 16명 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분들은 어쩌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이며 미래 우리의 딸·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생존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는 세밑입니다. 내년에는 경상북도에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 경상북도의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2월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김상헌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포스코 교육재단 공립화에 대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 관련≫

자랑스러운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상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국민기업 '포스코'가 교육 보국을 통한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북 포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기업발전과 지역발전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창업이념을 저버리고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교육 보국의 정신 아래 자주인, 도덕인, 창의인을 육성한다'는 건학이념으로 1971년 1월 재단법인 제철장학회 설립을 시작으로 포항과 광양에 유치원부터 초·중·고 12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열두 곳 가운데 고등학교 네 곳을 제외한 어덟 곳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명품교육의 보고인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려다가 학부모와 지역민의 반대로 올해 4월 계획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런 차에 이제는 포스코가 교육재단의 출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교육재난 출연금은 2012년 385억 원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지난해에는 234억 원, 올해 180억 원에 그쳤고 내년에는 120억 원, 2021년 70억 원을 출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공립화로 가겠다는 포석입니다.

다른 대기업의 경우 지역민을 위한 교육과 문화창달 등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기업 포스코가 오히려 출연금을 줄이거나 중단한다는 것은 그동안 환경문제를 끌어안고 묵묵히 협조해온 도민과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비윤리적인 처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1995년 포스코 회장이 재단 교육인가를 받기 위해 직접 각서까지 써가며 '포스코가 적극 지원해 우수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 도교육청에 합의에 대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포스텍 등에서 일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이 결국 경북도와 포항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입니다.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가 거센 반대여론으로 백지화된 자율형 사립고인 포항제철고의 등록금 인상과 일반고 전환, 포스코교육재단 산하의 학교들을 공립화로 전환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 하락과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불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50년간 환경문제를 비롯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도 희생을 감내한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시한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준비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기업 포스코가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에 경북교육의 수장께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역 인재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학재단이 그 역량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지역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서 길을 열어주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길에 함께 서서 힘이 되어주고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Ⅶ.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019년 11월 21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최병준 의원(교육위원회) ◎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다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자력 대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신뢰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자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도민은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사업조차 지난 13년간 헛바퀴를 돌고 있는 현실에서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정부는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금 3,000억 원과 한수원 본사를 옮겨주고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설립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폐장과 연구센터가 준공되면 두산중공업 등 20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오고 연간 1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유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이처럼 방폐장 유치 당시 속된 말로 '경주에는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도민들은 경주가 천지개벽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양성자가속기 사업이 오히려 경주시가 총사업비 3,147억 원 중에 31.2%에 달하는 982억 원의 엄청난 부담을 떠안았고 일자리 창출이나 연관기업 유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55개의 지원사업과 별도사업으로 약속된 장기검토사업 7건을 확정하였으나 보시다시피 내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 6개 사업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이행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를 두고 경주시민은 허탈감과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16일 경상북도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조 334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마치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것처럼 경주 시내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8월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경주 유치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은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을 뿐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어제 '과기부 제8차 원자력진흥위원회

개최' 보도자료에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안건이 서면으로 심의되었고 경주지역의 혁신 원자력연구개발 부지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7월 MOU 체결 이후 4개월 만에 경상북도가 원자력 혁신 연구개발 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성과를 끌어낸 데 대해서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과기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에서 먼저 부지 제공을 한다고 하니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며 "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적합한 부지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원자력 R&D 클러스터구축 국회예산심의자료

혁신 원자력 R&D 클러스터 구축 예비설계 사업			신규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19년 국비	'20년 건의 (A)	부처 반영액	정부 예산안 (B)	국회 증액 요구액 (A-B)
부처 사업명	미정	사업코드		20~21	5,000 (5,000)		2,000			2,00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년간)

◦ 사업위치 : 경주시 감포읍 일원

◦ 시행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원

◦ 사업내용 : 클러스터 구축 전략 및 지역연계 R&D기획, 연구시설 구축 예비설계 등

◦ 사업규모 : 예비설계 사업비 1식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비)(단위:백만원)

이 예산서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처도 정해지지 않고 정부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연구용역 20억 원이 부랴부랴 쪽지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경북도는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애드벌룬부터 띄우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재원 투자규모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연구인력 1,000명 유입, 7,300명의 일자리 창출, 1조 334억 원의 경제적 효과는 어디에서 추정한 것입니까? 방폐장과 양성자가속기 유치로 정부가 약속한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의 추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찬란한 장밋빛 청사진만 화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정책과 관련하여 도민에게 너무나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활한 국비지원, 사용 후 핵연료 이전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하게 요구해도 속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눈치를 보고 먼저 부지를 제공하고 예산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겠다는 부지비용은 결국 방폐장 유치를 위해 보상 받은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경북도가 사활을 걸고 유치하려 했던 원전해체연구소가 정치적인 논리로 지난 4월 우리 경북에는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만 들어서게 되고 도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도지사님께서는 "뒤에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별 말 없이 수용했고 또 도민을 설득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입니까?

자,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바로 국비 확보입니다. 국가가 먼저 국책사업으로 약속해도 실제로 기대했던 전폭적인 지원과 유치효과는 극히 미미합니다. 수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것이 이 나라와 우리 도의 에너지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국내 원전 24기 중 50%인 12기와 핵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는 경북도민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본 의원 역시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최종 확정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1조 334억 원의 파급효과가 실제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와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도지사님께서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이 정부 주도 하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경상북도가 원하는 대규모 국비가 투자되고 더 나아가 경상북도가 차세대 원자력 핵심기술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 후 핵연료 저장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 캐니스터는 100%, 맥스터는 92.2% 찼습니다. 2021년 포화가 임박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용 후 핵연료 처리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도 차원의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터 님치는 부자경북', '아이 행복한 젊은경북',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을 4대 목표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중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을 만들기 위해 외국관광객 중 경북 방문 비율을 2017년 2.6%에서 2022년 1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018년 2.8%로 전년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한다며 '2016년 대구경북 방문의 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나타난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이런 차에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선정하고 경북 3,000만 명, 대구 1,0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올해 3월 제307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외국인관광객은 대부분 서울, 부산, 제주도로 몰리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관광객이 적게 오고 있다고 발언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상북도의 경우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홍보가 부족하고 숙박시설, 식당, 서비스 등도 많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외래관광 실태조사에서 한국방문 선택 시 고려요인은 쇼핑이 63.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미식 탐방 57.9%, 자연풍경 감상 36.2%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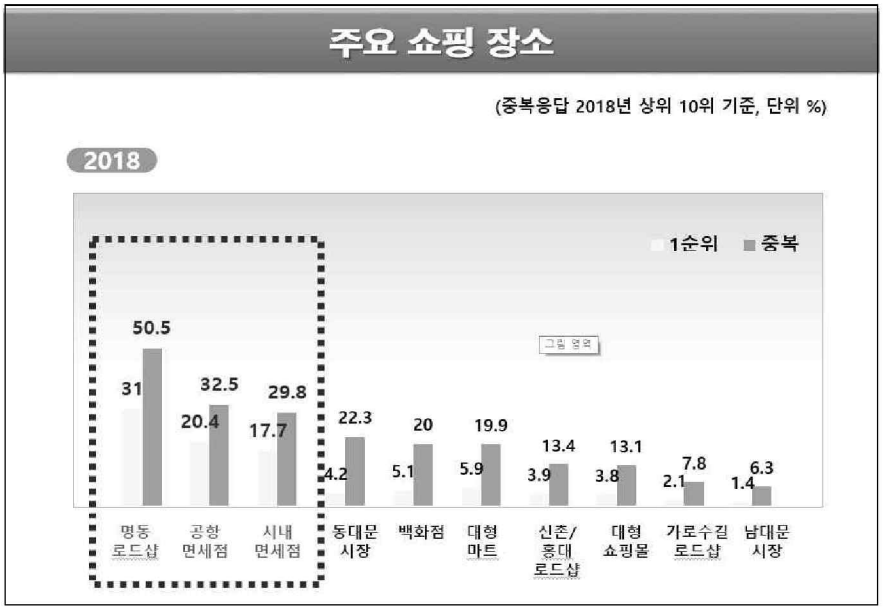

즉, 쇼핑하기 좋은 곳에 외국관광객이 몰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쇼핑은 관광활동의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며, 쇼핑 경험은 관광 만족도뿐만 아니라 향후 관광지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도지사님은 경북이 교통이 불편해서, 덜 알려져서, 친절교육이 부족해서 외국관광객이 적게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부족한 쇼핑인프라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한국에 온 외국관광객의 쇼핑장소는 공항면세점 32.5%, 시내면세점 29.8%로 면세점이 62.3%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경북에는 공항면세점도 없고 시내면세점도 없어 많은 외국관광객이 경북 이외의 곳에서 쇼핑을 하고 출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관광객을 유치만 하고 그들의 지갑을 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세계로 열린 관광경북'입니까?

본 의원은 2014년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로 여러 차례 경북에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수차례 지적했지만 그때마다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신규 면세점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요지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면세점은 2016년 44개에서 2019년 6월 기준 61개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2019년 현재까지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올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시내면세점 특허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으면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중소·중견의 경우에도 원칙상 상시 진입을 허용하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 결과로 올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를 대기업 특허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를 늘리고 중소·중견기업 특허를 충남에 1개 늘렸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역시 면세점 특허신청을 하였다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안 하고, 요건이 완화되어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평소 도지사님이 강조하는 적극행정입니까?

한편, 지난 달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역관광을 혁신하기 위해 국제관광도시 한 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네 곳을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의 성공적 추진과 함께 도가 추진해 나가는 관광산업에 큰 날개를 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면세점 특허 신규신청에서 경북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관광객 유치와 관광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면세점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경북도와 문화관광공사가 협력하여 면세점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하는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에 대한 경북의 현재까지 준비사항과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공공도서관 활성화와 경북의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법 제30조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마지막으로, 도내 공공도서관 활성화와 경북의 대표 도서관인 '경북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2018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경북 공공도서관은 전국 17개 시·도 공공도서관 중 13~14위 수준입니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표창 수상 도서관에도 경북의 공공도서관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범이 될 만한 공공도서관이 경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에, 도청신도시에 지난 13일 예산 350억원을 들여 경북의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 대표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초대관장부터 현행법을 위반한, 일반 행정직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출발하였고, 전체직원의 60% 이상을 사서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원 20명 중 7명, 35%만이 사서직으로 구성하여 현행 규정을 위반한 채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총괄·지원·협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그동안 턱없이 부족했던 도청신도시 주민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도 될지 우려가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민들이 지적 힐링과 문화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내 공공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 개관한 경북도서관이 문화와 교육이 있는 복합문화 창조공간과 도내 공공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선문적인 인력운용 및 향후 추진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9년 11월 21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김대일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대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2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임종식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신산업 발굴을 통한 북부권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질문입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이전에 따른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요구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 활성화 대책이나 북부권 발전 방안에 대한 경북도의 답변으로 북부권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이 많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확대 조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신도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공동화 현상을 최소화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답변 상황으로만 보면 북부권의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은 벌써 사업이 실행단계로 접어들어야 했습니다.

영주 베어링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이는 정부시책에 의한 것일 뿐 경북도가 추진한성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 경북 도내 산업단지 분포와 2020년 SOC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이제까지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북도 전체의 산업단지는 21개 시·군에 총 151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입주기업은 5,593개, 생산규모는 약 84조 2,600억 원, 수출액은 약 365억7,000달러로 고용 인원은 17만 3,30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표1. 경북도내 산업단지 전체 현황]

유형	경북도내산업단지현황				
	공단수	입주업체	생산규모 (백만원)	수출규모 (천달러)	고용인원
국가	9	2,600	59,593,346	30,833,176	102,373
일반	73	1,926	16,632,792	3,864,701	49,810
논공	69	1,067	8,040,905	1,872,735	21,119
합계	**151**	**5,593**	**84,267,043**	**36,570,612**	**173,302**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경북 도내 151개 단지를 북부권 11개 시·군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 수, 입주기업 수, 생산액, 수출액, 고용인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색은 북부권 11개 시·군의 산업단지현황을 나타내고 붉은 색은 나머지 지역을 나타냅니다.

한눈에 보아도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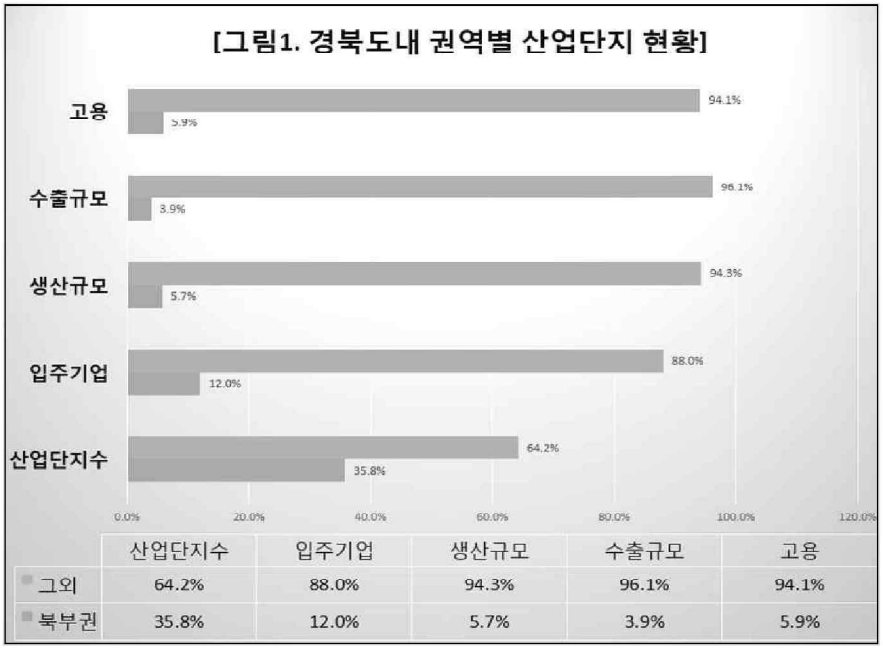

	산업단지수	입주기업	생산규모	수출규모	고용
그외	64.2%	88.0%	94.3%	96.1%	94.1%
북부권	35.8%	12.0%	5.7%	3.9%	5.9%

산업단지 수는 전체 151개 중 54개에 35.8% 정도지만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낮은 농공산업단지는 41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산업단지 유형별 입주 현황을 보면 일반 산업단지 12개, 농공산업단지 41개이며,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태로 그 외 지역 11개 시·군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들 산업단지에서 창출되는 경제효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또한 입주기업도 5,593개 중 단 671개 기업만 입주해 있습니다. 생산 규모도 전체 산업단지 84조 2,670억 원 중 겨우 4조 8,273억 원으로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출 규모는 전체 3.9%밖에 안 되는 14억 3,020만 5,000달러며, 고용 인원은 5.9%인 1만 189명에 불과합니다.

[표2. 경북도내 권역별 산업단지 현황]

유형		공단유형별		입주기업		생산규모(백만원)		수출규모(천달러)		고용	
		개수	비율	업체수	비율	생산액	비율	수출액	비율	인원	비율
합계	국가	9		2,600		59,593,346		30,833,176		102,373	
	일반	73		1,926		16,632,792		3,864,701		49,810	
	논공	69		1,067		8,040,905		1,872,735		21,119	
	합계	151	100.0%	5,593	100.0%	84,267,043	100.0%	36,570,612	100.0%	173,302	100.0%
북부권 (11개)	국가										
	일반	13	17.8%	108	5.6%	691,156	4.2%	247,845	6.4%	1,743	3.5%
	논공	41	59.4%	563	52.8%	4,136,146	51.4%	1,182,360	63.1%	8,446	40.0%
	합계	54	35.8%	671	12.0%	4,827,302	5.7%	1,430,205	3.9%	10,189	5.9%
그외	국가	9	100.0%	2,600	100.0%	59,593,346	100.0%	30,833,176	100.0%	102,373	100.0%
시군	일반	60	82.2%	1,818	94.4%	15,941,636	95.8%	3,616,856	93.6%	48,067	96.5%
(11개)	논공	28	40.6%	504	47.2%	3,904,759	48.6%	690,375	36.9%	12,673	60.0%
	합계	97	64.2%	4,922	88.0%	79,439,741	94.3%	35,140,407	96.1%	163,113	94.1%

경북도내 산업단지 분포도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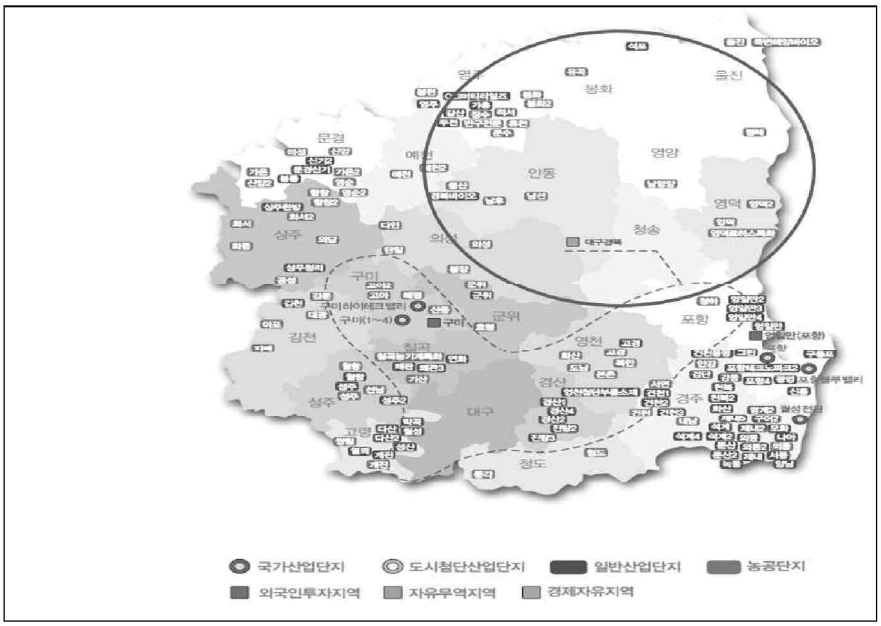

다음으로 전국의 국가산업 분포도도 함께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부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은 2019년 6월 현재 경북 도내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39개 단지 4만 542㎡에 사업비 6조 7,283억 원 투자하여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9개 산업단지 중 단 4개만이 북부권에 조성되고 있으며 1,222㎡의 면적에 총사업비도 1,398억 원으로 도내 조성 중인 전체 산업단지 대비 2.1%에 불과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외 지역에 신규조성되는 산업단지는 35개소로 총면적 3만 9,320㎡, 사업비가 6조 6,000억 원입니다.

이는 신규 조성하는 산업단지 전체 사업비의 97%로 국가산단 3개, 일반 산단 30개, 농공단지 2개 등 북부권의 산업단지 투자

내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3. 경북도내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기준 : 2019.6.)

권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합계		
	단지수	총사업비 (억원)	지정 면적 (천㎡)	단지수	총사업비 (억원)	지정 면적 (천㎡)	단지수	총사업비 (억원)	지정면적 (천㎡)	단지수	총사업비 (억원)	지정 면적 (천㎡)
북부권	-	-	-	3	1,223	894	1	175	328	4	1,398	1,222
	0.00%	0.00%	0.00%	9.10%	3.50%	4.10%	33.30%	50.00%	50.00%	10.30%	2.10%	3.00%
그외지역	3	32,346	17,895	30	33,364	21,097	2	175	328	35	65,885	39,320
	100%	100%	100%	90.90%	96.50%	95.90%	66.70%	50.00%	50.00%	89.70%	97.90%	97.00%
계	3	32,346	17,895	33	34,587	21,991	3	350	656	39	67,283	40,542

[그림3. 경북도내 조성중인 산업단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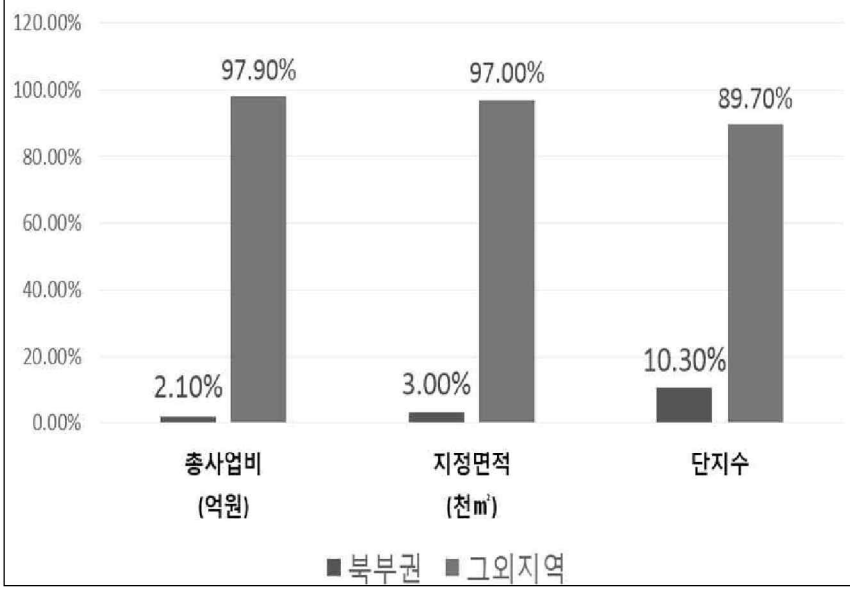

이와 같이 경북 도내 산업단지 분포현황을 비교해 볼 때 북부권의 산업생태계가 이런 취약한지,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의 일자리 복지는 이런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부권의 무너진 산업생태계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부권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기존의 산업 인프라에 영향을 덜 받고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신산업을 발굴하여 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신산업을 발굴하는 특화산업단지 조성으로 북부권의 탄탄한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산업단지 분포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북부권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북부권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 주체가 시·군이기는 하나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북부권 산업생태계의 현실을 보면 시·군의 개별 전략으로는 난국을 타개하기 매우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북부권 산업단지의 단계별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신산업 발굴, 산업단지 조성, 인구 유입, 지역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심각한 산업단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국가산업단지 및 백신클러스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북도는 2012년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조성, 백신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활성화 등 매번 확장과 발전을 이슈로 보도자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7년이 지나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는 이름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산업단지는 백신산업 특화단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SK케미컬 백신공장, SK플라즈마 혈액제재 공장을 유치하고,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2018년 8월 청주의 바이오헬스, 충주 바이오산업 및 원주의 의료기구 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충북 오송 산업단지와 연계한 바이오산업벨트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 혁신 성장의 주축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타 시·도 바이오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거듭나는 동안 경북의 미래먹거리와 직결되는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백신클러스터를 부르짖던 경북은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클러스터를 주장하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은 백신과 거리가 있는 식품기업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백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백신사업단의 인력은 고작 6명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조직 구성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연구의 특성상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행정기관 등 한 곳에 집적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북바이오산업단지를 백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로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백신클러스터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확대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대 문화권 조성사업 문제점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유교·가야·신라의 3대 문화권 사업을 통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년간에 걸쳐 41개 사업에 총사업비 약 2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 유교문화권과 녹색자원 관련사업은 북부권 10개 시·군, 20개 사업에 사업비는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이 2021년에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아직 50%도 되지 않는 사업이 4개, 60% 이하의 사업도 4개로 20여 개 중 8개 사업은 2년 내에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당초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임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안동과 봉화의 세계 유교선비 문화공원 조성 사업 2건,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사업, 문경과 예천의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 2건 등 5개 사업은 당초 B/C 분석 0.5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사업 타당성을 높일 방안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에서 각 세부 사업별로 박물관, 역사관 등 각종 건축시설이 평균 1개 이상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에만 박물관 등 건축시설은 총 26개로 사업비가 3,925억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건축물은 관리비용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향후 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3대 문화권 사업의 운영 부담의 규모를 가늠해 보기 위해 23개 시·군에 분포한 90개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학관의 운영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공연장 등 4개 시설의 건립비용과 총수익 대비 운영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이들 90개 시설의 연간 운영비용이 2016년에는 279억, 2017년에는 307억, 2018년에는 390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3년간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400억 원 이상이 운영비용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도내 박물관 등의 운영비용의 사례를 볼 때 유교문화권 사업에도 이와 비슷한 시설들이 26개가 있고, 이것을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확대해 본다면 이를 운영하는 비용 또한 반반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안동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를 비롯한 8개 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낮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23개 시·군에는 기존에 90여 개의 공연장, 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3대 문화권 사업이 완료되어 시·군으로 이관된다면 시·군의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총괄적으로 직접 운영한다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군의 운영부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동양적 가치가 숨 쉬는 인문학 여행지 조성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 로컬관광객들 사이에 중요한 여행 트렌드는 인문학입니다.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에 대한 생활방식과 현지인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한 달 살아보기'와 같은 여행이 대세로 자리 삽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은 동양적 가치와 한국의 정서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전통적인 생활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북부권의 관광자원은 문화권이 비슷한 아시아 관광객들에게는 별다른 매력이 없겠지만 한국의 전통생활과 동양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유럽 등 서양의 관광객들에게는 경북 북부권이 매력적인 여행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원·사찰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다양한 인문학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와 생활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여행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지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내적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호응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소중히 여기는 여행객들을 발굴할 때입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관광정책과 경북문화관광공사의 해외마케팅은 주로 중국·동남아의 단체관광객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중국·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주요 목적이 발달된 도시, 뷰티산업이나 쇼핑 등 대도시 중심으로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북부권 관광지가 얼마나 큰 매력이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서원이 세 곳, 화엄사상의 발원지인 영주의 부석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인정받는 안동 봉정사, 장판각 유교책판, 안동 하회마을, 청송 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다양한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여행지에 대한 최대 걸림돌은 교통편입니다. 공항에서 현지까지 접근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현지 내에서도 관광지간 연계되는 교통편을 찾기도 어렵고, 절대적인 교통편도 부족합니다. 북부권 여행 시 공항에서 북부권으로, 북부권 내에서 다시 주요관광지로 연계하는 교통수단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권 관광 홍보는 유럽 등 문화권이 다른 여행객과, 인문학을 중시하는 로컬관광객에 대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부권 관광 특화 선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컬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 확보를 위해 공항과 북부권을 연계하는 버스노선 확대 신설이 필요하고, 시·군별로 운영되는 시티버스는 지역적 한계가 있는 만큼 북부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연계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투어버스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로컬여행객에게 교통·숙박·관광인프라 등의 실시간 정보 제공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여행 어플리케이션에 북부권 여행지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교통·숙박·관광인프라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 '경북나드리' 내용을 이들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경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1월 21일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김하수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웅도 경북'을 건설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옅은 미소와 웃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도지사 경선 시절, 후보자 시절에 울진에서 장애아동이 지사님께 명함을 달라고 찾아온 적 있지요? 그때 한 대여섯 번 주고 나니까 옆에서 경호원들이 막으면서 못 오게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명함을 받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웃음으로 다가오는데 그 행복함을 뺏지 마라."라고 하면서 열 한 몇 장을 더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사님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러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 그리고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는 그 마음은 바로 경상북도의 내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존경하는'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아도 지사님,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계시겠지요?

○ 도지사 이철우 예.

○ 김하수 의원 그런데 잘하는 경북의 일들에 1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못하는 것만 오늘 이야기해야 되니까, 의원의 역할로서 하니까 너무 답답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지역균형 발전 및 의료환경개선, 그리고 농업교육과 농업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북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은 민선 7기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의 하나로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경북'을 슬로건으로 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중요한 가치로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며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의 현실은 시·군 간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는 최하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표 1> 시도 재정자립도의 지역적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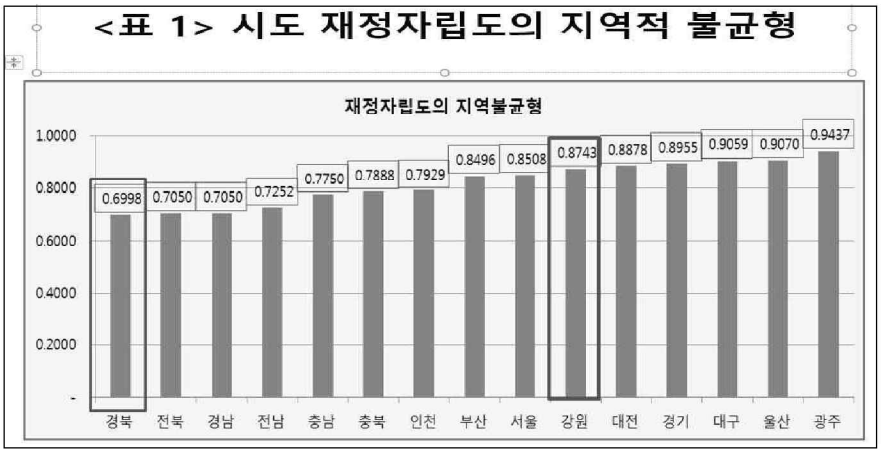

표2는 본 의원이 2011년도 도정질문에서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제 지역구인 청도군과 도내 시·군 간 평균을 살펴본 결과와 2018년도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 재정력 지수, 예산규모 증가율 등 거의 개선된 부분이 없이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지표는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모두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중 보건·의료정책과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내용 등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 청도군의 재정여건 비교 : 2011 vs 2018년

2011년					2018년				
	도전체	시	군	청도		도전체	시	군	청도
재정자립도	17.8%	23.9%	13.1%	10.9%	재정자립도	34.4%	29.5%	19.3%	17.9%
재정력지수	27.2%	33.5%	17.6%	12.8%	재정력지수	26.7%	31.3%	18.3%	15.5%
예산규모증가율 ('06년 대비)	%	56.8%	48.6%	35.2%	예산규모증가율 ('13년 대비)	35.3%	38.4%	29.6%	13.8%
지방교수세 증가율 ('06년 대비)	31.6%	37.1%	27.3%	23.6%	지방교부세 증가율 ('13년 대비)	34.5%	42.5%	24.6%	26.9%
1인당총생산액 (07년 기준, 만원)	2,354	1,982	1,772	1,351	1인당총생산액 (16년 기준, 만원)	3,058	3,260	2,898	2,211

표3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1.3명입니다. 전북도의 2명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표 3> 시도별 의사인력 현황(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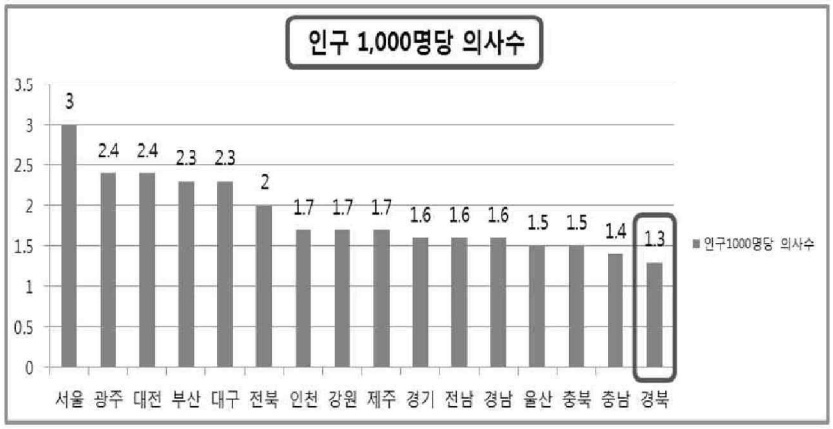

표4에서도 나타나듯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도 167명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표 4>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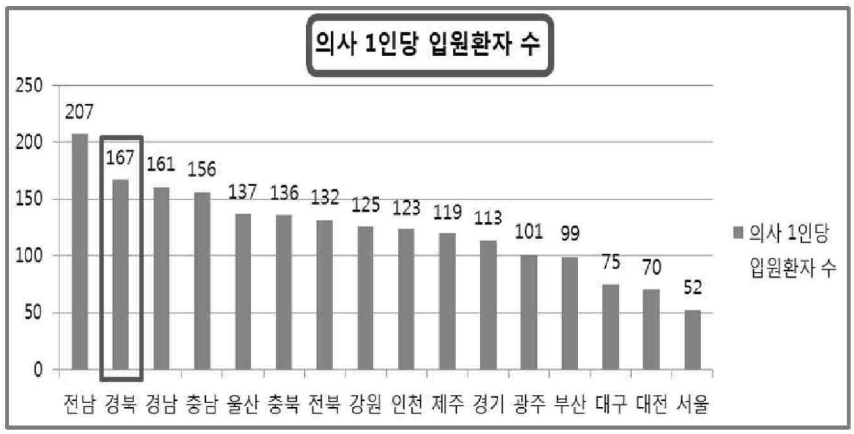

그리고 표5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나타내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경북이

57.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5> 치료가능 사망자 수
(인구 10만명당,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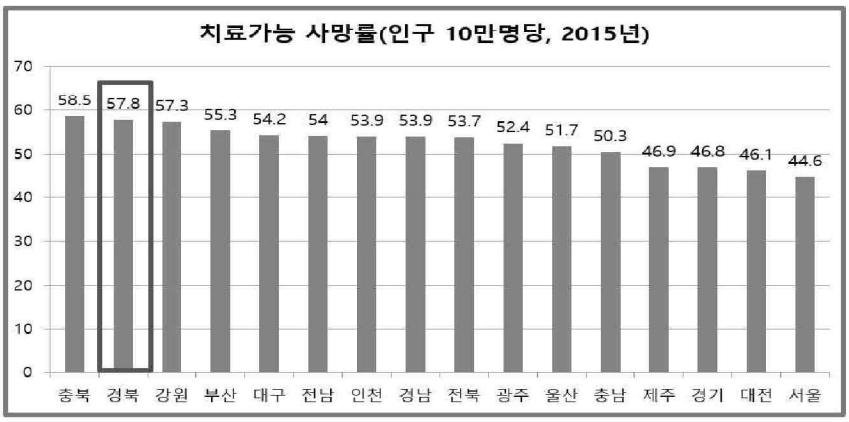

더욱 놀라운 통계자료는 표6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입니다.

<표 6> 신생아 사망률
(2017년, 출생아 천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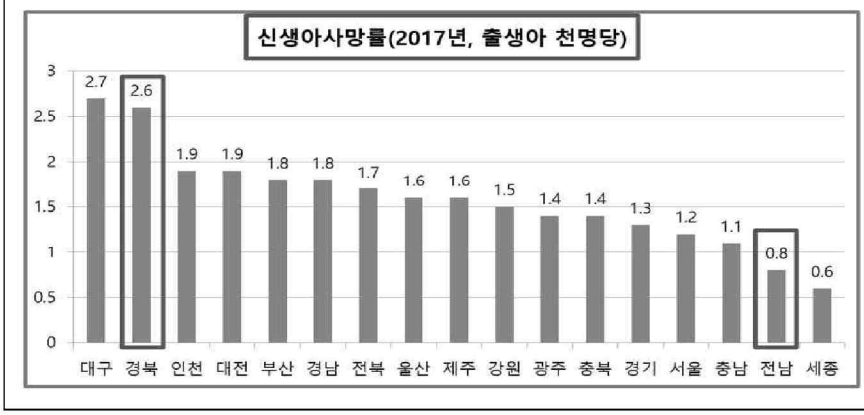

신생아 사망률이란 출생아 1,000명당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가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신생아 사망률은 경북이 2.6명으로 나타나 전남 0.8명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북은 신생아 47명이 생후 28일 전에 사망을 했고, 전남은 1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남에서 태어났더라면 경북의 신생아 37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 저출산 극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하신다면 지사님의 공약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출산 장려정책보다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더 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수단과 관련한 통계 자료입니다.

<표 7> 시내버스 하루 2회 이하 운영 지역의 주민수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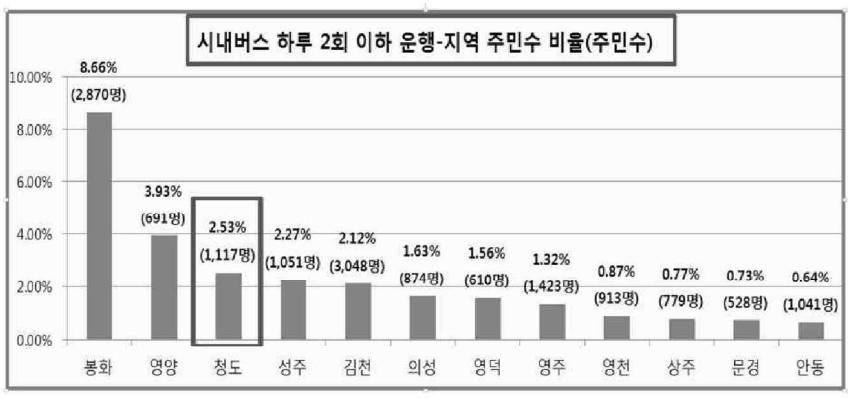

경북 도내에는 청도를 비롯하여 봉화, 영양 등 12개 시·군에서

하루 2회 이하 버스를 운행하는 마을이 333개에 이르고 이들 마을의 1만 6,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경운기, 오토바이, 사륜 자동차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3년간 노인 교통 사망자 수가 경기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시·군 간 균형발전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새롭게 시행한 균형발전정책과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사 수, 입원환자 수, 치료 가능 사망자 수 등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과, 특히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북도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 교통 사망자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시·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경주, 칠곡 등 소형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마을버스, 또는 일명 행복택시 등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교육감과 도지사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8> 도 단위 농업계 고등학교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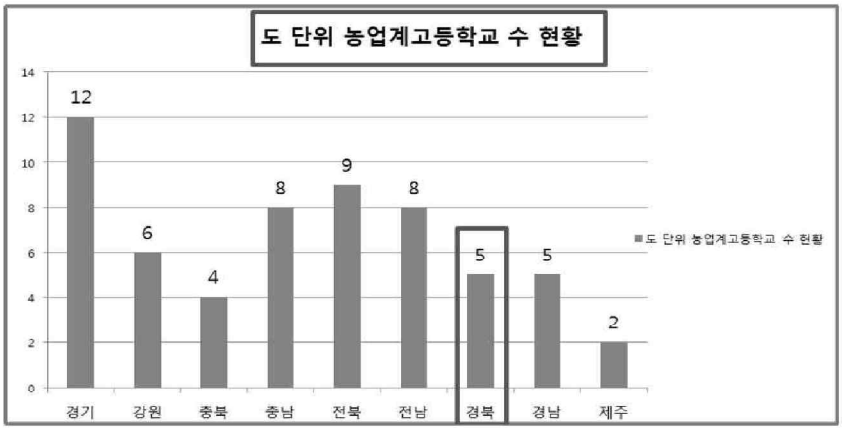

표8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보면 5개로 전국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경북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북, 충남의 농업계 고등학교 수가 각각 9개와 8개입니다.

농업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수도 적습니다. 2019년 기준경북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7만 1,000여 명이며,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350여 명입니다. 이는 경북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1.8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경북이 우리나라 전체 농가 수의 17.3%, 농가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북의 농업계 고등학교와 학생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계 학생 수로 6차 산업시대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인터뷰 내용은 올 9월 29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7회 대구도시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인터뷰한 것으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를 지원한 동기에 대하여 물어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음성파일 재생)

교육감님, 저는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도내에 진학할 마땅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땅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고령에 사는 남학생이 대구로 유출되고, 인천에 있는 여학생은 경북이 아니라 대구에 진학함으로써 학생 유치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듣고 우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표 9>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한국생명과학고 비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한국생명과학고(안동)
학과	■ 시설채소과	■ 식량자원학과
	■ 신수종 과수경영과	■ 축산자원과학과
	■ 도시조경과	■ 원예자원과학과
	■ 시설특작과	■ 식품과학과
		■ 산업기계기술과
		■ 산림과학과
교과 과정	농산물마케팅	채소, 과수, 화훼 재배 등
	환경제어시스템 등	

표9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인근의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를 비교한 것으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6차 산업에 걸맞게 스마트팜 관련 ICT 학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수종과수경영과, 생태도시 기반의 도시조경과 등을 개설하고 있는 반면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는 원예, 축산, 식품 등 60, 70년대의 전통적 이름의 학과가 대부분이고 교과목도 6차 산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학교 시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표 10> 학교 시설 이미지 비교

대구 농업마이스터 고등학교(대구)	한국생명고등학교(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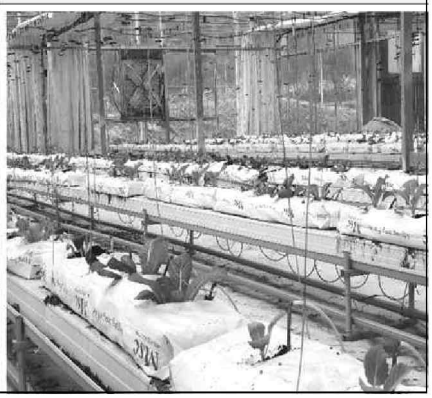

표10에서 보듯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비교하여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의 유리온실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교육감께서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느 학교를 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답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북 도내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 11> 농업계 고등학교 입학지원 현황 (2015-2019년)

학교(소재)	2015년			2019년		
	정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정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안동)	155	219	1.41	144	122	0.84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김천)	168	228	1.36	144	136	0.94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봉화)*	50	58	1.16	48	69	1.44
용운고등학교(상주)	100	100	1:1	96	73	0.76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영천) - 2018년 개교(이전 영천상고)	60	115	1.9	60	70	1.2
[비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 2017년	120*	189*	1.56*	120*	165*	1.38*

*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경우 2017년과 2019년을 비교 한 것임

표11에서 보듯 2019년 기준 학생 수의 정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농업계 5개교 중 안동 한국생명과학고, 김천 생명과학고, 상주 용운고 3개 학교나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22년도 상주에 있는 중모고등학교를 농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지요?

○ 교육감 임종식 예.

○ 김하수 의원 그런데 중모고등학교는 2019년 신입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모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지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ICT기술 반영, 기후변화 등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선진화된 학과와 교과목을 개설해 주시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응시율과 졸업 후 농업 관련 부문에 대한 취업 및 진학 비율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울러 2022년 농업계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상주중모고등학교의 학과 개설, 학생 모집 전략 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교육과 농업정책의 연계 협력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경북을 농도 경북,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 농도라고 줄곧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의 미래 농업 인재인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도의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정책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만 급식비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상주 중모고등학교의 농업전문 특성화교 전환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로 도비 35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와 교육청 간의 연계성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등 도의 인프라와 연계되거나 스마트팜 교육과 같은 미래 경북 농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원 내용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표 12>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 농업계 고등학교

도지사님, 앞으로 상주에는 기존의 경북대 농업대학교라는 전문기관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업기술원 이전 등 경북도의 농업정책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연계시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접근성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상호 교류하여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정과 농업교육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양성 방안과

젊은 농업인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농업기술원의 상주 이전 등 도내에 들어설 농업 혁신 인프라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경상북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 경상북도 농업정책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은 경상북도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도정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도경북을 이끌 미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성과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농업교육과 농업정책이 융합된 농정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시·군 간 균형발전과 농업교육 간의 농정정책의 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책 마련과 시행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11월 22일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40일 후면 2020년대가 시작됩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현대미술의 거장 '장 피에르 레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리더가 되고 변화를 수용하면 생존자가 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새로운 세대 1980년대, 1990년대 생들이 안동 옥동의 밤거리를 채우는 오늘 청년의 꿈과 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희망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데뷔 2019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 즉 AI를 통해 경제·사회의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연내에 발표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새로운 문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 서비스,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의 문제를 지능화

해서 해결하는 신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되고 있고 교육, 의료, 법률, 공공서비스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입니다. 상상력을 현실로 바꾸어내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함께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 즉 완전히 창의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격변기를 우리 경상북도는 얼마나 기민하게 수용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한 가지 상징적 모션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인공지능의 동반자라는 적극적인 수용 자세를 과시하는 의미에서 동락관과 새마을광장 등 신청사 일대를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의 축제인 '인공지능 올림픽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검무산과 호민지를 비롯한 도청신도시의 드넓은 공간을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조종 레이싱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고래로부터 경북은 대한민국 역사를 주도해온 추동력이었고 원형질이었습니다.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 등 4대 정신은 국민통합의 이념이었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근간이었으며, 세계 11위 경제대국을 이루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경북사람의 바로 그러한 DNA가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이철우 지사님의 슬로건에 열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적응할 산업기반의 부재로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청년인구의 역외 유출과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도시와 농촌을 동시에 공동화시키는

어두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이 증폭되어 지역사회 공동체는 자신감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 '새바람 행복경북'이라는 슬로건과 '변해야 산다'는 지사님의 위기인식에 우리 도의회도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권 2년차입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명확한 청사진과 강력한 실행파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지하는바 정책은 목표와 수단, 그리고 정책대상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목표와 수단과 함께, 정책대상으로부터의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북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야말로 정책변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추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소망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8월 한국정책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신뢰도는 시민단체(42%)보다 낮은 39%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주민신뢰의 기초인 청렴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경상북도는 2015년 17위,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인 5등급에 머물렀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으로 경북의 종합청렴도는 17위에서 8위로, 5등급에서 3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경상북도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기관경고를 비롯한 징계·훈계 등 행정상 조치가 142건, 환수·징수

등 재정상 조치는 81억 5,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부당한 업무지시가 엄존하고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간 관행으로 엄존해온 부정적 요소들이 법적 제도적 접근만으로 하루아침에 일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도를 움직이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단한 소통과 혁신, 그리고 문화운동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경상북도 조직문화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지사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문제입니다.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분권의지는 실종되었고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접근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체가 함께 노력해서 구체화시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장기간의 국회공전으로 11월 14일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됨으로써 이 또한 20대 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동안 지방의 재정분권역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33.3%에서 2019년 31.9%로 떨어져 서울 82.2%, 경기 68.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2017년 7.6 대 2.4였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0년 7.4 내 2.6, 그리고 2022년에는 7 대 3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로 인상하고 2020년 21%로 인상하여 2년간 약 11조7,000억 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것으로서 재정분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재정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지방소비세율이 6% 인상되어 21%가 되면 지방소비세는 그만큼 증가하지만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의 내국세 총액이 감소하므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되고, 사회복지·지역개발 등 지방정부 역할 강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입니다.

이를 다시 수도권 대 광역시 대 도 간의 현행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적용하게 되면 경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서울·경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자치단체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해 배분해 왔지만 언젠가 출연이 종료된다면 격차는 다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일정한 보탬을

주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인구가 많고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 대도시 권역과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낙후된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는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지방교부세율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행 시·도 간 안분비율인 가중치 1 대 2 대 3을 1 대 3 대 5 정도로 재조정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자치단체의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중앙정부의 균특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비용 보전분은 반드시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애써 오신 이철우 지사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신도시 건설에 대한 재논의를 제안합니다.

도청신도시 목표인구 설정은 실패했습니다. 2027년까지 인구 10만의 자족도시를 만든다는 개발목표는 애당초 무모한 계획이었고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서울·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서 실험했던 신도시 개념의 개발계획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방으로부터 빨아들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조성하는 서울의 신도시와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 인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중소도시의 경계선에 10만 명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시대변화를 읽지 못한 탁상공론

이었습니다.

명품신도시를 건설하면 타 시·도로부터 대거 인구유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신도시가 인근 시·군의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북부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발상이었습니다.

2019년 9월 현재 도청신도시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6317명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타 시·도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유입인구의 40%가 안동에서, 18%는 예천에서 전입했습니다. 영주와 문경 등 시·군에서도 19%가 전입했는데 비해 타 시·도에서 전입한 인구는 대구 14%와 기타 8% 등 22%에 불과합니다.

현재대로라면 조성 초기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유인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2단계와 3단계 사업단지에 유입될 인구는 아마도 분명 1단계와 마찬가지로 안동과 예천 등 인근 시·군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도청신청사가 개청한 2016년 3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예천을 제외한 안동, 영주, 문경, 봉화, 영양, 청송 등 북부권 6개 시·군의 인구는 1만 9,60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 인구는 약 3만 5,000명, 즉 1.31% 감소한 데 비해 북부권 6개 시·군은 4.76%가 감소했습니다.

예천의 인구는 1만 7명, 즉 18.2%가 증가하여 5만 4,97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예천 읍내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이 체감하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타 시·군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 10만의 명품신도시 건설이라는 경상북도의 개발계획을 신뢰하고 투자했던 분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해있습니다.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이주했던 분들 역시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상북도는 2단계 사업의 목표인구를 4만 5,000명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대체 어디에서 이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국가산단과 대학, 병원, 연구소 등의 시설을 유치하고 새로운 형태의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인구를 유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도 4만 5,000명이라는 목표는 너무 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인구를 채우기 위해 인근 시·군을 공동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초·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출시켜 도시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단지가 행정구역상 안동에 위치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훗날 안동과 예천의 행정구역이 통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과 분산 형태의 도시계획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도청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목표인구부터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 추진내용을 재점검하고, 나아가 신도시 전체의 개발계획에 대한 근본 목적과 합당한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신도시에 투자하고 입주한 분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현실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새로운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도정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도청신도시 개발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솔직한 생각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농도 경북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우리 농촌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개도국 지위 포기로 수입쌀에 적용되던 513%의 관세는 154%까지 낮아지고, 농업보조금은 1조 4,900억 원에서 8,194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깨, 대추, 마늘, 인삼 등에 부과되던 관세도 줄어 우리 농가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발효되면 이들 국가에서 연간 7조 7,000억 원이 넘는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의 소득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가구 소득은 2003년 3,517만 원에서 2018년 6,482만 원으로 84.3%가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2,688만 원에서 4,207만 원으로 56.5%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은 부실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파동의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쥐고 있습니다. 쌀 이외의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위해 2020년 직불금 예산으로 2조 2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변동직불금은 2018년 이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농업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농부를 위해 2007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총 674개 과정, 총1만 9,31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18년 경북의 농업소득은 1,743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만 농가소득은 4,092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37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농외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예컨대, 경기도의 농업소득은 1,083만 원으로 경북의 농업소득 1,743만 원보다 낮지만 농가소득은 4,851만 원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전라북도의 농업소득은 1,719만 원으로 경북과 비슷하지만 농가소득은 4,509만 원으로 경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경북의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이 30.7%인 데 비해 경북은 42.6%나 되고,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40.3%에 비해 경북은 28.1%로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WTO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쏟아지면 농업소득 비중이 높은 경북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업정책이 너무 안일했던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경북농업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리고 경북농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고뇌에 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9년 11월 22일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김성진 의원(농수산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백만 도민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선배·동료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백만 도민이 더욱 행복하고, 웅도경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의 동량이 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입니다. 2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화장로 5기가 설치되어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준공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맑은누리파크'입니다. 도내 11개시·군에서 발생하는 일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120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지난10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몇 차례나 현장을 방문하였고, 도청신도시 주민들과 풍천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 없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다음은 풍천하수처리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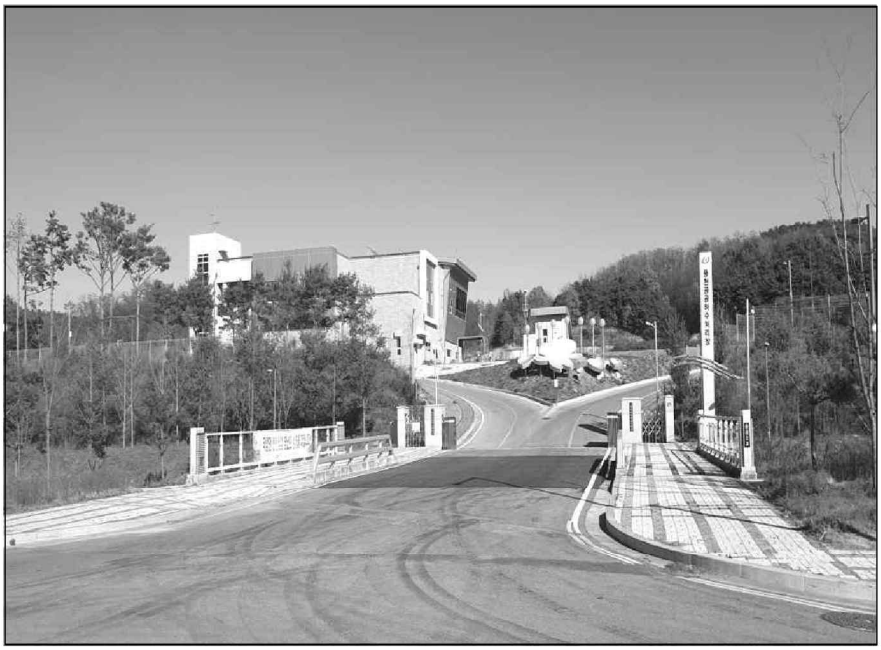

원인자부담금 방식으로 530억 원이 투입되었고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입니다. 도청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협약에 따라 안동시로 이관되어 2017년 7월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시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따르면 모두 기피시설이며 혐오시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내 어느 지역이든 이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화장장, 하수처리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처리장이 모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은 물론 국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국외 선진국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오시설이 한 곳에 집중

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하여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혐오시설들을 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를 명품도청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말입니다.

지사님, 풍천하수처리장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타운 현장에 갔을 때 악취를 맡지 못하셨는지요?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은 시설이 가동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53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처음부터 악취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겨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는 이미 운영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17년 풍천하수처리장 인수인계를 위해 시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점검을 통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확인한 문제점은 모두 몇 가지였으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몇 가지나 반영되었는지 각 공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모르쇠적인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안동시에서 공문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의 담당국장이 악취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개발

공사에 전화로 특별지시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대체 북쪽 사람입니까?

하수처리장은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2단계 증설사업을 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는 최소한 2,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3월 착공계획이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단계 증설사업을 위한 설계안을 검토하여 지난해 6월 12일 검토의견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항과 함께 경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1년 6개월이 되도록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긴, 감독기관의 국장이 직접 지시를 해도 마이동풍 꼴이니 안동시의 의견이나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의견쯤이야 더 이상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도청을 이전하면서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 역사를 시작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3백만 경북도민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도청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뛰어난 정주여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여건들 중에서 환경권이 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풍천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신도시 정주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00% 완벽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천하수처리장과 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적시적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북개발공사의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환경에너지타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는 향후 환경에너지타운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대한 환경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당사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지사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명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고, 공원화 계획과 스포츠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농업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3%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을 우선하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 간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며, 결국 농업을 포기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품목에 대해 500~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었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 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 들려오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한결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하소연뿐입니다.

표1을 보시겠습니다.

<표 1> 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2011~2020)

[단위: 천만원, %]

연도	일반예산	농업부문 예산		
		계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2011	466,253	66,654 (14.3)	61,298	5,356
2012	515,000	66,109 (12.84)	61,076	5,033
2013	552,800	66754 (12.08)	61,548	5,206
2014	589,540	68,654 (11.65)	63,475	5,179
2015	628,100	72,730 (11.58)	67,266	5,464
2016	683,380	74,833 (10.95)	68,618	6,215
2017	675,110	79,204 (11.73)	73,201	6,003
2018	707,240	77,208 (10.92)	70,662	6,546
2019	757,960	82,567 (10.89)	72,946	9,621
2020	844,500	80,337 (9.51)	72,770	7,567

우리 경상북도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반예산 기준 농업예산 대비표입니다.

우리 도 일반예산은 4조 6,620억 원에서 8조 4,450억 원으로 3조 7,830억 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665억 원에서 8,034억 원으로 1,368억 원, 1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 일반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 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예산은 오히려 2,23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 2> 타 시도 농업예산 및 농가인구

[단위 : 억원, %, 호, 명]

구분	일반예산 [농업예산]	비율	농가수	농가인구	1인당 예산액[원]
경북	75,796 7,294	100.00 9.62	176,385	376,562	1,937,000
전남	73,611 8,587	- 11.65	145,223	306,365	2,830,000
전북	56,290 7,537	- 13.39	94,935	208,600	3,613,000
충남	57,400 6,424	- 11.19	123,480	276,426	2,324,000
충북	45,789 3,022	- 6.60	70,874	164,387	1,838,000
경남	82,567 5,092	- 5.17	122,953	265,433	1,918,000
강원	52,297 3,085	- 5.90	67,809	154,089	2,002,000
경기	240,197 6,029	- 2.54	122,953	265,433	2,271,000

※농업기술원 예산은 제외한 수치임
※농업예산은 2019년 통계이며 농가인구는 2018.12.31.기준통계임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예산을 보면 경북은 9.6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13.39%, 충청남도는

11.19%입니다. 1인당 농업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000원의 절반 수준이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 1.7%에 초라한 농업예산 증가율, 3조 7,830억 원의 도 일반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 원 증가에 그친 농업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북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상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 경북을 외쳐왔지만 실제는 모두가 헛구호였던 것은 아닌지, 경북 농민은 우리 도의 헛구호를 철썩 같이 믿고 찍고, 또 찍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의 농업예산 증액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타 시·도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농도 경북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선도적으로 도정방향을제시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도정을 농정 부분에서도 뇌풀이할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산품 수출우선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 보장, 농어민 수당제

도입, 부재지주가 아닌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작목 육성 등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이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으로 상향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이 설치된 배수장은 벼농사 위주로 설계돼 있어 저지대 농경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군의 참외특화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시설 원예작물 재배지역은 침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겠습니다.

<표 3> 배수개선사업 설계 기준

구분	재배작물	농림부 [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 [건설과]
설계 강우량	벼	20년 빈도 이상 임의지속 48시간 강우량	50년 빈도
	원예	30년 빈도 임의지속 48시간 강우량 [종합분석 평가 후 결정]	
배수시설물 설계기준	벼	배수장 : 20년/2일 배수로 : 20년/1일 배수문 : 20년/2일 유수지 : 20년	소하천 : 50년 배수장 : 50년/2일 배수로 : 50년/1일 배수문 : 50년/2일 유수지 : 50년
	원예	배수장 : 30년/2일 배수로 : 30년/1일 배수문 : 30년/2일 유수지 : 30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수장 설치 계획 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 벼농사의 경우 20년 빈도, 원예작물 등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해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시설 역시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표4를 보시겠습니다.

<표 4>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 시도별 순위[2017]

순위	지역	종합지수
1	부산	119.39
2	세종	112.76
3	대전	112.52
4	대구	110.20
5	인천	107.86
6	서울	105.23
7	경기	103.52
8	전북	98.71
9	경남	96.99
10	광주	96.80
11	울산	94.94
12	제주	93096
13	충북	91.94
14	강원	89.71
15	전남	89.56
16	충남	87.86
17	경북	87.06

출처: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자료임(2018.8)

2017년 17개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를 보면 1위는 부산으로 119.39, 2위는 세종으로 112.76, 3위는 대전으로 112.52인데 비해 경북은 87.06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큰 문제는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동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 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로 인해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삶의 지수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지사님께서는 미래세대인 도내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 보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 우리 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 기관마다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수 동결과 유사기관 통합, 총정원제 운영,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기제직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고, 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여 조직 운영의 고유 목적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적인 근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19년 11월 22일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남용대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도정과 교육행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태풍 미탁 때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과 관심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아픔을 같이하겠다고 마음 보태러 먼 길 오셨던 각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울진군민을 대신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육지의 섬 울진, 기대했던 포항~삼척 간 고속도로도 예타에서 제외되고, 하세월 언제쯤이나 될는지 아득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기이 완성이다 된 신울진 1, 2호기가 준공 허가를 미루고 있으니 그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치를 기록하며 지방 경제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렇게 허덕대는 삶을 사는 사이 누구 하나 원전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고, 2018년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제기했던 14%밖에 되지 않는 원전 안전 대피시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무관심과 무대응에 대해 몹시 불쾌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님께 묻습니다.

우리와 같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의 경우는 유사시 원전 비상대피로로 사용하는 법성~홍농 간 국지도 공사에 총사업비 823억 중 45%인 358억의 원전지원사업비를 받아 대피도로를 완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라남도 주민들보다 못합니까?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담보된 대피소 하나 제대로 구축해 주지 않는 경상북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 대피로 하나 만들어 주지 않고 안전 문제를 털도 뽑지 않고 통째로 삼켜 버린 대한민국.

지사님, '임갈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말이죠. 정중히 제안합니다. 당신이 지켜 주셔야 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명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PPT에서 보듯 울진에서 태백으로 가는 길 12km의 생명길입니다.

이참에 강원도와 상생 상존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도 이 도로를 통해 구축하고, 꺼져가는 원전과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희망의 도로 건설이 꼭 완성이 되어 그나마도 불안에 떨고 있는 울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생명길 건설을 강력히, 아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도청 신도시 문제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공사는 인구 2만 5,000명 수용에 행정타운, 주거용지, 환경에너지타운, 한옥형호텔 등 주요 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9월 말 현재 정주 인구는 겨우 2만 1,000명으로 4,500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이전 대상기관 107개가 모두 이전을 한다 해도 계획된 도시가 완성되기는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 상태에서 보면 설계 수주만 해도 무려 여덟 차례나 진행되고 있고, 약 2년 후인 2단계 사업에는 무려 4만 5,000명의 정주인구 수용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나, 수치상으로만 보면 신도시 계획은 계획일 뿐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애시당초 신도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주요 시설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지 말아야 할 한옥형호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착공도 못 하고 있는 한옥형호텔은 지금이라도 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달 말쯤 KBS 뉴스광장이라는 데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PPT 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상영)

시·도 모두 교통이나 도박 등 기타 범죄가 65%로 상당수를 차지했지만 사기와 횡령 등 부패와 관련된 지능 범죄도 2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폭력 범죄나 살인강도 등 강력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지방공무원 범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경찰청 자료입니다. 아시고 계신 분은 벌써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절도, 강력사범, 폭력, 지능범죄, 교통, 도박 등 범죄유형도 다양합니다.

대구시와 합이 된 수치이지만 지방공무원 2,657명 중 경북이 1,986명으로 대구시보다 3배가 더 많고 죄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경북도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도 같은 기간 880여 명이 범죄자로 검거됐습니다. 전체로 보면 하루에 1.8명꼴로 기소가 된 셈입니다.

반부패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항상 숙지하고 행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고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인사혁신처,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을 대상으로 소극적 행정,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최대 2년간 승진을 제외한다는 내용 등 9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사자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질타가 크면 냉소를 낳고 질시가 크면 파멸을 낳는다.'고 하지요. '피는 피를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셰익스피어 맥베스에 나오는 말입니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도 있어야 한다지만 반부패 청렴에 대한 부분만큼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반부패 청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북개발공사가 발주한 신도시 2단계 사업은 대보건설이 발주 받은 1,339억과 코오롱글로벌이 발주 받은 1,389억의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등 2,728억 원으로 알고 있고 대보건설은 하도급 물량 가운데 상당 부분 지배회사인 대보실업에 싹 쓸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316억 5,500만 원의 하도급 물량을

10개 업체에 발주했는데 딱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외지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 조례를 보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장하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지사는 하도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이를 무시하고 책임관리 검토의견서만 받아 해당부서에 승인하도록 해주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모르쇠로 일관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부당행위라고 보는데 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북교육청 학생수련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PPT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도내에 있는 학생수련원 숙소 내부 사진입니다. 제일 위쪽이 안동, 그리고 상주, 청도, 울진입니다. 울진을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놓았고 선풍기라고는 요즘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 힘들 것 같은 벽걸이형 두 대가 16명 아이들의 냉방을 감당하고 있으며 천장은 석면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고 그 흔한 옷걸이 하나, 옷장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간에서 경북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건물 내진 보강하셨나요? 에어컨이라도 하나 달려고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아니면 석면을 교체하려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곳에 무슨 내진설계며 중앙난방식 에어컨을 설치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정한 학생들이 한 해 2,500명 넘게 왔다 갑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슨 말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시설을 보고 내 자식을 이곳에 보낼 학부모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실는지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결단을 내리시고 숙소만이라도 다시 지어줄 것을 강력히 부탁합니다.

둘째로 논문 끼워 넣기입니다.

10월 21일 교육부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2년 내 미성년자 논문공저자로 올린 건수가 794건이나 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니 묻습니다. 경북도 관내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있다면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10월, 11월에 걸쳐 한 30여 일 동안 일어난 학교폭력이 10건이 넘습니다. 점점 지능화. 구체화되고 폭력적이며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관내에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쉬쉬하고 은폐하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학폭의 원인과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답안지 조작 등 문제입니다.

10월 30일 전주 학교에서 OMR답안이 수정된 정황이 나타나 전북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요? 교수나 교직원의 자녀들이 한 학교에 있을 때는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도는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상피제나 사전신고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사건 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부실 급식, 회계 부적정 등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우리 지역인 경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93명 먹을 국에 달걀 4개 풀고 썩은 사과 7개를 나누어준 유치원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금 1억 3,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문제는 3개월 일한 조리사가 폭로하지 않았다면 영구 미제사건으로 그냥 묻혀 갔겠죠. 그리고 2019년 5월 28일에는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간식을 가로채 처먹은 교장선생도 있었지요. 종종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리사와 같은 공익제보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분보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여섯째로 생리대 지급 문제입니다.

아직도 바우처카드로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쟤네들은 저런 것도 받고 좋겠다."하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생리대 10개 들이가 1만 1,500원인데 바우처 카드는 1만 500원으로 돈도 부족하답니다. 이참에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 문제는 도지사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 문제입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무용지물의 성교육 표준안이 아주 선생님들을 애먹이고 있습니다. 조용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야, 게이새끼야."라고 한 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답니다. 교육부의 성교육 방침이 이러하다 보니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과 관련한 상담도 전부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학생들이 규범적인 말만 듣고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성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교사의 입바른 말을 배우지 않는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만 배운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여덟 번째로 학교체육진흥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번 국감을 보다 보니 진흥회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단체는 학교체육진흥법상

설립된 법인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단순 민법상 사단법인인 것 같은데 이 진흥회가 정부보조금 6억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각출로 1월에서 지금까지 9억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는데 국가보조금법에 의한 공모절차 없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말을 들으면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17개 시·도 연합 사단법인 성격으로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지원인가요? 만약 정상적인 지원이 아니라면 각출한 3억 4,000만 원은 어떻게 돌려받는 겁니까? 그리고 각출할 당시 본인 개인의 돈을 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에서 낸 겁니까? 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했다면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각출'이라함은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똑같은 금액을 낸 것일 테고, '갹출'이라 함은 서로가 다른 액수를 지원했다는 것인데 각출이 맞습니까, 갹출이 맞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부실경영 문제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문제 등 네 가지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단체들의 부실경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낙하산인사, 비정규식 정규식전환, 무경력·무자격 비상임이사 채용, 나눠 먹기식 성과급 지급, 국고보조연구수당, 보상장려금 부당지급 및 타용도 사용, 상시·지속적 업무, 정원에도 없는 계약직 임의채용(52명), 일감몰아주기 등 어떤 한 가지도 부조리 불공정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낱말들 아닙니까?

일일이 해당 기관들을 거론하며 질문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안이라서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만,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A연구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금변경계획수립 절차를 생략한 채 도지사와 사전협의, 내지는 이사회 결재만으로 기금 70억 중에 20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했다는데 선조치 후 해결식, 즉 절차와 방식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상식을 벗어난 짓을 했다는데 너무 경악했고, 또 B재단의 재단과 이사장 겸직승인 미이행과 보증금 환급업무 처리지연에 대한 경고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구지법에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는데, 후안무치의 소행으로 보기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고 하극상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 불가한 사안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을 보면 외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서른 곳 각 수장들의 출신을 살펴봤더니 공무원 출신기관장만 12명, 또 기관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출신이 11명이나 된다니 이분들은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다른 일은 안 하고 부조리에 대한 연구만 했답니까? 골라도 골라도 이렇게 철저히 무장된 부조리 사단을 발탁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이 기관들이 3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가 당해연도 경영실적평가에 한 번만 반영 된다는데 대한 도덕적 해이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님, 소송을 당한 지금의 심경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갈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서면 질문드립니다.

먼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학교급식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의 지역에 있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외지에서 들어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전부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영양사가 행사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그리고 국정공휴일 같은 경우와, 토·일요일 학생들이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식사를 해야 하는데 집에 가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밖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입니다.

비교적 대도시와 교육 격차가 큰 군지역의 소규모 학교 소외 현상의 핵심에는 초등학교 복식학급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복식학급 편성 기준은 학생수가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되어 그나마 복식학급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어 군지역의 작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어 참으로 잘한 교육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복식학급이 주로 소규모 학교에 편중되어 있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탈이 심각하며, 복식학급이 편성된 학교의 학생입장에서는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식학급이 편성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90% 이상의 학부모가 '전학 시키겠다'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하향하든지, 복식학급을 폐지한다면 농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 유출 및 교육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전면적 실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가 16명 이상인 학교는 교사 정원이 8명이고, 15명 이하일 경우 교사 정원은 5명입니다. 교사 정원이 5명이 될 경우 소위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교사 5명만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한문 등 교과는 순회교사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는 경상북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대신 자유학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니 학생수가 15명 이하인 경우 자유학년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교사와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인 경우 과연 자유학년제에서 실시해야 할 예술·체육 활동, 진로탐색활동 등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자유학년제 전면 실시에 따른 소규모 학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 례 안(38건) ····· 133

□ 규 칙 안(1건) ····· 327

□ 예 산 안(4건) ····· 331

□ 결 의 안(2건) ····· 349

□ 기 타 안(1건) ····· 353

□ 동 의 안(4건) ····· 357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19. 12. 16)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19. 12. 9)

○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19. 12. 9)

○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19. 12. 9)

○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최병준 의원('19. 11. 28)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주홍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남영숙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준열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무석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김준열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판수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선희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혁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김하수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박창석 의원('19. 11. 28)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승오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기욱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박권현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이종열 의원('19. 11. 28)

○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1. 28)

○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1. 28)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영선 의원('19. 10. 25)

○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태춘 의원('19. 10. 25)

○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채아 의원('19. 10. 25)

○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김영선 의원('19. 10. 25)

○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판수 의원('19. 10. 25)

○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김대일 의원('19. 10. 25)

○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지사('19. 10. 25)

○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0. 25)

○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0. 25)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0. 25)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9. 10. 25)

○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미애 의원('19. 9. 11)

○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9. 11)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9. 11)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9. 11)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9. 9. 11)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19. 9. 11)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미래전략기획단”을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청책관”으로, “일자리경제산업실”을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정책관”을 “아이여성행복국”으로, “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재난안전실”을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기획경제위원회 가.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 투자유치실,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산업실, 동해안전략산업국(충무과 및 환동해종합민원실을 포함한다)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생 략) 3.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가.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교육정책관, 자치행정국, 복지건강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교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5. (생 략) 6. 건설소방위원회 가.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 -----미래전략기획단, 청년정책관, ---------- 일자리경제실, 과학산업국, ---------- 나. (현행과 같음) 3. ---------- 가. --------- 아이여성행복국, ---------- 인재개발원, ---------- 4.~5. (현행과 같음) 6. ---------- 가.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 7.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필요한 사항 및 의원 연구활동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17조의2(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역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이하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경우 각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 이후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의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사항 및 의원연구활동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 6. (생 략)	제2조(기능)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 6. (현행과 같음)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 (생 략) 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구용역) ① ~ ② (생 략)	제17조(연구용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위원회는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 설〉	제17조의2(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이하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경우 각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 이후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의 예외로 한다.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table>
<tr><td colspan="2">접수 제 호</td><td colspan="5">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td></tr>
<tr><td rowspan="5">신 청 인</td><td colspan="2">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연락처</td><td>자 택</td><td colspan="4"></td></tr>
<tr><td>사무실</td><td colspan="4"></td></tr>
<tr><td>핸드폰</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장애유형과 장애정도</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발생시기</td><td colspan="5">년 월 일</td></tr>
<tr><td colspan="2">장애특성</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사용중인 보장구</td><td colspan="2"></td><td>필요한 보조기구 (필요시 작성)</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 rowspan="2">보조인력 (☑ 표시)</td><td colspan="3">☐ 기간제근로자</td><td colspan="2">☐ 비전형근로자</td></tr>
<tr><td colspan="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란 용역·일일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td></tr>
<tr><td colspan="7">〔증빙자료〕 장애인 등록증(사본) 각 1부</td></tr>
<tr><td colspan="7">「경상북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원 성명 (인)

경상북도의회의장 귀하</td></tr>
</table>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증장애의원”이란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1.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2·3.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 〔별지 제1호 서식〕 --------- 제출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지 서식〕 ---------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은 「경상북도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의장 부의장 의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비고

1.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달러화($)〕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의장·부의장</th><th colspan="2">의 원</th></tr>
<tr><td>철도 운임</td><td colspan="4">•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td></tr>
<tr><td>선박 운임</td><td colspan="4">•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td></tr>
<tr><td>항공 운임</td><td colspan="2">1등 정액</td><td colspan="2">1등 정액</td></tr>
<tr><td>자동차 운임</td><td colspan="4">실 비 액</td></tr>
<tr><td>일비 (1일당)</td><td colspan="2">가등급 40 나등급 40
다등급 40 라등급 40</td><td colspan="2">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td></tr>
<tr><td>숙박비 (1야당)</td><td colspan="2">실비(상한액 : 가등급 282)
실비(상한액 : 나등급 207)
실비(상한액 : 다등급 162)
실비(상한액 : 라등급 108)</td><td colspan="2">실비(상한액 : 가등급 223)
실비(상한액 : 나등급 160)
실비(상한액 : 다등급 130)
실비(상한액 : 라등급 85)</td></tr>
<tr><td>식비 (1일당)</td><td colspan="2">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td><td colspan="2">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td></tr>
<tr><td rowspan="3">준비금</td><td>15일 미만</td><td colspan="2">150</td><td>140</td></tr>
<tr><td>15일 이상
30일 미만</td><td colspan="2">180</td><td>170</td></tr>
<tr><td>30일 이상</td><td colspan="2">210</td><td>195</td></tr>
</table>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국외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제2조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
3. 정보화 역기능 대책 마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보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3. 정보시스템 자원의 공동 활용
4. 정보격차 해소 및 유해사이버 환경 개선 방안
5.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6.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추진계획에 따라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관련 인력 및 재원의 조달·운용
8. 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
9.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창의인재과장, 재무정보과장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공기질 업무담당과장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3. 학부모
4. 그 밖에 학교 실내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되어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업화”란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발전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리고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4조의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에는 해당 사업의 정성적(定性的) 목표와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을 매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전년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 집행 실적

2.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달성도
3. 전년도 추진사업의 대표성과

⑦ 시장·군수는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 지역특화작목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기술이전·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특화작목연구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특화작목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중복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연구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연구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유통·판매·수출 관련 전문가

제8조(협회의 설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협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실용화촉진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농촌진흥법」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장제(裝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도록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공공기관” 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경북형 말”이란 기술개발과 품종개량을 통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스포츠·레저에 최적화 된 스포츠·레저용 국산승용마와 식품·가공용 고품질 비육마를 말한다.
9. “승마시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마의 생산·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단체”란 말생산자협의회, 말영농조합법인, 말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말산업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도의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11. “말산업특구”란 법 제20조에 따라 도내에서 특구로 지정된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책의 개발·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특구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치료와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소관 부서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말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경북형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의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말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의 지원 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유소년 전문 승마시설의 인증) ① 도지사는 승마장의 경영안정과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내 신고 된 승마장을 대상으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제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원형마장 또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마장을 보유하고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장구를 구비할 것
2. 포니, 한라마 등 유소년 전문 승용마를 7두 이상 보유할 것
3. 승마용 말 전 두수 보험을 가입할 것
4. 생활스포츠지도사,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전문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5. 편리한 예약시스템, 유소년 강습 매뉴얼 등을 갖출 것
6. 그 밖에 유소년 승마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생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승용마 보험료, 안전장구, 톱밥, 조사료
3. 유소년승마대회 참가비 지원, 해외교류 강습지원
4. 그 밖에 승마인구 저변 확대와 승마장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으로 인증된 승마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의 인증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법령 위반 등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 시장·군수, 승마 관련 단체는 유소년 전문 승마장의 운영 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경북형 말의 육성)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내에서 생산된 경북형 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북형 말의 생산과 훈련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교육,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2. 말산업특구를 중심으로 경북형 승용마, 비육마의 품종 육성과 보급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말의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하는 사업

제11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 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거래시장의 개설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시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말 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말사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기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말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말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5조(말산업 관련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산업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8조, 제11조, 제1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군에 설치된 유소년 승마장은 이 조례 시행 후 3년 까지는 제9조에 따른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를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 소속하에”를 “도지사 소속으로”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를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친환경농업 시상”을 “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농촌체험과의 연계 등)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익년도”를 “다음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처리실태 등”을 “처리실태”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도지사가 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의 제목 중 “시상”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노력”를 “기여”로, “시상”을 “포상”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 농업기술의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규정에 따른다.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업무 담당국장, 농업기술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품질관리 담당과장,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한다.	④ --------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

현 행	개 정 안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 3. (생 략) 4. 친환경농업 시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기능) 1. ~ 3. (현행과 같음) 4. 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의 ---------- 5. (현행과 같음) 6. ---------- 사항
제9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및 시장·군수는 친환경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시상 및 홍보한다.	제9조(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포상----------.
〈신 설〉	제13조의2(농촌체험과의 연계 등) 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보고서 제출) ① 도지사는 매 연도 말을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육성 실적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축산분뇨 처리실태 등 〈신 설〉	제15조(친환경농업 평가보고서 제출) ① ---------- 다음 해 ----------. ② ---------- 다음 각 호에----------. 1. ~ 6. (현행과 같음) 7. ------- 처리실태 8. 그 밖에 도지사가 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친환경농업 유공자 시상)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에 노력한 생산자 및 관계기관·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9조(친환경농업 유공자 포상) ---------- 기여---------- 포상---------.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시행에----------.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35조,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로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과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시행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도시와 농어촌 간(이하 "도·농어촌 간"이라 한다)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축·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4.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5. "지역농산물"이란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도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GMO)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등

바. 도 이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유통 과정 중 방부제, 엠에스지(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내의 시장·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7. "공공급식지원센터"란 도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생산·가공,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 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9. "도 이외 지역"이란 도와 연접된 지역(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두고 서로 붙어있는 광역시·도)을 말한다.

10. "지원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신청 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우선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3. 공공급식에 우수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지원과 생산, 가공 및 유통,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지원대상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배분 및 공공급식의 확대 방안

2.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 방안

제 2 장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의 지원

제5조(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 영역으로서 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기관·단체·시설
2.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군부대
6.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지원 내용) ① 도지사는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
2.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 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4.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6.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등 관련교육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우수농산물을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도 이외 지역의 우수식재료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경비를 교부받은 대상 기관

(이하 "대상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맞게 목적대로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대상 기관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상 기관의 장은 도지사의 공공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 제출 요구, 회계검사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상 기관의 장은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도·농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감독 등) ①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 기관의 장이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급식의 확대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를별도로 지원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21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품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가능한 지역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경상북도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실행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경상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관련 생산자 및 소비자 간 협의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 급식 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농 간 상생교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담당 국장 및 제5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급식 관련 전문가
3. 공공급식시설협의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학교영양사·교사 단체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임기가 있는 기관 소속의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21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군 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경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 확대를 위한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
4.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공공급식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6. 소비자와 생산자 간 교류촉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도지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2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노목(老木)”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도지사는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에 따른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의 본문 중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을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이하 "보호대상수목" 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밖의 보호대상수목을 포함한다.	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 ----------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도지사는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조의3(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의5에 따른다.
〈신 설〉	제3조의4(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현 행	개 정 안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8에 따른다.
제7조(보호수의 보호) 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2. 임산물, 토석의 굴취·채취 3.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보호수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5. 보호수 주변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6.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 되는 화학재료 등을 사용하여 나무의 빈 공간을 메우는 행위	제7조(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현 행	개 정 안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보호수의 후계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채취, 절토·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호·관리계획 등을 받은 도지사는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삭 제〉
⑤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 명령) —— 보호수의 보호 시설물 ---------- ---------- ---------- ---------- ------.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차량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경상북도에 차고지를 둔 법 제3조제3항과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3항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5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CO2) (ppm)	포름알데히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10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75이하	35이하	1,000이하	80이하	800이하	10이하
실내주차장	200이하		1,000이하	100이하		25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비고 :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조경제산업실장”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으로, “지역균형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조직) ①·② (생 략)	제9조 (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조정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자치행정국장, 농축산유통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일자리경제산업실장 ----------건설도시국장---------그 밖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6세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조 및 제43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상북도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설치된 노인·장애인·여성·아동·노숙인 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장기요양기관
2. "법인 및 기관·단체"란 도에 소재지 두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법인과 기관·단체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제공자"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평가 : 법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평가

나. 인증 :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다. 컨설팅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라. 사후관리 :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인증 완료 후 인증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건전한 관리·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한다.

1.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
2. 법 제43조의2의 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
3. 그 밖에 서비스 품질관리에 대하여 스스로 신청하거나 도에서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

② 제1항의 품질관리 대상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및 기관·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 및 인증사업)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가 및 컨설팅 사업
2. 인증 및 사후관리 사업
3.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4.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복지서비스 품질 개선과 인증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 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과 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및 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확인·검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경상북도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자원의 보전과 진흥 및 해양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안 해양문화를 창달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란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예술과 생활방식 등 다양한 유산을 보존·계승하며 현재와 미래의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
2.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도민에게 해양, 해양문화, 해양문화산업

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는 해양과 관련한 모든 형태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동해인문학"이란 동해안과 관련된 사람, 언어, 문학, 역사, 철학, 풍속, 정체성, 기억 등을 비롯한 문화 전반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를 말한다.
4.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해양과 관련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6.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시·군, 경상북도교육청,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2장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제5조(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지역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
2.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해양문화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문화 진흥)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해양 축제 등 도민의 해양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2. 해양문화의 복원 및 계승·발전 지원 사업
3. 해양문화 및 해양문화콘텐츠 관련 유·무형 자산의 조사·제작·연구·확산
4. 해양문화와 관련되는 단체 등과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5.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6.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7. 등대, 항만시설, 수산물창고 등 근대 해양문화 건축물의 보전·활용
8. 그 밖에 해양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조(해양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
2. 국가해양연구·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바다 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보급·운영
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
5. 동해인문학 정립 및 확산을 위한 사업
6. 해양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 사업
7. 초·중·고등학생들의 해양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해양 교육 활동 지원
8. 대학교의 해양 관련 강의 교과 개설 지원
9.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8조(해양문화산업 육성)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의 일환으로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문화산업 관련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대회 유치 또는 개최
2. 해양문화산업 관련 연구·전시·기업입주 등을 위한 공간 조성
3.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상업화 및 창업 지원
4. 해양문화산업 관련 기업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해양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 단체,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체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전담기관 설치 등

제12조(전담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동해안 해양문화 증진, 해양교육 활성화 및 동해인문학 연구를 위하여 경상북도 환동해 해양문화·교육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도지사는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대학 등을 말한다)을 경상북도 해양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경상북도 해양문화·교육 진흥위원회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과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자문
2.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3. 제11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지정·운영에 관한 자문
4. 제12조에 따른 해양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3. 해양문화산업 관련 법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문화 진흥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2조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를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조제3항제3호(종전의 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4호(종전의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펀드 투자 회수금

제4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도지사는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9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조제2항제3호"를 "제3조제3항제3호"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경상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 및 제62조의16---.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 -- 중소벤처기업부---------------.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현 행	개 정 안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조의31----------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11.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62조의2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기금은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3.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신 설〉	4. 펀드 투자 회수금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

현 행	개 정 안
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도지사는 자금지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신 설〉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 및 출연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제9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 및 출연) ① 제3조제3항제3호——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에	② 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에

현 행	개 정 안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5. ~ 6. (생 략) ⑤ ~ ⑥ (생 략)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따른다.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5. ~ 6.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감면시행일 이후 최초로”를 “최초로”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를 적용한 세율에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 각각 "면제"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제4조 및 제14조"를 "제4조, 제14조 및 제14조의 2"로, "단서"를 "각 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2022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②「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제6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2022년 12월 31일----------. ---------- ---------- ----------.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생 략)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2022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중 경상북도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한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11조(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2022년 12월 31일-- -----. ----------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2022년 12월 31일 ----------. ----------
제14조(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 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이전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기관"이라 한다)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업·기관·단체(이하 이 조에서 "유관기관"이라 한다)를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청	제14조(도청이전기관 이주 종사자 감면) ① ----------

현 행	개 정 안
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주하는 종사자(이전기관 또는 유관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득함으로써 1기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	---------- 2022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태아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이 경상북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제14조의2(다자녀가구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① ----------

현 행	개 정 안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되는 경우 감면시행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1개의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를 적용한 세율에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최초로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다자녀 양육자가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면제---------- 면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	제2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현 행	개 정 안
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조, 제4조 및 제14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 략)	----------. 1. --, 제4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 각 호----------. 2.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
2. "업무제휴기관"이란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리 사항을 매년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주관부서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홍보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제작·활용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물”이란 경상북도의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정책 및 사업 등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2. “간행물”이란 홍보물 중 발행부서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홍보·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작의 필요성 및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의 통폐합

2. 제작부수 및 배포 등 홍보방법
3. 제작내용, 판매 여부, 판매가격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민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 담당 과장 및 경북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홍보물 및 간행물의 디자인과 편집·연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상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한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전심의) ① 발행부서가 1천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 및 간행물을 제작하거나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그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발행부서의 장은 그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내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미필)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제작 및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 조정) ①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간행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판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판매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을 직접판매(인터넷 판매를 포함한다)하거나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를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간행물 판매업자는 판매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간행물 판매업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간행물 판매업자가 판매업 관련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위탁의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간행물 판매업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홍보물 판매업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 수수료) ① 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판매 수수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율을 결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금융, 보험, 회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대부금은 그 대부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6조의3(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기금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과장 2. 금융, 보험, 회계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 설〉	제6조의4(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경상북도 소속(도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경상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도 소속"이라 한다.) 5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로 대부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 ---------- 공무직근로자----------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이주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도청 이전신도시로 이전하거나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환동해지역본부 소재지로 이전하는 도 소속기관에 소속된 3급 이하 공무원과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는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분양(신축포함)하거나 전세 입주하는 경우 대부금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할 수 있다. 1. 도청 이전 신도시 및 환동해지역본부 소재지 2. 도청 및 환동해지역본부 본관을 기준으로 30㎞이내 시·군 ③ 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시기 및 차등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제14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
2.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제14조에 따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조긴 중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를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융자기관이”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설치운영”을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기금의”를 “도지사는 기금의”로,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제5조제1항 관련)

대 상 별	매 출 대 상	매 출 기 준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6/100
	2) 1,600씨씨 이상	〃 8/100
	3) 2,000씨씨 이상	〃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 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2) 1,600씨씨 이상	〃 4/100
	3) 2,000씨씨 이상	〃 6/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씨씨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3. 기타허가 및 신고	가.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나. 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지(전·답)	제곱미터당 1,500원
	2) 산·임야, 잡종지 등	시: 제곱미터당 3,000원 읍·면: 제곱미터당 1,500원
	다. 토석·사력 채취허가(「하천법」)	점용료의 5/100
	라. 골프장 등록	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계약체결(자치단체 전액출자법인의 계약체결을 포함한다)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을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을 제외한다)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5/100

※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면 제 대 상(제5조제4항 관련)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 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법」·「상법」 외의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자. 종교단체
2. 매입의무 면제대상 인·허가 등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와 공동명의 자동차의 등록(1인 1대에 한하며,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관련 부상자로서 신체 장해등급을 받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다.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라. 주민 직영사업

구 분	매 출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마.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사. 「석탄산업법」에 따른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중 도로, 하천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력 채취허가 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임대는 동 지구 지정기간에 한한다) 자.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차.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차량 대체취득시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에 따라 같은 종류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다만, 종전 자동차의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카.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타.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용역 계약 파.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3. 한시 면제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면제한다. 나. 하이브리드자동차 : 15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비고 : 감면기한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의 감면기한으로 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의 감면기한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을---------- ---------- ----------관리·운영 ---------- -------.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노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후 일시 상환하며 그 이율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 ---------- 제14조에 따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융자대상 기관) 기금의 융자대상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및 시·군 2. 도 및 시·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
제10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 등 융자조건은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융자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 ---------- 제14조에 따른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
② 융자기간은 다음조건 중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선택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융자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융자기관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설치운영	제4장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기능) ---------- 각 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3.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5. 그 밖에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가. 기금운영계획	
나. 채권 발행등 기금조성 사항	
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기금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부모회가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 및 제30조제1항의 병설학교 또는 통합학교가 학부모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부모회의 명칭) 학부모회의 학교별 명칭은 학교명 다음에 학부모회를 붙여 표시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학교사업 중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회원 등) ① 학부모회의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②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학부모회 구성을 유예할 수 있다.

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자격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년 1회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학부모회의 조직·운영)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③ 학부모회는 학부모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 ① 회장은 매년 3월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장은 총회소집 목적 및 안건, 일시, 장소 등을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총회종료 후 7일 이내에 총회결과를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4. 학교운영을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한다.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하고,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의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개최한다.

④ 회장은 대의원회의 목적 및 안건, 일시, 장소를 대의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대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개최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

3. 대의원회의 활동을 위해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학년·학급·기능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그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사항 등의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학급별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부모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며 그 밖의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회장은 학부모회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7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해당 학부모회의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8조(재정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임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이 조례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교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9년 11월 25일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맞지 않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2항 중 “명백한 사유”를 “사유”로 한다.
   나. 제7조제3항 단서 중 “명백한 사유”를 “사유”로 한다.

3.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붙임

4.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명백한 사유”를 “사유”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명백한 사유”를 “사유”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생 략)	제3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 및 제30조제1항의 병설학교 또는 통합학교가 학부모회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사유 ----------.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② (생 략)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학부모회 구성을 유예할 수 있다.	③ ---------- 사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관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통하여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
2. 유공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보상금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시·군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입상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체육대회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

1. 전국 학생 체육대회
   가. 전국소년체육대회
   나. 전국체육대회

2. 국제 체육대회
   가. 아시아경기대회
   나. 세계선수권대회
   다.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라. 올림픽대회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경상북도 도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위해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현황
2.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목표 및 계획
3.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현황
4. 도민안심 공중화장실 지정 현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중화장실 등 환경 개선사업
2.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3. 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사업
4. 문주등 등 조명시설 설치사업
5.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 구축)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와 제2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실시 및 홍보물의 작성·배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공중화장실 등을 도민안심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민안심 공중화장실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및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도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도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 ① 도지사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누리집 등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개선권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복지는 사회·경제·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경상북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건 및 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개선 지원
3.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지원
4. 노인의 날 기념식 지원
5. 노인 돌봄 관련 사업 지원
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
7. 노인교통편익서비스 제공 지원
8.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9. 노인목욕비 지원 등 노인보건 증진사업 지원
10. 그 밖에 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보고·검사)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군,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른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 종료 후 계속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998명"을 "7,0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208명"을 "2,2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11명"을 "11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직급별 \ 기관별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합 계		7,036	-					
정무직		1	-					
일반직	소계	2,069	-					
	1급	1						1
	2급	1				1		
	2～3급	2	1	1				
	3급	13	9		1	2		1
	3～4급	2	2					
	4급	93	62	8	5	9	9	
	5급 이하	1,943	-					
	전문경력관	14	-					
별정직	소계	17	-					
	1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이하	13	-					
연구직	소계	240	-					
	연구관	44			43		1	
	연구사	196	-					
지도직	소계	30	-					
	지도관	10			10			
	지도사	20	-					
소방직	소계	4,636	-					
	소방정	24	5		19			
	소방령 이하	4,612	-					
교원	소계	43						
	총장	1			1			
	교수	31			31			
	조교	11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99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2,208명 2.·3. (생 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1명	제2조(정원의 총수)---------- ----------7,036명---- ----------. 1. ---------- 2,240명 2.·3. (현행과 같음) 4. ---------- 117명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일자리경제산업실”을 “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아이여성행복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창업·경영·기술지원,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과학산업국) 과학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아이여성행복국) 아이여성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지원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이·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3장제2절의 제목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3조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제5장제8절(제63조의2부터제63조의4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9절부터 제11절까지를 각각 제5장제8절부터 제10절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 중 과학산업국 및 아이여성행복국의 존속기간은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 · 국 · 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 재난안전실 · 일자리경제산업실 · 자치행정국 · 문화관광체육국 · 농축산유통국 · 환경산림자원국 · 복지건강국 ·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 · 국 · 본부의 설치)----------일자리경제실 · 과학산업국 · 아이여성행복국----------.
〈신 설〉	제7조(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창업 · 경영 · 기술지원,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교통 및 자동차 물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제교류 · 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제8조(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과학산업국) 과학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일자리 창출 종합기획 및 조정,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2. 창조경제기본계획 수립, 첨단산업, 산학협력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육성 및 차세대 성상산업에 관한 사항 4. ICT, 소프트웨어 및 방송통신산업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창업 경영·기술지원 및 노·사·정 협조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물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7. 교통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교류 협력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1. 과학기술정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 미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 설〉	제8조의2(아이여성행복국) 아이여성행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4. 여성정책 지원 및 가족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이·여성·가족복지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제9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현행과 같음) 6의2.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7. ~ 13. (현행과 같음)
제2절 지방공무원교육원	제2절 인재개발원
제22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36길 11에 둔다. 제23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소관사무) 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2. (생 략)	제22조(설치) ① ---------- ---------- ---------- ---------- 경상북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② 인재개발원----------. 제23조(원장) 인재개발원---------- ---------- ----------. 제24조(소관사무) 인재개발원장----------. 1.·2. (현행과 같음)
제8절 대구경북상생본부	〈삭 제〉
제63조의2(설치) ①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대구광역시와 협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체제 구축, 관광홍보 및 지역상품의 판로 개척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대구경북상생본부(이하"대구경북상생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대구경북상생본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에 둔다.	
제63조의3(본부장) 대구경북상생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63조의4(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상생협력 정책 기획 2.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 3. 대구권 도정 홍보 4. 시도민 소통교류사업 5. 대외 통상교류 협력 의전 6. 농수특산물 등 지역 생산품의 직판활동 지원 7. 그 밖에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제9절 산림자원개발원	제8절 산림자원개발원
제10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9절 노인전문간호센터
제11절 경북도서관	제10절 경북도서관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하여”를 “평가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과 제3호와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을 "(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의 "「법」"을 "법"이라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특정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분석평가 및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을 "(성별영향평가 및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및 노동,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 예산 편성과 시행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을 위한 지침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성인지예산서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9.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4.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5(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6(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13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7(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성인지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같은 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각각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5호 및 제6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기"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을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분석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성별영향평가센터"로 한다.

②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성별영향평가----------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 ----------. 1. "성별영향평가"---------- ---------- ---------- ---------- 평가하여 ---- ---------- ---------- ----------.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성별영향평가---------- ---------- ----------. ② ---------- ---------- 성별영향평가----------

현 행	개 정 안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 성별영향평가-------. 1.·2. (현행과 같음) 3. 성별영향평가---- 4. ------ 성별영향평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및 실시) 도지사는 도가 수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2. (생 략)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 ---------- 성별영향평가----------. ---------- ---------- ---------- ----------. 1.·2.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서 작성)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서----------.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분석평가결과 반영) ① 도지사와 공공기관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 성별영향평가----------. ② ------ 성별영향평가 ---------- ----------.
제10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반영 등) ① -------- 법 ---------- ---------- 특정성별영향평가----------.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 ---------- 특정성별영향평가---------- ----------.
제11조(분석평가 및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도지사는 분석평가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및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 성별영향평가 ---------- ---------- ---------- ----------.
제1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7조의 경상북도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내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분석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의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신 설〉	5. 교육, 고용 및 노동,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성인지 예산 편성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6.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을 위한 지침서 개발에 관한 사항
〈신 설〉	7. 성인지예산서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신 설〉	8.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신 설〉	9.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시·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 4.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센터장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경상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경상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3(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의5(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6(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등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13명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연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이 조 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7(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성인지 예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현 행	개 정 안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생 략) 2.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서의 작성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 반영 4. (생 략) 5. 제21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 1. (현행과 같음) 2.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3. -------- 성별영향평가------- 4. (현행과 같음) 5. --------- 성별영향평가---------- 6. ----- 성별영향평가 ---------- ------ 성별영향평가------
제14조(분석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정책 수행 시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분석평가 교육 2. ~ 4.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 1. 성별영향평가-----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조(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①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기관----------.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분석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① 도지사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정보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등) ①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② ----------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

제10조의 제목 "(기관평가 및 포상)"을 "(기관평가 및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 라.·마. (생 략) 2. ~ 4. (생 략)	제2조(정의)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직기업 라.·마.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기관평가 및 포상) ① (생 략) ② 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기관평가 및 표창)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정하여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영화초등학교화덕분교장병설유치원, 석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김천신일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김천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김천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천시 부곡맛고을1길 147

“진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구미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구미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
구미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산동면 옥계신당로9길 21

"남율유치원"란 다음에 "석적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석적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10

별표 2 중 영화초등학교화덕분교장란을 삭제하고,

"구미인덕초등학교"란 다음에 "구미신당초등학교", "구미원당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구미신당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
구미원당초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옥계신당로9길 21

별표 3 중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 우산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울릉중학교 위치란 중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1-19"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323"으로 한다.

별표 4 중 "형곡고등학교"란 다음에 "구미산동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구미산동고등학교	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2로 11

감포고등학교 명칭란 중 "감포고등학교"를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도서 〈가지역〉의 "울릉서중학교", "울릉북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나지역〉의 "우산중학교"란을 삭제하며, 울릉중학교 기관소재지 위치란 중 "울릉읍 도동길 151-19"를 "울릉읍 사동리 323"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영화초등학교화덕분교장병설유치원 / 영천시 화산면 덕암길 104	〈삭 제〉
석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 / 칠곡군 석적읍 남율로 12길 76	〈삭 제〉
〈신 설〉	김천부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김천시 부곡맛고을1길 147
〈신 설〉	구미신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
〈신 설〉	구미원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 / 구미시 산동면 옥계신당로9길 21
〈신 설〉	석적유치원 / 칠곡군 석적읍 포망로 10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영화초등학교화덕분교장 / 영천시 화산면 덕암길 104	〈삭 제〉
〈신 설〉	구미신당초등학교 / 구미시 산동면 신당4로 29
〈신 설〉	구미원당초등학교 / 구미시 산동면 옥계신당로9길 21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울릉서중학교 / 울릉군 울릉읍 서면 남서길 52	〈삭 제〉
울릉북중학교 / 울릉군 울릉읍 북면 천부길 74-7	〈삭 제〉
우산중학교 / 울릉군 울릉읍 저동길 54	〈삭 제〉
울릉중학교 /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51-19	울릉중학교 /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323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4】 고등학교
<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r><tr><td colspan="2">〈신 설〉</td></tr><tr><td>감포고등학교</td><td>경주시 감포읍 감포로12길 20</td></tr></table></td><td>【별표 4】 고등학교
<table><tr><th>명 칭</th><th>위 치</th></tr><tr><td>구미산동고등학교</td><td>구미시 산동면 신당인덕2로 11</td></tr><tr><td>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td><td>경주시 감포읍 감포로12길 20</td></tr></table></td></tr>
</table>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264명"을 "5,3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명"을 "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4,866명"을 "4,9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393명"을 "403명"으로 한다.

별표 3 총계의 합계란 중 "5,264"를 "5,332"로 하고, 일반직 계의 합계란 중 "4,846"을 "4,904"로 하며, 5급 이하 소계의 합계란 중 "4,812"를 "4,865"로 하고, 전문경력관 소계란의 합계란 중 "6"을 "11"로 하며, 특정직 계의 합계란 중 "393"을 "403"으로 하고,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의 합계란 중 "344"를 "354"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264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5,332명---------- ---------.
1.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정원: 5명	1. ----------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866명	2. ---------- ---------- ---------- ---------- 4,923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93명	3. ---------- 403명

[별표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각급학교
총 계	5,264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4,846		-		
3 급	3		3		
3~4급	5		5		
4 급	20	1	18	1	
5급 이하 소계	4,812		-		
전문경력관 소계	6		-		
연구직 계	24		-		
연구사	24		-		
특정직 계	393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49	-	25	24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44		-		

[별표3]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 단위기관별	합계	경상북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공립각급학교
총 계	5,332				-
정무직 계	-		-		
교육감	-		-		
일반직 계	4,904		-		
3 급	-		-		
3~4급	-		-		
4 급	-	-	-	-	
5급 이하 소계	4,865				-
전문경력관 소계	11				-
연구직 계	-				-
연구사	-				-
특정직 계	403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 교육연구관	-	-	-	-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 ·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 교육연구사	354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을 “유·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과 발명메이커교육”으로, “생활화”를 “생활화와 메이커활동의 대중화”로 한다.

제3장제5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분원) 과학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제1항 중 “경상북도민”을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으로, “제공하고”를 “제공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역”을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지역"으로, "제공하고"를 "제공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제27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7조) 중 "별표 4"를 "별표 7"로 한다.

제5장 앞에 제3절(제27조 및 제28조), 제4절(제29조 및 제30조)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절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

제27조(설치) ① 유·초·중·고등학교 메이커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교원연수, 메이커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메이커 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센터장)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절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

제29조(설치) 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30조(관리소장)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에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7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4)의 제목 중 "(제27조 관련)"을 "(제31조 관련)"으로 하고, 제1호 행정국장의 사무분장란 중 "교육실무직원"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사무분장
1. 과학교육 장학 및 연구학교 관리 2.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개발 및 보급 3. 교원연수 및 학생실험실습 지도 4. 과학관련 대회 및 행사 5.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6. 과학관련 전시 및 전시실 운영 7. 발명교육센터 운영 및 발명교육 업무 8.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운영 및 메이커교육 업무 9. 그 밖에 제15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10호의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관리소장"란 다음에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장",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관리소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사무분장
교육지원청 메이커교육 센터장	1. 메이커교육센터 시설·설비와 장비 유지관리 2. 메이커교육센터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 3. 메이커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메이커교육 자료 제작·보급 5. 메이커교육 전시·체험활동 운영 6. 메이커교육센터 사용자 안전 및 보건·위생 7. 그 밖에 제27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교육지원청 안전체험관 관리소장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안전체험 교육자료 및 안전체험정책의 연구·개발 3. 교직원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4. 그 밖에 29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분원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의2 관련)

분원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별표 5〕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7조제2항 관련)

메이커교육센터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북부메이커교육센터	경북 안동시 영호6길 26

〔별표 6〕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9조제2항 관련)

안전체험관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설치) ① 교육공무원·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실무직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9조(설치) ① ---------- 교육공무직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설치) ①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5조(설치) ① 유·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과 발명메이커교육 ---------- 생활화와 메이커 활동의 대중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분원) 과학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7조(설치) ① 경상북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교육청도서관(이하 "교육청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17조(설치) ①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 경상북도민---------- ------- 제공하며---------- ----------.
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 별표 2 -----.
제23조(설치) 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및 문화	제23조(설치) ①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

현 행	개 정 안
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둔다.	하고, 지역 ---------제공하며, ----------.
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 별표 3------.
제25조(설치) ① (생 략)	제2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위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 ---- 별표 4------.
제27조(사무 분장) 본청 국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의 사무 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31조(사무 분장) ---------- ---------- 별표 7과----.
〈신 설〉	제3절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
〈신 설〉	제27조(설치) ① 유·초·중·고등학교 메이커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교원연수, 메이커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메이커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28조(센터장)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제4절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td></tr>
<tr><td>〈신 설〉</td><td>제29조(설치) 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6과 같다.</td></tr>
<tr><td></td><td>제30조(관리소장)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에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td></tr>
<tr><td>〈신 설〉</td><td>〔별표 1〕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분원의 명칭 및 위치(제16조의2 관련)
<table><tr><th>분원명</th><th>위 치</th></tr><tr><td>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td><td>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td></tr></table></td></tr>
<tr><td>〔별표 1〕
(생 략)</td><td>〔별표 2〕
(현행과 같음)</td></tr>
<tr><td>〔별표 2〕
(생 략)</td><td>〔별표 3〕
(현행과 같음)</td></tr>
<tr><td>〔별표 3〕
(생 략)</td><td>〔별표 4〕
(현행과 같음)</td></tr>
</table>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별표 4〕
사무분장(제27조 관련)
1. 본청
<table><tr><th>구분</th><th>사무분장</th></tr><tr><td>교육국장</td><td>1 ~ 13 (생 략)</td></tr><tr><td>행정국장</td><td>1 ~ 8 (생 략)
9. 교육실무직원 인사·노무 및 정·현원 관리
10 ~ 12 (생 략)</td></tr></table>
6.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table><tr><th>사무분장</th></tr><tr><td>1 ~ 6 (생 략)
7. 메이커교육 및 발명교육 업무
8. 수학문화관 운영
9. (생 략)</td></tr></table>
10.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table><tr><th>구분</th><th>사무분장</th></tr><tr><td>교육지원청
도서관장</td><td>1 ~ 7 (생 략)</td></tr><tr><td>교육지원청
학생수련원
관리소장</td><td>1 ~ 5 (생 략)</td></tr><tr><td>〈신 설〉</td><td></td></tr></table></td><td>〔별표 7〕
사무분장(제31조 관련)
1. 본청
<table><tr><th>구분</th><th>사무분장</th></tr><tr><td>----</td><td>1 ~ 13 (현행과 같음)</td></tr><tr><td>----</td><td>1 ~ 8 (현행과 같음)
9. 교육공무직원 -------
----
10 ~ 12 (현행과 같음)</td></tr></table>
6.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
<table><tr><th>사무분장</th></tr><tr><td>1 ~ 6 (현행과 같음)
7. 발명교육센터 운영 - ---- --
8.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 운영 및 메이커교육 업무
9. (현행과 같음)</td></tr></table>
10.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table><tr><th>구분</th><th>사무분장</th></tr><tr><td>-----
----</td><td>1 ~ 7 (현행과 같음)</td></tr><tr><td>-----

----</td><td>1 ~ 5 (현행과 같음)</td></tr><tr><td>교육지원청
메이커교육
센터장</td><td>1. 메이커교육센터 시설·설비와 장비 유지관리
2. 메이커교육센터 사용허가 및 장비 대여</td></tr></table></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구분	사무분장	구분	사무분장
〈신	설〉		3. 메이커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메이커교육 자료 제작·보급 5. 메이커교육 전시·체험활동 운영 6. 메이커교육센터 사용자 안전 및 보건·위생 7. 그 밖에 제27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신	설〉	교육지원청 안전체험관 관리소장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안전체험 교육자료 및 안전체험정책의 연구·개발 3. 교직원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4. 그 밖에 29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5]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7조제2항 관련)

메이커교육센터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북부메이커교육센터	경북 안동시 영호6길 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6]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 및 위치(제29조제2항 관련)

안전체험관명	위 치
경상북도교육청 의성안전체험관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규 칙 안 〓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박차양 의원('19. 11. 28)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79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예산안 심의)	제68조(예산안 심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예 산 안

○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도지사('19. 11. 28)

○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교육감('19. 11. 28)

○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19. 11. 11)

○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19. 10. 25)

2019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162,256,000	100.00%	9,675,162,641	100.00%	487,093,359	5.03%
일반회계	9,009,247,000	88.65%	8,545,331,565	88.32%	463,915,435	5.43%
특별회계	1,153,009,000	11.35%	1,129,831,076	11.68%	23,177,924	2.05%
기타특별회계	1,153,009,000	11.35%	1,129,831,076	11.68%	23,177,924	2.05%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17,161,920	6.07%	592,753,150	6.13%	24,408,770	4.12%
치수사업특별회계	8,477,249	0.08%	5,580,000	0.06%	2,897,249	51.9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108,590	0.10%	10,108,590	0.10%	0	0.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8,151,777	0.97%	98,151,777	1.01%	0	0.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936,000	0.32%	32,936,000	0.34%	0	0.00%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11,332,319	0.11%	11,332,319	0.12%	0	0.00%
소방안전특별회계	374,841,145	3.69%	378,969,240	3.92%	△4,128,095	△1.09%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 · 관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162,256,000	100.00 %	9,675,162,641	100.00 %	487,093,359	5.03%
100 지방세수입	2,086,600,000	20.53 %	2,086,600,000	21.57 %	0	0.00%
110 지방세	2,086,600,000	20.53 %	2,086,600,000	21.57 %	0	0.00%
200 세외수입	238,468,972	2.35 %	228,902,991	2.37 %	9,565,981	4.18%
210 경상적세외수입	37,458,317	0.37 %	34,717,280	0.36 %	2,741,037	7.90%
220 임시적세외수입	201,010,655	1.98 %	194,185,711	2.01 %	6,824,944	3.51%
300 지방교부세	1,354,247,040	13.33 %	1,341,190,800	13.86 %	13,056,240	0.97%
310 지방교부세	1,354,247,040	13.33 %	1,341,190,800	13.86 %	13,056,240	0.97%
500 보조금	5,521,243,232	54.33 %	5,061,425,285	52.31 %	459,817,947	9.08%
510 국고보조금등	5,521,243,232	54.33 %	5,061,425,285	52.31 %	459,817,947	9.08%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61,696,756	9.46 %	957,043,565	9.89 %	4,653,191	0.49%
710 보전수입등	193,136,209	1.90 %	186,187,820	1.92 %	6,948,389	3.73%
720 내부거래	768,560,547	7.56 %	770,855,745	7.97 %	△2,295,198	△0.3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0,162,256,000	100.00%	9,675,162,641	100.00%	487,093,359	5.03%
010 일반공공행정	1,173,447,262	11.55%	1,092,396,053	11.29%	81,051,209	7.42%
020 공공질서및안전	750,494,058	7.39%	597,084,452	6.17%	153,409,606	25.69%
050 교육	102,914,170	1.01%	102,887,170	1.06%	27,000	0.03%
060 문화및관광	552,943,437	5.44%	559,977,775	5.79%	△7,034,338	△1.26%
070 환경보호	635,615,604	6.25%	629,405,235	6.51%	6,210,369	0.99%
080 사회복지	3,401,228,829	33.47%	3,383,541,425	34.97%	17,687,404	0.52%
090 보건	162,004,372	1.59%	161,902,616	1.67%	101,756	0.06%
100 농림해양수산	1,250,699,247	12.31%	1,206,563,427	12.47%	44,135,820	3.66%
110 산업·중소기업	268,195,459	2.64%	267,045,918	2.76%	1,149,541	0.43%
120 수송및교통	418,019,767	4.11%	356,749,262	3.69%	61,270,505	17.17%
140 국토및지역개발	813,029,701	8.00%	650,158,222	6.72%	162,871,479	25.05%
150 과학기술	54,187,597	0.53%	55,544,340	0.57%	△1,356,743	△2.44%
160 예비비	15,700,000	0.15%	38,086,429	0.39%	△22,386,429	△58.78%
900 기타	563,776,497	5.55%	573,820,317	5.93%	△10,043,820	△1.75%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8년도말 조 성 액	2019년도 운용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당초		변경		
		수 입	지 출	수 입	지 출	
통합관리기금	128,718	5,058	2,227	7,519	2,227	134,010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910	5,140	6,140	6,145	7,820	1,235

○ 기금운용계획세부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변경액	기정액	증감	변경내역	
				수입	지출
통합관리 기 금	136,238	85,743	50,495	· 예탁금원금회수 증48,000백만원 · 예치금회수 증35백만원 · 예수금 증2,500백만원 · 이자수입 감40백만원	· 예치금 증50,495백만원
공 무 원 주거안정기금	9,055	6,640	2,415	· 융자금회수 증1,005백만원 · 예치금회수 증1,410백만원	· 민간위탁금 증50백만원 · 융자금 증1,630백만원 · 예치금 증735백만원

2019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 세입·세출 예산안

○ 세입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증감률	기정예산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 계	40,348,819	0.8	5,162,393,248	100.0	5,202,742,067	100.0
1.이전수입	21,922,497	0.4	4,960,441,377	96.1	4,982,363,874	95.8
가.중앙정부이전수입	17,174,810	0.4	4,523,834,225	87.6	4,541,009,035	87.3
나.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895,541	0.7	433,170,923	8.4	436,066,464	8.4
다.기타이전수입	1,852,146	53.9	3,436,229	0.1	5,288,375	0.1
2.자체수입	18,426,322	24.7	74,452,632	1.4	92,878,954	1.8
기.교수 학습활동수입	△3,491,850	△15.4	22,652,035	0.4	19,160,185	0.4
나.행정활동수입	113,965	16.0	713,506	0.0	827,471	0.0
다.자산수입	16,717,146	171.4	9,752,616	0.2	26,469,762	0.5
라.이자수입	3,295	0.0	7,030,826	0.1	7,034,121	0.1
마.기타수입	5,083,766	14.8	34,303,649	0.7	39,387,415	0.8
3.기타	0	0.0	127,499,239	2.5	127,499,239	2.5
가.전년도이월금	0	0.0	127,499,239	2.5	127,499,239	2.5

○ 세출예산

(단위: 천원, %)

구 분	추경증감	증감률	기정예산	구성비	합계	구성비
합 계	40,348,819	0.8	5,162,393,248	100.0	5,202,742,067	100.0
1.유아및초중등교육	△11,897,833	△0.3	4,609,007,984	89.3	4,597,110,151	88.4
가.인적자원운용	△21,903,759	△1.1	1,908,753,295	37.0	1,886,849,536	36.3
나.교수-학습활동지원	△7,741,440	△2.0	390,654,379	7.6	382,912,939	7.4
다.교육복지지원	△4,249,697	△1.0	430,276,780	8.3	426,027,083	8.2
라.보건/급식/체육활동	347,752	0.5	74,193,315	1.4	74,541,067	1.4
마.학교재정지원관리	12,936,391	1.3	1,009,952,887	19.6	1,022,889,278	19.7
바.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712,920	1.1	795,177,328	15.4	803,890,248	15.5
2.평생·직업교육	△34,217	△0.2	18,620,857	0.4	18,586,640	0.4
가.평생교육	△6,217	△0.1	9,133,767	0.2	9,127,550	0.2
나.직업교육	△28,000	△0.3	9,487,090	0.2	9,459,090	0.2
3.교육일반	52,280,869	9.8	534,764,407	10.4	587,045,276	11.3
가.교육행정일반	84,927,534	46.6	182,239,314	3.5	267,166,848	5.1
나.기관운영관리	△9,292,319	△13.1	70,806,723	1.4	61,514,404	1.2
다.지방채상환및리스료	△473,533	△0.2	245,604,051	4.8	245,130,518	4.7
라.예비비및기타	△22,880,813	△63.4	36,114,319	0.7	13,233,506	0.3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수입계획

(단위: 천원, %)

기금명	변경	당초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13,645,703	427,588,403	86,057,300	20.1
공무원주택임차기금	6,401,296	6,401,296	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80,242,107	280,242,107	0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27,002,300	140,945,000	86,057,300	
전입금	227,000,000	140,000,000	87,000,000	
이자수입	2,300	945,000	△942,700	

○ 지출계획

(단위: 천원, %)

기금명	변경	당초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513,645,703	427,588,403	86,057,300	20.1
공무원주택임차기금	6,401,296	6,401,296	0	
통폐합학교지원기금	280,242,107	280,242,107	0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27,002,300	140,945,000	86,057,300	
예치금	227,002,300	140,945,000	86,057,300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635,500,000	100.00%	8,645,620,000	100.00%	989,880,000	11.45%
일반회계	8,445,000,000	87.64%	7,579,600,000	87.67%	865,400,000	11.42%
특별회계	1,190,500,000	12.36%	1,066,020,000	12.33%	124,480,000	11.68%
기타특별회계	1,190,500,000	12.36%	1,066,020,000	12.33%	124,480,000	11.68%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613,450,000	6.37%	567,880,000	6.57%	45,570,000	8.02%
치수사업특별회계	4,910,000	0.05%	5,580,000	0.06%	△670,000	△12.01%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7,020,000	0.07%	7,020,000	0.08%	0	0.00%
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93,340,000	0.97%	96,222,000	1.11%	△2,882,000	△3.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9,290,000	0.51%	32,936,000	0.38%	16,354,000	49.65%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7,000,000	0.07%	8,500,000	0.10%	△1,500,000	△17.65%
소방안전특별회계	415,490,000	4.31%	347,882,000	4.02%	67,608,000	19.43%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장·관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635,500,000	100.00 %	8,645,620,000	100.00 %	989,880,000	11.45%
100 지방세수입	2,520,000,000	26.15 %	1,830,000,000	21.17 %	690,000,000	37.70%
110 지방세	2,520,000,000	26.15 %	1,830,000,000	21.17 %	690,000,000	37.70%
200 세외수입	154,196,112	1.60 %	172,469,998	1.99 %	△18,273,886	△10.60%
210 경상적세외수입	36,292,095	0.38 %	41,115,815	0.48 %	△4,823,720	△11.73%
220 임시적세외수입	117,904,017	1.22 %	131,354,183	1.52 %	△13,450,166	△10.24%
300 지방교부세	1,176,757,400	12.21 %	971,600,000	11.24 %	205,157,400	21.12%
310 지방교부세	1,176,757,400	12.21 %	971,600,000	11.24 %	205,157,400	21.12%
500 보조금	4,867,964,675	50.52 %	4,689,422,143	54.24 %	178,542,532	3.81%
510 국고보조금등	4,867,964,675	50.52 %	4,689,422,143	54.24 %	178,542,532	3.81%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6,581,813	9.51 %	982,127,859	11.36 %	△65,546,046	△6.67%
710 보전수입등	133,451,000	1.38 %	255,273,543	2.95 %	△121,822,543	△47.72%
720 내부거래	783,130,813	8.13 %	726,854,316	8.41 %	56,276,497	7.74%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예산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9,635,500,000	100.00%	8,645,620,000	100.00%	989,880,000	11.45%
010 일반공공행정	967,960,080	10.05%	911,270,894	10.54%	56,689,186	6.22%
020 공공질서및안전	606,399,343	6.29%	518,805,876	6.00%	87,593,467	16.88%
050 교육	107,839,953	1.12%	90,079,958	1.04%	17,759,995	19.72%
060 문화및관광	558,933,058	5.80%	483,763,072	5.60%	75,169,986	15.54%
070 환경보호	623,743,871	6.47%	497,143,712	5.75%	126,600,159	25.47%
080 사회복지	3,679,116,582	38.18%	3,243,960,080	37.52%	435,156,502	13.41%
090 보건	149,085,705	1.55%	139,858,800	1.62%	9,226,905	6.60%
100 농림해양수산	1,115,908,402	11.58%	1,057,327,843	12.23%	58,580,559	5.54%
110 산업·중소기업	237,678,505	2.47%	204,706,887	2.37%	32,971,618	16.11%
120 수송및교통	273,286,196	2.84%	271,169,764	3.14%	2,116,432	0.78%
140 국토및지역개발	584,672,278	6.07%	543,155,390	6.28%	41,516,888	7.64%
150 과학기술	51,701,804	0.54%	44,122,840	0.51%	7,578,964	17.18%
160 예비비	68,514,930	0.71%	83,563,575	0.97%	△15,048,645	△18.01%
900 기타	610,659,293	6.34%	556,691,309	6.44%	53,967,984	9.69%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비 고
합 계	1,258,057,000 (1,113,533,329)	1,258,057,000 (1,113,533,329)	
남북교류협력기금	1,094,152	1,094,152	
양성평등기금	91,354	91,354	
다문화가족지원기금	154,097	154,097	
청소년육성기금	111,147	111,147	
통합관리기금	144,523,671	144,523,671	
지역개발기금	659,701,702	659,701,702	
재난관리기금	58,747,854	58,747,854	
재해구호기금	55,594,329	55,594,329	
중소기업육성기금	206,282,106	206,282,106	
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	102,238	102,238	
국제협력기금	25,749	25,749	
공무원주거안정기금	7,050,000	7,050,000	
문화진흥기금	641,154	641,154	
관광진흥기금	15,050,000	15,050,000	
체육진흥기금	241,522	241,522	
농어촌진흥기금	83,443,552	83,443,552	
농식품수출진흥기금	4,028,000	4,028,000	
환경에너지종합타운주민지원기금	2,500,000	2,500,000	
포플라장학기금	29,731	29,731	
사회복지기금	555,829	555,829	
식품진흥기금	8,052,624	8,052,624	
에너지사업육성기금	10,013,484	10,013,484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22,705	22,705	

* 합계란의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감액조서> 일반회계		44건	72,056,794	63,541,864	△8,514,930
32	대변인	SNS콘텐츠개발및운영	800,000	700,000	△100,000
41	미래전략기획단	국책사업마중물프로젝트	100,000	50,000	△50,000
43	미래전략기획단	경상북도저출생도민인식조사	100,000	0	△100,000
51	투자유치실	투자유치유공자및기관포상	60,000	0	△60,000
53	투자유치실	투자기업입지시설보조금	2,300,000	2,160,000	△140,000
64	기획조정실	대구경북연구원운영지원	4,600,000	3,800,000	△800,000
68	기획조정실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	50,000	30,000	△20,000
103	일자리경제산업실	경북4050행복일자리프로젝트	2,000,000	1,500,000	△500,000
105	일자리경제산업실	청년기업맞춤형인력매칭사업	500,000	0	△500,000
106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인식개선사업	300,000	0	△300,000
107	일자리경제산업실	청장년창업캠퍼스	1,000,000	500,000	△500,000
110	일자리경제산업실	4차산업혁명국제포럼개최	200,000	0	△200,000
110	일자리경제산업실	4차산업혁명핵심기술개발사업	1,500,000	1,000,000	△500,000
111	일자리경제산업실	미래유망과학기술사업발굴추진	55,000	0	△55,000
112	일자리경제산업실	가속기기반그린신소재산업국제심포지엄개최	27,000	0	△27,000
119	일자리경제산업실	CES공동관운영	550,000	0	△550,000
120	일자리경제산업실	경상북도홀로그램쇼케이스제작	200,000	0	△200,000
164	일자리경제산업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사무국운영비	1,500,000	1,300,000	△200,000
166	일자리경제산업실	글로벌무역환경대응통상확대	1,400,000	1,000,000	△400,000
186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관광및수산물해외수출마케팅	100,000	50,000	△50,000
187	동해안전략산업국	경북항만100년특집다큐멘터리제작	100,000	0	△100,000
188	동해안전략산업국	동해홍보캐릭터디자인공모및제작	50,000	0	△50,000
188	동해안전략산업국	경북환동해어촌마을청년유입시범사업(경상)	115,000	0	△115,000
188	동해안전략산업국	경북환동해어촌마을청년유입시범사업(자본)	75,000	0	△75,000
203	동해안전략산업국	친서민생활에너지복지사업지원	52,000	0	△52,000
235	여성가족정책관	경북여성가족플라자건물수선및유지관리	100,000	60,000	△40,000
237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주간기념및활동사업	50,000	40,000	△10,000
311	자치행정국	경상북도새마을회운영	190,000	100,000	△90,000
311	자치행정국	새마을운동국제심포지엄행사	300,000	200,000	△100,000
316	자치행정국	민원실직원근무복구입	7,500	3,750	△3,750
317	자치행정국	민원업무보조피복비	3,000	1,500	△1,500
378	복지건강국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19,612,294	18,482,614	△1,129,680
438	복지건강국	관용차교체(2대)	60,000	0	△60,000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 총괄

○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4,576,114,197	4,537,665,089	38,449,108	0.8%

○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 천원)

수 입 항 목						지 출 항 목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437,227,243	29,000,000	3,600,000	394,471,672	10,146,071	9,500	437,227,243	25,234,497	5,000,000	10,000	406,982,746

2020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475	문화관광체육국	동해안실버문화대축제	30,000	24,000	△6,000
479	문화관광체육국	경북문화관광활성화홍보	370,000	300,000	△70,000
499	문화관광체육국	실크로드중앙아시아인문루트조성사업	150,000	130,000	△20,000
522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청년인턴제지원	500,000	400,000	△100,000
526	문화관광체육국	컨벤션육성지원	300,000	200,000	△100,000
528	문화관광체육국	기업인센티브단유치지원	300,000	200,000	△100,000
528	문화관광체육국	해외마케팅이벤트사업	50,000	0	△50,000
531	문화관광체육국	독도지키기울릉도전국마라톤대회개최지원	40,000	0	△40,000
621	환경산림자원국	포항삼흥로시설녹지리뉴얼사업	150,000	0	△150,000
1119	재난안전실	전국생활안전합창경연대회	100,000	0	△100,000
1170	건설도시국	지방도사업	32,010,000	31,310,000	△700,000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실국명	내용	조정내역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증액조서> 일반회계		1건	0	8,514,930	8,514,930
		내부유보금		8,514,930	8,514,930

□ 예산안

○ 세입(관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4,576,114,197	100.0	4,537,665,089	100.0	38,449,108	0.8
1. 이전수입	4,463,920,223	97.5	4,405,690,257	97.1	58,229,966	1.3
가. 중앙정부이전수입	4,085,206,436	89.3	3,994,166,224	88.0	91,040,212	2.3
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77,060,287	8.2	409,120,283	9.0	△32,059,996	△7.8
다. 기타이전수입	1,653,500	0.0	2,403,750	0.1	△750,250	△31.2
2. 자체수입	27,193,974	0.6	45,774,832	1.0	△18,580,858	△40.6
가. 교수-학습활동수입	7,141,205	0.2	25,598,390	0.6	△18,457,185	△72.1
나. 행정활동수입	750,598	0.0	708,334	0.0	42,264	6.0
다. 자산수입	3,927,878	0.1	4,616,189	0.1	△688,311	△14.9
라. 이자수입	6,214,626	0.1	7,030,826	0.2	△816,200	△11.6
마. 기타수입	9,159,667	0.2	7,821,093	0.2	1,338,574	17.1
3. 기타	85,000,000	1.9	86,200,000	1.9	△1,200,000	△1.4
가. 전년도이월금	85,000,000	1.9	86,200,000	1.9	△1,200,000	△1.4

○ 세출(정책사업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전년도 예산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합 계	4,576,114,197	100.0	4,537,665,089	100.0	38,449,108	0.8
1. 유아및초중등교육	4,376,638,924	95.6	4,119,650,312	90.8	256,988,612	6.2
가. 인적자원운용	1,990,451,477	43.5	1,936,279,881	42.7	54,171,596	2.8
나. 교수-학습활동지원	341,655,451	7.5	276,585,198	6.1	65,070,253	23.5
다. 교육복지지원	421,978,997	9.2	423,909,892	9.3	△1,930,895	△0.5
라. 보건/급식/체육활동	35,172,288	0.8	52,904,255	1.2	△17,731,967	△33.5
마. 학교재정지원관리	1,068,866,404	23.4	980,694,549	21.6	88,171,855	9.0
바. 학교교육여건개신시설	518,514,307	11.3	449,276,537	9.9	69,237,770	15.4
2. 평생·직업교육	17,040,743	0.4	15,106,482	0.3	1,934,261	12.8
가. 평생교육	7,750,733	0.2	7,436,392	0.2	314,341	4.2
나. 직업교육	9,290,010	0.2	7,670,090	0.2	1,619,920	21.1
3. 교육일반	182,434,530	4.0	402,908,295	8.9	△220,473,765	△54.7
가. 교육행정일반	43,478,603	1.0	36,678,748	0.8	6,799,855	18.5
나. 기관운영관리	53,442,859	1.2	45,401,242	1.0	8,041,617	17.7
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	29,445,227	0.6	248,605,196	5.5	△219,159,969	△88.2
라. 예비비및기타	56,067,841	1.2	72,223,109	1.6	△16,155,268	△22.4

□ 기금운용계획안

○ 수입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항 목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437,227,243	29,000,000	3,600,000	394,471,672	10,146,071	9,500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141,063,966			140,002,300	1,061,666	
공무원주택 임차기금	6,063,678		3,600,000	2,409,178	45,000	9,500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290,099,599	29,000,000		252,060,194	9,039,405	

○ 지출

(단위 : 천원)

기금명	지 출 항 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합 계	437,227,243	25,234,497	5,000,000	10,000	406,982,746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141,063,966				141,063,966
공무원주택 임차기금	6,063,678		5,000,000		1,063,678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290,099,599	25,234,497		10,000	264,855,102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예산서쪽	소관부서	내 용	조정내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1567	학교지원과	가)고가수조개체	41,460	0	△41,460	3)길원여자고등학교
1577	학교지원과	가)LED조도개선	55,770	0	△55,770	10)영광여자고등학교
1577	학교지원과	가)LED조도개선	150,880	0	△150,880	13)영주고등학교
1578	학교지원과	가)LED조도개선	39,360	0	△39,360	17)청송여자고등학교
1583	안동교육지원청	가)LED조명시설	98,670	0	△98,670	1)풍산중학교
1589	의성교육지원청	가)LED조명시설	42,900	0	△42,900	1)삼성중학교
1590	영양교육지원청	가)LED조명시설	68,640	0	△68,640	1)영양여자중학교
1591	청도교육지원청	가)LED조명시설	94,380	0	△94,380	1)모계중학교
1604	학교지원과	가)무용실방송장비	40,000	0	△40,000	2)길원여자고등학교
1633	의성교육지원청	1)탑리여자중학교	32,725	0	△32,725	28.진입로포장
1634	청송교육지원청	1)현동중학교	95,200	0	△95,200	28.진입로포장
1635	학교지원과	2)경안고등학교	133,680	0	△133,680	30.화장실개선
1636	학교지원과	가)PIT설치	63,735	0	△63,735	5)경주화랑고등학교
1636	학교지원과	6)길원여자고등학교	175,574	0	△175,574	30.화장실개선
1641	영주교육지원청	1)대영중학교	505,310	0	△505,310	30.화장실개선
1708	학교지원과	6)길원여자고등학교	53,506	0	△53,506	38.기타학교환경개선시설
1709	학교지원과	가)특별교실비품구입	96,180	0	△96,180	10)대영고등학교
1710	학교지원과	가)생활관비품구입	100,455	0	△100,455	23)상지여자상업고등학교
1712	학교지원과	가)관리실리모델링	45,000	0	△45,000	42)청송여자고등학교
1712	학교지원과	가)교사동옥상난간대보수	128,700	0	△128,700	46)포항중앙고등학교
1713	포항교육지원청	가)음악실리모델링	242,093	0	△242,093	3)영일중학교
1719	안동교육지원청	가)인테리어	75,000	0	△75,000	2)경덕중학교
1724	청송교육지원청	가)창호안전난간대설치	10,100	0	△10,100	1)진성중학교
1724	청송교육지원청	나)차양막설치	47,684	0	△47,684	1)진성중학교

(단위 : 천원)

명세서쪽	소관부서	내용(부기명)	조정내역			비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증액조서	1건	25,937,375	56,066,841	30,129,466	
2417	정책기획관	예비비	25,937,375	56,066,841	30,129,466	

202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단위 : 천원)

예산서쪽	소관부서	내 용	조정내역			비 고
			편성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감액조서	50건	30,129,466	0	△30,129,466	
432	창의인재과	나.상주수학체험센터구축	3,182,059	0	△3,182,059	7.수학교육활성화
434	창의인재과	라.칠곡수학체험센터구축	214,669	0	△214,669	7.수학교육활성화
873	교육복지과	나.지도교사역량강화연수	84,960	0	△84,960	6.예술강사지원
1439	김천교육지원청	가.율곡초등학교	2,150,857	0	△2,150,857	5.교실증축
1452	경산교육지원청	2)하주초등학교	5,142,672	0	△5,142,672	2.급식소및다목적강당증축
1459	여천교육지원청	1)용문초등학교	3,794,422	0	△3,794,422	4.다목적강당증축
1474	안동교육지원청	1)시청각실증축	3,250,175	0	△3,250,175	1)안농고등학교
1510	청송교육지원청	가)내부도색	25,404	0	△25,404	1)현동중학교
1534	학교지원과	7)신라고등학교	1,845,660	0	△1,845,660	8.창문개체
1534	학교지원과	8)영천성남여자고등학교	388,560	0	△388,560	8.창문개체
1540	학교지원과	2)경북항공고등학교	332,792	0	△332,792	9.천장개체
1540	학교지원과	3)경산여자상업고등학교	353,474	0	△353,474	9.천장개체
1540	학교지원과	4)경안고등학교	602,168	0	△602,168	9.천장개체
1541	학교지원과	8)길원여자고등학교	538,984	0	△538,984	9.천장개체
1541	학교지원과	10)대영고등학교	1,015,402	0	△1,015,402	9.천장개체
1543	학교지원과	22)영광여자고등학교	360,950	0	△360,950	9.천장개체
1544	학교지원과	25)영주고등학교	539,336	0	△539,336	9.천장개체
1544	학교지원과	26)영주동산고등학교	942,875	0	△942,875	9.천장개체
1544	학교지원과	27)오상고등학교	601,201	0	△601,201	9.천장개체
1545	학교지원과	30)포항중앙고등학교	633,924	0	△633,924	9.천장개체
1549	경주교육지원청	2)월성중학교	306,652	0	△306,652	9.천장개체
1551	안동교육지원청	가)천장개체	44,120	0	△44,120	1)경덕중학교
1551	안동교육지원청	3)풍산중학교	282,726	0	△282,726	9.천장개체
1558	경산교육지원청	1)경산여자중학교	741,054	0	△741,054	9.천장개체
1559	의성교육지원청	1)삼성중학교	264,368	0	△264,368	9.천장개체
1564	안동교육지원청	1)경덕중학교	53,000	0	△53,000	10.칠판개체

결 의 안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장('19. 12. 16)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장('19. 12.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기간 : 2019. 11. 7 ~ 11. 20 / 14일간

2. 감 사 반 : 각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편성·운영

3. 감사대상 : 80개 기관

4. 감사결과 처리의견 : 492건
   ○ 시정·처리 : 119건
   ○ 건의·촉구 : 351건
   ○ 제도 개선 : 19건
   ○ 수범 사례 : 3건

5.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지적사항 492건에 대하여
   연 2회(다음년도 2월, 11월) 보고

별 송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1. 제안이유

○ 제31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에 제출된 안건 심의와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출석요구일시

• 2020. 1. 29(수) 14:00(제1차 본회의)

• 2020. 2. 5(수) 11:00(제2차 본회의)

○ 출석범위 :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

○ 출석장소 :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2조

○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 기 타 안 〓

○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지사('19. 9. 11)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

□ 종합계획 개요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전역 (23개 시·군, 19,026㎢)

○ 시간적 범위 : 2019년 ~ 2030년

○ 내용적 범위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기초조사(경관자원 조사 및 평가)

· 경관계획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 제시

·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의 추진 및 경관협정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경상북도 기본경관계획(재정비)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18. 7. 30. ~ 2019. 7. 29.(12개월)
  *'19.6.13.~관계기관 협의, 도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시 까지 용역중지
- 용역금액 : 251,075천원(도비)
- 용 역 자 : 유니에코도시디자인연구소 외 2개 업체
- 용역내용 : 경관정책의 장기적 방향과 목표제시 및 추진 방향 수립

□ 심사결과 : 별첨 의견제시와 같음

별첨

□ 건설소방위원회 의견제시

가. 첫째, 국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경상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과 중·소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지역으로 경상북도 경관계획은 광역적인 기본경관계획 및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 최근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위주·위치적 성격 위주에서 자연·문화·사람 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되었던 경관을 복원하고 경관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농 복합지역인 경상북도의 다양한 지역특성 및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 둘째, 특정경관계획을 설정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광역경관계획에서 특정경관계획을 설정하는 목적은 여러 시·군이 걸쳐 있는 경관자원에 대하여 통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 특정경관계획에 포함된 시·군은 자체 경관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특정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바, 동일한 경관자원으로 통일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동 의 안

○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교육감('19. 11. 28)

○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도지사('19. 11. 11)

○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도지사('19. 10. 25)

○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교육감('19. 10. 25)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20일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 대상시설 : 경상북도교육청 성주도서관
○ 사 업 자 :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사업 대행)
○ 사용방식 : 사업자가 도서관 부지를 임대하여 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 관리
○ 사업기간 : 5년(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설치면적 : 7㎡ (3.5m×2m)
○ 설치대수 : 1대 (자동차 2대 충전 가능)
○ 부지 사용료 : 면제

2020년도 정기분(2차)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 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건 수	수 량	금 액	비 고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건	4,725.5	2,752,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1건	4,725.5	2,752,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교 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면적)				
1	건물	포항시 남구 동해면 공당리 599 일원	• 건축 연면적 4,725.5	2,752,000	'21. 12.	• 배터리 종합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 공개경쟁입찰	과학기술정책과(신축)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자안

(단위 : 천원)

연번	실 국	출자·출연 기 관 명	사 업 명	출자출연 예 정 액	비 고
계		1개 기관	1개 사업	3,000,000	
1	농축산 유통국	(가칭)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	경북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	3,000,000	농업 정책과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장 경 식

2019년 12월 9일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별지】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부터 적용한다.

【별지】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포항 포항중앙 포항영흥 포항남부 포항동부 포항항도 포항송도 신흥 청림 대해 송림 대노 인덕 효자 두호 두호남부 양학 이동 죽도 대잠 상대 항구 포항대흥 용흥 장성 창포 장량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양서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천 조곡 죽천 유강 강동(경주)	-왕신3리 중 사라는 경주시중학교군(경주)	포항중 대노중 동지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포항항도중 상도중 송도중 대흥중 양학중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양덕중	포항여중 환호여중 동지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성 대상 학교 는 (별지)와 같다. 1)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2) 초곡초는 흥해중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포항시 제1학교군 배정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2) 포항시 제2학교군	청림 인덕		상도중 송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졸업생의 희망에 의한 선배정
포항시	(3) 오천	오천 구정 문충 분덕 포항원동 장기 인덕	-죽성리, 성천리 (기타는 장기중학구)	신흥중 포항포은중 오천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포항시	(4) 연일	연일 연일형산 대송 남성		영일중 대송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1) 연일초, 연일형산초 졸업생 중 영일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2) 대송초, 남성초 졸업생 중 대송중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신배정학교	비 고
청림초등학교 인덕초등학교		남·여 남·여	상도중학교 송도중학교	
연일초등학교 연일형산초등학교		남·여	영일중학교	
대송초등학교 남성초등학교		남·여	대송중학교	
초곡초등학교		남·여	흥해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5) 경주시	계림		신라중	경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월성		경주중	서라벌여중	
		황남		문화중	근화여중	
		경주		월성중	선덕여중	
		동방		계림중	(남녀공학)	
		서라벌		화랑중	(남녀공학)	
		황성				
		화랑				
		흥무				
		신라				
		동천				
		유림				
		용강				
		용황				
		사방				
		모량	-모량1리, 광명1,2동 (기타는 무산중학구)			
		내남				
		현곡				
		나원				
		금장				
		강동	-왕신3리 중 사라 [기타는 포항시 제1학교군(포항)]			
		천북				
		모아				
		모서분교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사방초등학교 현곡초등학교		남 여 남·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화랑중학교	
나원초등학교 금장초등학교		남·여	화랑중학교	
강동초등학교 천북초등학교 모아초등학교 모아초모서분교장		남 여 여	신라중학교 서라벌여자중학교 근화여자중학교	
내남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 황남동 12~16통, 18통(2,3반), 월성동 7통, 내남면 용징4리	남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용강초등학교		여	근화여자중학교	
동방초등학교 서라벌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 보덕동 4통, 월성동 21~23통, 24통(2반)	남 여	경주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주초등학교 모량초등학교	- 모량1리, 광명1,2동	남 남 여	문화중학교 월성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황남초등학교	(구 황남초등학교 학구) - 황남동 : 21-24통, 26통(3반 서편제외), 27통 - 월성동 : 2통(1반, 2반(서편), 4반), 3통, 5통, 7통(3반) - 황오동 : 25통(3-4반), 27-28통 - 중부동 : 12통(2,3반)	남 여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6) 김천시	김천 김천중앙 김천서부 금릉 김천다수 김천모암 김천동부 김천신일 김천부곡 김천동신 농소 개령서부 아천 봉계 태화분교 직지 대룡 감천 조마	-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4리 (기타는 율곡중학구) - 대신동26통, 27통 중 모광, 다남2리 (기타는 개령중학구) - 남산3리 (기타는 어모중학구) - 추풍령중(충북)과 자유학구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지품천중학구와 자유학구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봉계초등학교 봉계초태화분교장		남 여	김천중앙중학교 한일여자중학교	희망학교(택1) 선배정
조마초등학교		남 남 여 여	석천중학교 문성중학교 김천여자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감천초등학교		남 여 여	성의중학교 김천여자중학교 성의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7) 안동시	교대부설 안동 안동서부 안동동부 안동송현 복주 안동용상 길주 안동강남 영기 안동영호 영남 송천 서선 와룡 북후 서후 대흥분교 남후 남선 임하	- 수1, 2리는 풍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망천1리 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웅부중학구와 자유학구 - 산야리, 중가구리, 서지리는 웅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웅부중학구) - 도진리중 아랫마사 (기타는 북후중학구) - 광평1리는 북후중학구 - 고하리, 고상리는 일직중학구와 자유학구 - 하아리는 풍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소1,2리, 고곡리, 오대2리 중 배일·어덕은 길안중학구와 자유학구	안동중 경안중 경덕중 길주중	안동여중 복주여중 경안여중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길주초등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임하초등학교	- 임동면: 망천1리중 안마· 망지네, 망천2리중 숲당, 마리 - 임하면: 노산리, 천전1, 2리, 임하1리	남·여	길주중학교	선배정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 안동용상초등학교 길주초등학교	- 송천초등학교·남선초등학교· 임하초등학교·길주초등학교· 안동용상초등학교 학구내 거주자	남·여	길주중학교	위 선배정을 제외한 정원 범위내에서 추첨에 의한 배정
남후초등학교		남 여	안동중학교 복주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8) 구미시	구미 광평 상모 선주 금오 인동 옥계 구평 구미신평 도산 비산 송정 지산 신기 형곡 황상 형일 도량 형남 양포 인의 야은 오태 원남 구평남부 구미사곡 도봉 진평 구미오산 천생 구미왕산 구미봉곡 정수 옥계동부 해마루 구운 원호 문장 구미문성	- 문성7리, 문성8리는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단, 구미문성초 통학구역 거주자 포함) - 북삼중학교군(칠곡)과 자유학구[북삼읍 인평리는 북삼중학교군 (칠곡)] - 금전2동은 우상중학구와 자유학구 -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 원호1리, 원호10리는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단, 구미문성초 통학구역 거주자 포함) -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구미중 금오중 경구중 인동중 형곡중 형남중 구미신평중 진평중 도송중 옥계중 상모중 봉곡중 선주중 천생중 오태중 광평중 옥계동부중 해마루중	구미여중 송정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선주초등학교 구미봉곡초등학교		남·여 남	봉곡중학교 경구중학교	
구운초등학교		남	구미중학교	
원호초등학교	- 고아읍 원호1,2리 (원호3~7리인 택지개발 지구는 제외)	남	구미중학교	
지산초등학교	- 고아읍 문성리, 괴평리, 송림리	남	구미중학교	
구미초등학교	- 선기동(대성지 아랫마을, 21통 제외) - 수점동(대성지 안쪽마을) -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	남	구미중학교	
원남초등학교 상모초등학교 오태초등학교 구미오산초등학교 구미왕산초등학교	- 선기동 21통 - 임오동	남 남	구미중학교 금오중학교	
신기초등학교	- 양호동	남·여	구미신평중학교	
인동초등학교 구평초등학교 황상초등학교 인의초등학교 구평남부초등학교 진평초등학교 천생초등학교		남·여 남·여 남·여	인동중학교 진평중학교 천생중학교	추첨배정
옥계초등학교 양포초등학교 옥계동부초등학교 해마루초등학교	- 금진2동은 오성중학구와 자유학구	남·여 남·여 남·여	옥계중학교 옥계동부중학교 해마루중학교	추첨배정
금오초등학교	- 남통동 남통마을 (금오산 식당 주변)	여	구미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군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영주시	(9) 영주시	영주 영주동부 영주중앙 영주남부 영주서부 영일 남산 영주가흥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옥대 감천(예천) 도촌(봉화) 봉화(봉화) 물야(봉화)	- 두월리는 청량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학구(안동) -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청량중학구(봉화) - 옹암리, 단촌2리는 풍기중학교군 - 동원리, 사천1리 - 사천2리는 소수중학구 (기타는 단산중학구) - 기곡2리 중 한밤실은 감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기타는 감천중학구(예천)]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는 봉화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봉화)] - 물아면 수식리는 봉화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봉화)] - 물야면 수식리는 봉화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학구(봉화)]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영주시	(10) 풍기	풍기 풍기북부 안정 봉현	 - 옹암리, 단촌2리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풍기중 금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천시	(11) 영천시	영천	- 호남리, 대곡리는 금호중학구와 자유학구 - 송포리는 영안중학구와 자유학구	영천중 영동중	영천여중 성남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영천중앙 화남분교	- 매산1동 (기타는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영천동부 영화 포은 단포	- 상리리, 학리는 별빛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영천중앙초등학교	(구 영북초등학교 학구) - 녹전동: 24, 25, 26통 - 도림동: 27, 28통 - 매산동: 30통 - 오미동: 22통, 23통(2,3반) - 대전동: 19통	여	영천여자중학교	
영천중앙초화남분교장 영화초등학교	(구 호당초등학교 학구) - 서산동: 21통 - 청통면: 호당1,2리, 우천2리 - 화산면: 삼부리(삼거리), 대기리(대동리)			
영천초등학교	(구 영도초등학교 학구) - 본촌동: 1통 - 채신동: 2통 - 괴연동: 3통 - 북안면: 유상1,2리 (구 영천남부초등학교 학구) - 범어동: 9통 - 작산동: 10, 11통 - 봉동: 12통 - 북안면: 송포1,2리, 유하리	여	성남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12) 상주시	상주	- 신촌1, 2리, 고곡1, 2리 (둔더기 제외), - 북장리는 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상주중 남산중	상주여중 성신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상산				
		상주중앙				
		상영				
		상주동부				
		상주남부				
		성동				
		중동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학구(예천)와 낙동중학구의 자유학구			
		사벌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 (기타는 낙운중학구)			
		외남	- 지사리, 소은리 (기타는 청리중학구)			
		외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흘2리는 은척중학구			
		공검	-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학구			
		백원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 연봉1, 2리는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교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사벌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남 남 여 여	상주중학교 남산중학교 상주여자중학교 성신여자중학교	
공검초등학교 백원초등학교	- 연봉1, 2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남 여	상주중학교 성신여자중학교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13) 문경시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학구(예천) (기타는 산양중학구)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학구(상주) (기타는 기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학구(예천)	문경중 점촌중		
경산시	(14) 경산시	경산 경산중앙 임당 경산동부 남성 장산 경산서부 정평 사동 성암 옥곡 평산 삼성현 현흥 남산 남천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 (기타는 진량중학교군)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자인중학구)	경산중 장산중 사동중 삼성현중 문명중	경산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산시	(15)	진량		진량중	(남녀공학)	
	진량	진성		신상중	(남녀공학)	
		다문	- 평(坪)사리 및 평(平)사1, 2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마곡리, 현내리는 자인중학구와 자유학구			
		부림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천2리, 상림리, 내리리는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하양중학구)			
		봉황				
		현흥	- 금구리, 용암리, 현흥1리, 신촌리는 경산시중학교군			
		하양초화성 분교	- 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별 지】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학 교 명	마 을 명	성 별	선배정학교	비 고
남성초등학교		남	경산중	
현흥초등학교	- 금구리, 용임리, 현흥1리, 신촌리	여	경산여중	
		남·여	장산중	
남산초등학교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	남·여	사동중	
		남·여	삼성현중	
		남·여	문명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교군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16) 안계	안계 이두	-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청도군	(17) 청도	청도 유천 청도중앙 화양 남성현	- 유등1, 3리, 서상2리는 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 유등2리는 이서중학구	모계중 청도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칠곡군	(18) 왜관	왜관 왜관중앙 왜관동부 낙산 매원 신동 석적 관호 약동 도원(성주)	- 금남리 중 바우는 달서중(대구) - 삼청2리 -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기타는 신동중학구) - 장곡중학구와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 (기타는 약목중학구) - 선남면 용신1, 2, 3리는 명인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학구)	왜관중 석전중 순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순심여중	

시군명	중학교 군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9) 북삼	북삼 숭산 인평 오태	- 약목중학구와 자유학구 - 인평리(기타는 구미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북삼중 인평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예천군	(20)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호명 풍천풍서 (안동) 유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예천중 대창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 구룡포	구룡포		구룡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2) 대보	대보	- 발산2리, 대동배1리는 동해중학구와 자유학구	대보중	(남녀공학)	
포항시	(3) 신광	신광		신광중	(남녀공학)	
포항시	(4) 송라	송라	- 지경1, 3리는 남정중학구(영덕)	송라중	(남녀공학)	
포항시	(5) 기계	기계		기계중	(남녀공학)	
포항시	(6) 기계중 기북분교	기북		기계중기북 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7) 기계중 상옥분교	죽장초상옥 분교		기계중상옥 분교	(남녀공학)	
포항시	(8)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여 중	효자초는 포항시제1 학교군 및 제철중학구 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9) 청하	청하 월포		청하중	(남녀공학)	
포항시	(10) 동해	동해 대보	- 대동배1리, 발산2리는 대보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대보중학구)	포항동해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조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포항시	(11) 장기	장기 모포분교 양포	- 죽정리, 정천리는 오천중학교군	장기중	(남녀공학)	
포항시	(12) 죽장	죽장	- 상사리, 하사리는 현동중학구(청송)와 자유학구	서포중	(남녀공학)	
포항시	(13) 흥해	흥해 흥해남산 흥해서부 곡강 초곡		흥해중	(남녀공학)	초곡초는 흥해중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포항시제1학 교군 배정
경주시	(14) 불국	불국사 영지 패릉		불국중	(남녀공학)	
경주시	(15) 안강	안강제일 안강 옥산 산대 양동		안강중	안강여중	
경주시	(16) 외동	입실 연안 모화 석계 양남	- 효동리 -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학구 (기타는 양남중학구)	외동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경주시	(17) 산내	의곡 일부분교	- 우라리는 아화중학구	산내중	(남녀공학)	
경주시	(18) 양남	양남 나산 양북	- 죽전리 중 남전은 양북중학구 - 효동리는 외동중학구 - 봉길리 중 하봉 (기타는 양북중학구)	양남중	(남녀공학)	
경주시	(19) 아화	아화 의곡	 - 우라리 (기타는 산내중학구)	아화중	(남녀공학)	
경주시	(20) 감포	감포	- 팔조리는 양북중학구	감포중	(남녀공학)	
경주시	(21) 양북	양북 감포 양남	- 봉길리 중 하봉은 양남중학구 - 팔조리 (기타는 감포중학구) - 죽전리 중 남전 - 효동리는 외동중학구 (기타는 양남중학구)	양북중	(남녀공학)	
경주시	(22) 무산	건천 천포 모량	 - 모량1리, 광명1, 2동은 경주시중학교군	무산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김천시	(23) 아포	아포 유곡 율곡 고아(구미)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구와 자유학구 - 봉천1리는 율곡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율곡중학구)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율곡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율곡중학구)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학구(구미)와 자유학구 - 황산리중 물목은 선산중학구 (구미)와 현일중학구(구미)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학구(구미)]	아포중	(남녀공학)	
김천시	(24) 개령	개령 개령서부	- 대신동26통, 27통 중 모광, 다남2리는 김천시중학교군	개령중	(남녀공학)	
김천시	(25) 감문	위량		감문중	(남녀공학)	
김천시	(26) 율곡	농소 운곡 율곡 아포	- 신촌리, 월곡2리 중 용시, 월곡3리 중 남곡, 월곡4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봉천1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 부상2리는 약목중학구(칠곡)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아포중학구)	율곡중	(남녀공학)	
김천시	(27) 어모	아천 능치분교	- 남산3리는 김천시중학교군 - 공성면 영오리는 용운중학구 (상주)	어모중	(남녀공학)	
김천시	(28) 지품천	지례 부항분교 구성 대덕 증산 직지	- 대성리, 주례리, 상거2리는 김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김천시중학교군)	지품천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29) 북후	북후	- 도진리 중 아랫마사는 안동시중학교군	북후중	(남녀공학)	
		서후	- 광평1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녹전	-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산리 중 어석·태봉·안지는 웅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웅부중학구)			
		평은(영주)	- 강동1리 중 왕류 - 천본1리 중 윗두들은 청량중학구(봉화)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			
안동시	(30) 길안	길안	- 황목리, 병부리는 청송중학구(청송)	길안중	(남녀공학)	
		길송분교	- 송사1리 [기타는 현서중학구(청송)]			
		임하	- 금소1, 2리, 고곡리, 오대2리 중 배일·어덕은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안동시	(31) 풍천	풍천풍서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남】 예천중학교군(예천)과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풍천중	(남녀공학)	
		신성 호명(예천)	【남】 예천중학교군(예천)과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안동시	(32) 웅부	와룡 녹전 원천분교 월곡 삼계분교 온혜 임동 길주 상운(봉화)	- 산야리, 중가구리, 서지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서삼리 중 새마·상이전·하이전, 사신리 중 어석·태봉·안지는 북후중학구와 자유학구 - 원천1, 2리, 매정리는 청량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는 진보중학구(청송) - 임동면 망천1리중 안마·망지네, 망천2리 중 숲당, 마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신라1,2리는 청량중학구(봉화)와 자유학구 - 하늘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봉화) [기타는 청량중학구(봉화)]	웅부중	(남녀공학)	
안동시	(33) 풍산	풍산 풍북 안동송현 남후	- 수1, 2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하아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일직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풍산중	(남녀공학)	
안동시	(34) 일직	일직 남후 단촌(의성)	- 고하리, 고상리는 안동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하아리는 안동시중학교군과 풍산중학구 자유학구 (기타는 안동시중학교군) -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 [기타는 의성중학구(의성)]	일직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구미시	(35) 선산	선산 옥성 덕존 고아	- 생곡리, 시기리는 도개중학구와 자유학구 - 산존리, 구봉리, 옥관리는 낙동중학구(상주)와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현일중학구와 자유학구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현일중학구와 아포중학구(김천)의 자유학구 (기타는 현일중학구)	선산중	(남녀공학)	
구미시	(36) 무을	무을		무을중	(남녀공학)	
구미시	(37) 해평	해평	- 낙산리, 일선리는 도개중학구와 자유학구	해평중	(남녀공학)	
구미시	(38) 산동	산동 구미인덕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 구미인덕중학구와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구미시	(39) 구미인덕	구미인덕 산동	-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산동면(신당리, 인덕리)은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산동중학구)	구미인덕중	(남녀공학)	
구미시	(40) 오상	장천 해마루 학림(칠곡) 가산(칠곡)	- 금전2동은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 금화리는 동명중학구(칠곡)	오상중	(남녀공학)	
구미시	(41) 도개	도개 해평 선산	- 낙산리, 일선리는 해평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해평중학구) - 생곡리, 시기리는 선산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선산중학구)	도개중	(남녀공학)	
구미시	(42) 현일	고아 구운 남계 지산 원호 구미문성	- 황산리, 외예리, 내예리는 아포중학구(김천)와 자유학구 - 황산리 중 물목은 선산중학구 와 자유학구 -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문성7리, 문성8리는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 원호1리, 원호10리는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구미시중학교군) - 구미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현일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 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주시	(43) 부석	부석 봉화(봉화) 물야(봉화)	- 보계리는 단산중학구 - 물야면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봉화중학구(봉화)의 자유학구 [기타는 봉화중학구(봉화)] - 물야면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봉화중학구(봉화)의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학구(봉화)]	부석중	(남녀공학)	
영주시	(44) 단산	옥대 부석	- 사천2리는 소수중학구 - 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시중학교군 - 보계리 (기타는 부석중학구)	단산중	(남녀공학)	
영주시	(45) 소수	순흥 옥대	- 사천2리 - 동원리, 사천1리는 영주시중학교군 (기타는 단산중학구)	소수중	(남녀공학)	
영천시	(46) 청통	청통		청통중	(남녀공학)	
영천시	(47) 신녕	신녕 영화초화덕분교	- 대안3리 (기타는 화산중학구)	신녕중	(남녀공학)	
영천시	(48) 화산	화산 영화초화덕분교	-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산동중학구와 자유학구 - 대안3리는 신녕중학구	화산중	(남녀공학)	
영천시	(49) 별빛	자천 보현분교 지곡 임고 평천 고경 단포 대창 금호 용성(경산)	- 오산1리는 산동중학구 - 용계리(달산 제외) (기타는 산동중학구) - 상리리, 학리는 영천시 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 강회리(기타는 금호중학구) - 매남4리는 용성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용성중학구(경산)]	별빛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천시	(50) 영안	북안 영천	- 송포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및 금호중학구)	영안중	(남녀공학)	
영천시	(51) 금호	영천 금호 거여	- 호남리, 대곡리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 및 금호중학구) - 강회리는 별빛중학구	금호중	금호여중	
영천시	(52) 산동	자천 지곡 화산 영천중앙초 화남분교	- 오산1리 (기타는 별빛중학구) - 용계리(달산 제외)는 별빛중학구 -화산1리(곽산제외), 화산2리 중 효지미는 화산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화산중학구) - 매산1동은 영천시중학교군 (기타는 영천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산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3) 낙동	낙동동부 옥성(구미) 중동	- 산촌리, 구봉리, 옥관리는 선산중학구(구미)와 자유학구 [기타는 선산중학구(구미)] - 회상2리 중 갈밭은 풍양중학구(예천)와 상주시중학교군의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낙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54) 낙운	낙동	- 신상1, 2리, 분황리 중 구촌은 상주시중학교군	낙운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상주시	(55) 청리	청리 외님	- 지사리, 소은리는 상주시 중학교군	청리중	(남녀공학)	
상주시	(56) 내서	상주 낙서	- 신촌1, 2리, 고곡1, 2리(둔더기 제외), 북장리는 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내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57) 중모	중모 모동		중모중	(남녀공학)	
상주시	(58) 모서	모서 화동	- 화현1리 (기타는 화동중학구)	모서중	(남녀공학)	
상주시	(59) 화동	화동 화령	- 화현1리는 모서중학구 - 소곡2리 중 배실 (기타는 화령중학구)	화동중	(남녀공학)	
상주시	(60) 화령	화령 외서 농암초청화 분교(문경) 수정(충북)	- 소곡2리 중 배실은 화동중학구 - 대전2리, 예의1리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하흘2리는 은척중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 내서3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와 가은중학구(문경)의 자유학구] - 동관2리(갈골, 동관음, 절골)	화령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상주시	(61) 은척	외서	- 우산1, 2리, 이촌리, 대전1리, 서만2리, 히홀2리 - 대전2리, 예의1리는 화령중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은척중	(남녀공학)	
		은척 무릉분교	-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이안	- 양범3리, 대현리(한틔제외), 아천리는 함창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함창중학구)			
		농암(문경)	- 지동리, 선곡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와 가은중학구(문경)의 자유학구]			
상주시	(62) 화북	화북 입석분교	- 입석1리는 송면중(충북)과 자유학구 [기타는 송면중(충북)]	화북중	(남녀공학)	
		용화분교	- 보은중(충북)과 자유학구			
상주시	(63) 용운	옥산 아천초등치분교(김천)	- 영오리 [기타는 어모중학구(김천)]	용운중	(남녀공학)	
상주시	(64) 함창	공검	- 상주중·성신여중과 자유학구	함창중	상지여중	
		백원	- 연봉1, 2리는 상주중·성신여중과 자유학구			
		함창 함창중앙				
		이안	- 양범3리, 대현리(한틔제외), 아천리는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은척초 무릉분교	- 은척중학구와 자유학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65) 문경	호서남 점촌북 점촌 신기 점촌중앙 모전 산양 호계 농암 청화분교 영순	 - 평지2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학구(예천) (기타는 산양중학구)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학구(상주) (기타는 가은중학구와 자유학구) - 왕태1리는 용궁중학구(예천)		문경여중	
문경시	(66) 산양	산앙	- 평지2리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은 용궁중학구(예천)	산앙중	(남녀공학)	
문경시	(67) 산북	산북 창구분교 동로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는 용궁중학구(예천) - 마광리 - 명전리는 동로중학구와 단성중(충북)의 자유학구 (기타는 동로중학구)	산북중	(남녀공학)	
문경시	(68) 동로	동로 단천초가산분교(충북)	- 마광리는 산북중학구 - 명전리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 - 단성면 벌천리, 대강면 반곡리는 단성중(충북)과 자유학구 [기타는 단성중(충북)]	동로중	(남녀공학)	
문경시	(69) 문경읍	문경 용흥 당포		문경서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문경시	(70) 마성	동성		마성중	(남녀공학)	
문경시	(71) 가은	가은 희양분교 농암 청화분교	 - 지동리, 선곡리는 은척중학구(상주)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와 자유학구) - 내서3리는 화령중학구(상주)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 및 문경중학구와 자유학구)	가은중	(남녀공학)	
경산시	(72) 자인	자인 남산 남성 다문	 - 전지리, 반곡리, 상대리, 하대리, 인흥리는 경산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강서리, 백안리, 당리리는 경산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경산시중학교군) - 마곡리, 현내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하양중학구)	자인중	자인여중	
경산시	(73) 용성	용성 금천(청도)	- 매남4리는 별빛중학구(영천)와 자유학구 - 소천 3리 [기타는 금천중학구(청도)]	용성중	(남녀공학)	
경산시	(74) 하양	하양 화성분교 하주 청천 금락 다문 부림 와촌 계당 대동	 -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청천리, 남하1, 2리, 은호1,2리는 대구광역시 3학교군(동구)과 자유학구 - 평(坪)사리, 평(平)1, 2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진량중학교군 및 자인중학구) - 보인2리, 북1, 2리, 부기1, 2리, 양기리, 문전2리, 상덤리, 내리리는 진량중학교군과 자유학구	무학중	하양여중	
경산시	(75) 압량	경산압량		압량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군위군	(76) 군위	군위 효령 송원	- 노행2리 중 심원 (기타는 효령중학구) - 사리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의성)	군위중	(남녀공학)	
군위군	(77) 효령	효령 고매	- 노행2리 중 심원은 군위중학구	효령중	(남녀공학)	
군위군	(78) 부계	부계		부계중	(남녀공학)	
군위군	(79) 우보	우보		군위중우보 분교	(남녀공학)	
군위군	(80) 의흥	의흥 석산분교		의흥중	(남녀공학)	
의성군	(81) 의성	의성 의성남부 의성북부 단촌 점곡 옥전 안평 금성	-세촌2리 중 본동·동내개골은 일직중학구(안동)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 제외), 실업2리 중 윗몸안골 (기타는 옥산중학구) - 신안 3리 - 대사1리는 봉양중학구와 경북중부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 만천1, 2리 (기타는 금성중학구)	의성중	의성여중	
의성군	(82) 금성	금성 가음 춘산	- 만천1, 2리는 의성중학구 -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금성중	탑리여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등학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의성군	(83) 다인	다인	- 용곡1, 2, 3리는 지보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다인중	(남녀공학)	
의성군	(84) 경북중부	안평 신평분교 이두 송원(군위) 단밀 가음 춘산	- 대사1리는 봉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안계중학교군 및 안계중학구와 자유학구 -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학구(군위)]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경북 중부중	(남녀공학)	
의성군	(85) 안계	구천 안계 이두	-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안계중	(남녀공학)	-구천초등학교: 남·여학생
의성군	(86) 봉양	도리원 안평	- 대사1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봉양중	(남녀공학)	
의성군	(87) 옥산	옥전	- 오류리, 금봉리, 금학리(큰마, 새뜸제외), 실업2리 중 윗몸 안골은 의성중학구	옥산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송군	(88) 청송	청송 파천 길안(안동) 이전	- 지리는 청송중부동 분교중학구와 자유학구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는 진보중학구 (기타 남학생은 진성중과 자유학구) - 황목리, 병부리 [기타는 길안중학구(안동)] - 상평리중 석고개 (기타는 청송중부동 분교중학구)	청송중	청송여중	
청송군	(89) 청송중 부동분교	청송 이전	- 지리는 청송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청송중학구) - 상평리 중 석고개는 청송중학구	청송중부동 분교	(남녀공학)	
청송군	(90) 구천	부남		구천중	(남녀공학)	
청송군	(91) 현서	화목 길안초길송 분교(안동)	- 무계리 중 말방, 수락리 중 원수락은 안덕중학구 - 송사1리는 길안중학구 (안동)	현서중	(남녀공학)	
청송군	(92) 안덕	안덕 화목	- 인지리 중 추강·손달은 현동중학구 - 무계리 중 말방, 수락리 중 원수락 (기타는 현서중학구)	안덕중	(남녀공학)	
청송군	(93) 현동	도평 안덕 죽장(포항)	- 인지리중 추강·손달 (기타는 안덕중학구) - 상사리, 하사리는 죽장중학구(포항)와 자유학구 [기타는 죽장중학구(포항)]	현동중	(남녀공학)	
청송군	(94) 진보	진보 파천 임동(안동) 입암(영양)	- 어천리, 송강리, 신기리, 황목리, 지리 (기타는 청송중학구) - 지리, 기곡리, 후평리, 어천리 [기타는 웅부중학구(안동)] - 흥구리, 방전리는 영양중학구(영양)와 자유학구	진성중	진보중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양군	(95) 영양	영양 영양중앙 입암 일월 청기분교 수비 석보	 - 흥구리, 방전리는 진보중학구 (청송)와 자유학구 - 수비중학구와 자유학구 - 수비중학구와 자유학구 - 석보중학구와 자유학구	영양중	영양여중	
영양군	(96) 석보	석보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석보중	(남녀공학)	
영양군	(97) 수비	일월 수비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양중학구와 자유학구	수비중	(남녀공학)	
영덕군	(98) 영덕	영덕야성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중 구읍골 (기타는 지품중학구)	영덕중	영덕여중	
영덕군	(99) 강구	강구 남정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 (기타는 남정중학구)	강구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영덕군	(100) 남정	남정 송라(포항)	- 남호리, 남정리, 중화리, 우곡리는 강구중학구 - 지경1, 3리 [기타는 송라중학구(포항)]	남정중	(남녀공학)	
영덕군	(101) 지품	지품	- 삼화리, 신애리, 오천리 중 구읍골은 영덕중학구	지품중	(남녀공학)	
영덕군	(102) 축산	축산항 경정분교 영해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사진3리는 영해중학구)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 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 항리, 대곡리, 기암2리는 영해중 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영해중학구)	축산중	(남녀공학)	
영덕군	(103) 영해	축산항 경정분교 영해 병곡 원황 장수 인천분교	- 사진3리 (기타는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 리, 도곡 1, 2리, 칠성1, 2리, 조항 리, 대곡리, 기암2리는 축산중학 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영해중학구) - 병곡중학구와 자유학구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1, 2리 및 각리1, 2, 3리 (기타는 병곡중학구와 자유학구)	영해중	(남녀공학)	
영덕군	(104) 병곡	병곡 원황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영해중학구와 자유학구 - 덕천리, 신평리, 사천리, 송천1, 2리, 각리1, 2, 3리는 영해중학구	병곡중	(남녀공학)	
청도군	(105) 풍각	풍각 각남 덕산	 - 녹명2리 - 녹명1리는 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이서중학구)	풍각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청도군	(106) 금천	금천	- 소천3리는 용성중학구(경산)	금천중	(남녀공학)	
청도군	(107) 매전	동산		매전중	(남녀공학)	
청도군	(108) 이서	이서 각남 화양	 - 녹명2리는 풍각중학구 - 녹명1리는 풍각중학구와 자유학구 - 유등2리 - 유등1, 3리, 서상2리는 청도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청도중학교군)	이서중	(남녀공학)	
고령군	(109) 고령	고령 덕곡 운수 우곡 수륜(성주)	 - 노2리, 백1, 2리는 수륜중학구 (성주)와 자유학구 - 사촌리 4반 - 예곡리 중 부례는 구지중(대구) (기타는 우곡중학구)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수륜중학구(성주)와 자유학구 [기타는 수륜중학구(성주)]	고령중	(남녀공학)	
고령군	(110) 고령중개진분교	개진		고령중개진분교	(남녀공학)	
고령군	(111) 성산	성산 박곡		성산중	(남녀공학)	
고령군	(112) 우곡	우곡	- 사촌리 4반은 고령중학구 - 예곡리 중 부례는 구지중(대구)	우곡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고령군	(113) 쌍림	쌍림		쌍림중	(남녀공학)	
고령군	(114) 다산	다산 용암(성주)	 - 동락2리 중 가죽정 - 중거1,2리는 성주중학구(성주)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학구(성주) [기타는 용암중학구(성주)]	다산중	(남녀공학)	
성주군	(115) 성주	성주 성주중앙 선남 용암 대가 초전 월항	 - 문방1, 2, 3리 -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명인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명인중학구) - 중거1, 2리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학구 - 동락2리 중 가죽정은 다산중학구(고령) (기타는 용암중학구)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가천분교중학구와 자유학구 - 용성1리 (기타는 초전중학구)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초전중학구와 자유학구	성주중	성주여중	
성주군	(116) 성주중가천분교	가천 대가 수륜	 - 광산리, 어은리, 명천리, 대천1, 2리, 옥화1, 2리, 도남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성주중학구) - 수성1리 중 가람 (기타는 수륜중학구)	성주중가천분교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성주군	(117) 용암	용암 대동	- 동락2리 중 가죽정은 다산중학구(고령) - 동락2리 중 모방골은 수륜중학구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 (기타는 명인중학구)	용암중	(남녀공학)	
성주군	(118) 초전	초전 봉소분교 월항 지방분교	- 용성1리는 성주중학구 - 용각1, 2, 3리, 보암1, 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성주중학구)	초전중	(남녀공학)	
성주군	(119) 벽진	벽진		벽진중	(남녀공학)	
성주군	(120) 수륜	수륜 용암 덕곡(고령)	- 작은리, 보월1, 2리, 남은1, 2리는 고령중학구(고령)와 자유학구 - 수성1리 중 가람은 성주중가천분교중학구 - 동락2리 중 모방골 - 동락2리 중 가죽정은 다산중학구(고령) - 중거1, 2리는 성주중학구 (기타는 용암중학구) - 노2리, 백1, 2리는 고령중학구(고령)와 자유학구 [기타는 고령중학구(고령)]	수륜중	(남녀공학)	
성주군	(121) 명인	선남 도원 대동	- 문방1, 2, 3리는 성주중학구 - 장학리, 명포1, 2리, 유서2리는 성주중학구와 자유학구 - 용신1, 2, 3리는 왜관중학교군 (칠곡)과 자유학구 - 기산1, 2리, 운산리는 용암중학구	명인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칠곡군	(122) 약목	숭산 약목 관호 북삼초오평 분교 운곡(김천)	- 북삼중학교군과 자유학구 - 관호2, 3, 4, 5리는 왜관중학교군 - 부상2리 [기타는 율곡중학구(김천)]	약목중	(남녀공학)	
칠곡군	(123) 신동	신동 지천 하빈(대구)	- 삼청2리는 왜관중학교군 - 연호2리는 칠곡중(대구) - 금호리, 연호리 중 가정·구슬개, 낙산리는 칠곡중(대구) - 대평리, 무등1리 [기타는 달서중(대구)]	신동중	(남녀공학)	
칠곡군	(124) 동명	동명 동명동부 다부 가산	 - 금화리 [기타는 오상중학구(구미)]	동명중	(남녀공학)	
칠곡군	(125) 장곡	장곡 석적 대교	- 왜관중학교군과 자유학구	장곡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예천군	(126) 용궁	예천 용궁 영순(문경) 산양(문경) 산북(문경)	- 황산리, 입암리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 - 왕태1리 [기타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 - 위만1리, 우본리 중 감실 - 평지2리는 문경시중학교군(문경) 및 문경중학구(문경) [기다는 신양중학구(문경)] - 지내리, 흑송리, 월천리 [기타는 산북중학구(문경)]	용궁중	(남녀공학)	
예천군	(127) 풍양	풍양 중동(상주)	- 회상2리 중 갈밭은 상주시중학교군(상주)과 낙동중학구(상주)의 자유학구 (기타는 상주시중학교군)	풍양중	(남녀공학)	
예천군	(128) 지보	지보 다인(의성)	- 용곡1, 2, 3리는 다인중학구(의성)와 자유학구 [기타는 다인중학구(의성)]	지보중	(남녀공학)	
예천군	(129) 감천	감천	- 기곡2리 중 한밤실은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감천중	(남녀공학)	
예천군	(130) 용문	용문 유천	- 노사2리 (기타는 예천중학교군 및 예천중학구)	용문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예천군	(131) 예천	예천	-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예천여중	
		예천동부				
		예천남부				
		호명	-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풍천풍서 (안동)	-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유천	- 노시2리는 8문중학구			
예천군	(132) 은풍	상리 은풍		은풍중	(남녀공학)	
봉화군	(133) 봉화	봉화	-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봉화중	(남녀공학)	
		도촌	- 문단1, 2리, 화천리, 도촌리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내성				
		동양	-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상운	- 하눌2리 중 배골 - 신라1, 2리는 청량중학구와 웅부중학구(안동)의 자유학구 (기타는 청량중학구)			
		봉성	-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물야	- 북지1리 21통 4반은 봉화중학구 - 수식리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기타는 물야중학구)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4) 물야	물야	- 수식리는 봉화중학구와 영주시중학교군(영주)의 자유학구 - 북지1리 21통 4반은 봉화중학구	물야중	(남녀공학)	
봉화군	(135) 춘양	춘양 소천초 임기분교 소천초 두음분교	- 삼동1리는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 갈산2리중 합강은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 서벽분교중학구 - 임기1, 2, 3리, 두음리(10통/1,2반), 눌산2리(10통/2,3반), 서천리는 소천중학구와 자유학구 - 임기3리 중 감전, 거내, 죽미는 소천중학구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는 청량중학구	춘양중	(남녀공학)	
봉화군	(136) 춘양중 서벽분교	서벽 춘양	- 애당1, 2리, 도심1, 2리 - 삼동1리는 청량중학구와 춘양중학구의 자유학구 - 갈산2리중 합강은 청량중학구와 춘양중학구의 자유학구 (기타는 춘양중학구) - 김삿갓면(강원) 내리4반 중 조제와 춘양면 우구치리 중 하금정은 녹전중(강원)과 자유학구	춘양중 서벽분교	(남녀공학)	
봉화군	(137) 소천	소천 분천분교 임기분교 삼근초옥방 분교(울진)	- 임기1, 2, 3리, 두음리 (10통/1,2반), 눌산2리 (10통/2,3반), 서천리는 춘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는 청량중학구	소천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봉화군	(138) 석포	석포		석포중	(남녀공학)	
봉화군	(139) 청량	명호 법전중앙 재산 상운 봉성 동양 춘양 소천초 임기분교 녹전초 원천분교 (안동) 이산(영주) 평은(영주)	 - 하눌2리중 배골은 봉화중학구 - 신라1, 2리는 웅부중학구 (안동)와 자유학구 - 봉화중학구와 자유학구 - 봉화중학구와 자유학구 - 삼동1리는 춘양중학구와 자유 학구 - 갈산2리 중 합강은 춘양중학 구와 자유학구 - 애당1, 2리, 도심1, 2리는 춘양중서벽분교중학구 (기타는 춘양중학구) - 갈산1리 중 공이, 갈산2리 - 임기3리 중 감전, 거내, 죽미는 소천중학구 (기타는 춘양중학구와 소천중 학구의 자유학구) - 원천1, 2리, 매징리는 웅부중 학구(안동)와 자유학구 [기타는 웅부중학구(안동)] - 두월리는 영주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 - 천본1리 중 윗두들 - 강동1리 중 왕류는 북후중학구 (안동) [기타는 영주시중학교군(영주)]	청량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울진군	(140) 울진	울진 울진남부 부구초삼당 분교 삼근 죽변 노음	 - 명도2리, 정림2리 - 소곡1리는 부구중학구 (기타는 죽변중학구) - 구산3리는 매화중학구	울진중	(남녀공학)	
울진군	(141) 평해	평해 월송 기성초구산분교	- 학곡2리 남자는 후포중학구	평해중	(남녀공학)	
울진군	(142) 부구	부구 죽변	- 고목1, 2리, 덕천리는 죽변 중학구 - 소곡1리 - 명도2리, 정림2리는 울진중학구 (기타는 죽변중학구)	부구중	(남녀공학)	
울진군	(143) 매화	매화 노음	 - 구산3리 (기타는 울진중학구)	매화중	(남녀공학)	
울진군	(144) 기성	기성 사동분교		기성중	(남녀공학)	
울진군	(145) 온정	온정	- 덕인2, 3리는 후포중학구	온정중	(남녀공학)	
울진군	(146) 죽변	죽변 부구	- 명도2리, 정림2리는 울진중학구 - 소곡1리는 부구중학구 - 고목1, 2리, 덕천리 (기타는 부구중학구)	죽변중	(남녀공학)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학구

시군명	중학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 고
		교 명	마 을 명	남	여	
울진군	(147) 후포	후포 후포동부 평해 온정	 - 학곡2리 남자 (기타는 평해중학구) - 덕인2, 3리 (기타는 온정중학구)	후포중	(남녀공학)	
울릉군	(148) 울릉	울릉 저동 남양 천부 현포분교		울릉중	(남녀공학)	

【별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중학교의 희망 배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중학교)의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배정 대상 학생은 아래 표와 같이 작은 학교(중학교)로도 지원 할 수 있다.

【큰 학교(중학교)에서 작은 학교(중학교)로 일방향 이동 가능】

시군명	【큰 학교】 (중학교)	중학교군· 중학구	【작은 학교】 (중학교)	중학교군· 중학구	비고
포항	신흥중(남녀공학) 포항포은중(남녀공학) 오천중(남녀공학)	오천중학교군	장기중(남녀공학)	장기중학구	
김천	율곡중(남녀공학)	율곡중학구	지품천중(남녀공학)	지품천중학구	
안동	풍천중(남녀공학)	풍천중학구	풍산중(남녀공학)	풍산중학구	
경산	경산중(남) 장산중(남녀공학) 사동중(남녀공학) 삼성현중(남녀공학) 문명중(남) 경산여중(여)	경산시중학교군	용성중(남녀공학)	용성중학구	
군위	군위중(남녀공학)	군위중학구	군위중우보분교(남녀공학)	우보중학구	
고령	고령중(남녀공학)	고령중학구	쌍림중(남녀공학)	쌍림중학구	
성주	성주중(남)	성주중학구	용암중(남녀공학)	용암중학구	
칠곡	왜관중(남녀공학) 석전중(남녀공학) 순심중(남) 순심여중(여)	왜관중학교군	신동중(남녀공학)	신동중학구	
봉화	봉화중(남녀공학)	봉화중학구	물야중(남녀공학)	물야중학구	
봉화	봉화중(남녀공학)	봉화중학구	소천중(남녀공학)	소천중학구	
울진	울진중(남녀공학)	울진중학구	매화중(남녀공학)	매화중학구	

【별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초등학교의 희망 배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초등학교) 통학 구역 거주지 내 주소를 둔 학생이 작은 학교(초등학교) 졸업 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배정은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의 초등학교와 졸업한 기준의 초등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 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 중학구	비고
경주	경주초 동방초 황성초 흥무초 동천초 유림초 용강초 용황초 금장초 불국사초 안강제일초 산대초 입실초 건천초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불국중학구 안강중학구 안강중학구 외동중학구 무산중학구	사방초 괘릉초 양동초	경주시중학교군 불국중학구 안강중학구	
김천	율곡초	율곡중학구 (대신1~3리, 봉산1~3리는 아포중학구와 자유학구)	개령초	개령중학구	
구미	선산초	선산중학구 (생곡리, 신기리는 도개중학구와 자유학구)	옥성초	선산중학구	
영천	영천중앙초 포은초	영천시중학교군 영천시중학교군	거여초	금호중학구	

시군명	【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	중학교군· 중학구	【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	중학교군· 중학구	비고
상주	상주초	상주시중학교군 [신촌1, 2리, 고곡1, 2리 (눈더기 제외), 북장리는 내서중학구와 자유학구]	외남초	청리중학구	
	상산초	상주시중학교군			
	상주중앙초	상주시중학교군			
	상영초	상주시중학교군			
	성동초	상주시중학교군			
영양	영양초	영양중학구	일월초	영양중학구 (수비중학구와 자유학구)	
영덕	영해초	영해중학구 (축산면 고곡1, 2리, 상원리, 부곡리, 도곡1, 2리, 칠성1, 2리, 조항리, 대곡리, 기임2리는 축산중학구와 자유학구)	창수초	영해중학구	
고령	다산초	다산중학구	박곡초	성산중학구	
예천	예천초	【남】 예천중학교군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상리초	은풍중학구	
			은풍초	은풍중학구	
봉화	내성초	봉화중학구	봉성초	봉화중학구 (청량중학구와 자유학구)	
울진	울진초	울진중학구	노음초	매화중학구	
	울진남부초		매화초	매화중학구	

[붙임 2]

2020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신·구 대비표

중학교군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중략>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양서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천 <신설> 죽천 유강 <중략>		포항중 대도중 동지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포항항도중 상도중 송도중 대흥중 양학중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양덕중	포항여중 환호여중 동지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효자초등학교는 포항시1학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1) 포항시 제1학교군	<중략> 포항장흥 포항장원 포항양덕 양서 대이 포항송곡 포항해맞이 달전 학천 **초곡** 죽천 유강 <중략>		포항중 대도중 동지중 대동중 포항영신중 장흥중 포항항도중 상도중 송도중 대흥중 양학중 창포중 포항이동중 유강중 양덕중	포항여중 환호여중 동지여중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남녀공학)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별지)와 같다. 1)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2019. 3 .1.자 초곡초 신설 2)초곡초는 흥해중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포항시제1학교군 배정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 학 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김천시	(6) 김천시	<중략> 김천모암 김천동부 양천 김천신일 김천부곡 <중략>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김천시	(6) 김천시	<중략> 김천모암 김천동부 <삭제> 김천신일 김천부곡 <중략>		김천중앙중 김천중 성의중 석천중 문성중	김천여중 성의여중 한일여중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 학교는 [별지]와 같다. 2019. 3. 1.자 양천초 폐교
영주시	(9) 영주시	<중략> 감천(예천) <중략>	- 기곡2리 중한밤실 [기타는 감천중학구(예천)]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영주시	(9) 영주시	<중략> 감천(예천) <중략>	-기곡2리 중한밤실은 감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기타는 감천중학구(예천)]	영주중 영광중 대영중	영주여중 영광여중 동산여중	<수정>
의성군	(16) 안계	안계 이두초쌍호분교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의성군	(16) 안계	안계 이두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안계중 삼성중	(남녀공학)	남학생 (여학생은 안계중) <수정> 2019. 3 .1. 자 이두초쌍호분교 폐교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 학 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예천군	(20) 예천	예천	-황산리,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예천중 대창중			예천군	(20) 여천	예천	-황산리,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예천중 대창중		2019. 3. 1.자 호명초 신설에 따른 조정
		예천동부 예천남부	<생략>						예천동부 예천남부	<삭제>			
		<신설>	<신설>						호명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2019. 3. 1.자 호명초 신설
		풍천풍서(안동)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7, B-1-1/2/3 B-2-1/2, B-3-1/2, B-4-1/2, B-5, B-6-1/2, B-8-1/2, D-1/2/3/4/5/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풍천풍서(안동)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수정>
		유천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유천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대상학교 현황

현행					개정안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고	학 교 명	마 을 명	성별	선배정학교	비고
<신설>		<신설>	<신설>		초곡초등학교		남·여	흥해중학교	<포항> 2019. 3. 1.자 초곡초 신설
황남초등학교	<신설>	남 여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황남초등학교	구 황남초등학교 학구 -황남동: 21-24통, 26통 (3반 서편제외), 27통 -월성동: 2통(1반, 2반(서편), 4반), 3통, 5통, 7통(3반) -황오동: 25통(3-4반), 27-28통 -중부동: 12통(2,3반)	남 여 여	경주중학교 경주여자중학교 선덕여자중학교	<경주> 2019. 3. 1.자 황남초 이전 구 황남초 통학구역을 희망에 의한 선배정

중학구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 (구)명	초 등 학 교		중 학 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포항시	(8)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남녀공학)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8) 제철	제철 제철지곡 효자		포항제철중	포항제철여중	<수정> 2020. 3 .1.자 포항제철여중 신설 효자초는 포항시제1학교군 및 제철중학구와 추첨에 의한 배정
포항시	(13) 흥해	흥해 흥해남산 흥해서부 곡강 <신설>		흥해중	(남녀공학)		포항시	(13) 흥해	흥해 흥해남산 흥해서부 곡강 초곡		흥해중	(남녀공학)	2019. 3. 1.자 초곡초 신설 초곡초는 흥해중학구 희망에 의한 선배정 후 나머지 인원은 포항시제1학교군 배정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안동시	(31) 풍천	풍천풍서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B-1-1,2,3, B-2-1,2, B-3-1,2, B-4-1,2, B-5, B-6-1,2, B-7, B-8-1,2, D-1, D-2, D-3, D-4, D-5, D-6은 예천중학교군과 자유학구	풍천중	(남녀공학)		안동시	(31) 풍천	풍천풍서	단,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남】 예천중학교군(예천)과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풍천중	(남녀공학)	<수정> 2019. 3. 1. 풍천풍서초 일부 학구가 호명초 학구로 변경
		신성							신성				
		<신설>	<신설>						호명(예천)	【남】 예천중학교군(예천)과 자유학구 【여】 예천중학구(예천)와 자유학구			2019. 3. 1. 호명초 신설
		예천남부	백송리, 오천리, 본포리(머골제외), 금능3리, 한어3, 원곡리(범우리개 제외), 송곡리, 본리, 산합1, 2리는 예천중학교군과 자유학구(기타는 예천중학교군)						<삭제>	<삭제>			2019. 3. 1. 예천남부초 일부 학구가 호명초 학구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의성군	(84) 경북중부	안평	- 대사1리는 봉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경북중부중	(남녀공학)		의성군	(84) 경북중부	안평	- 대사1리는 봉양중학구와 자유학구 - 신안3리는 의성중학구	경북중부중	(남녀공학)	
		신평분교 이두	<신설>						신평분교 이두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는 안계중학교군 및 안계중학구와 자유학구			2019. 3 .1.자 이두초쌍호분교 폐교에 따른 조정
		송원(군위) 단밀 가음 춘산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학구)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송원(군위) 단밀 가음 춘산	-사리2리 (기타는 군위중학구)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금성중학구와 자유학구			
		이두초 쌍호분교	- 안계중학교군 및 안계중학구와 자유학구						<삭제>	<삭제>			2019. 3 .1.자 이두초쌍호분교 폐교
의성군	(85) 안계	구천 안계 이두초 쌍호분교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안계중	(남녀공학)	-구천초등학교: 남·여학생	의성군	(85) 안계	구천 안계 이두	-안사1, 2리, 중하1, 2, 3리, 만리1, 2리, 신수1, 2리, 월소1, 2, 3리, 쌍호1, 2리 경북중부중학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경북중부중학구)	안계중	(남녀공학)	-구천초등학교: 남, 여학생 <수정> 2019. 3 .1.자 이두초쌍호분교 폐교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예천군	(129) 감천	감천	-기곡2리중 한밤실은 영주시중학교군(영주)	감천중	(남녀공학)		예천군	(129) 감천	감천	-기곡2리중 한밤실은 영주시중학교군(영주)과 자유학구	감천중	(남녀공학)	<수정>
예천군	(131)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신설> 풍천풍서(안동) 유천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생략> <신설>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7, B-1-1/2/3 B-2-1/2, B-3-1/2, B-4-1/2, B-5, B-6-1/2, B-8-1/2, D-1/2/3/4/5/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예천여중		예천군	(131) 예천	예천 예천동부 예천남부 호명 풍천풍서(안동) 유천	-황산리, 입암리는 용궁중학구와 자유학구 <삭제>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내 A-1, B-5, B-6-1/2, B-7, B-8-1/2, D-3, D-4, D-5, D-6은 풍천중학구(안동)와 자유학구 -노사2리는 용문중학구		예천여중	2019. 3. 1. 자 호명초 신설에 따른 학구 조정 2019. 3. 1. 자 호명초 신설 <수정>

현 행							개 정 안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시군명	중학군(구)명	초등학교		중학교		비고
		교명	마을명	남	여				교명	마을명	남	여	
울진군	(140) 울진	울진 울진남부 부구초삼당분교 삼근 왕피분교 죽변 노음	 -명도2리, 정림2리 -소곡1리는 부구중학구(기타는 죽변중학구) - 구산3리는 매화중학구	울진중	(남녀공학)		울진군	(140) 울진	울진 울진남부 부구초삼당분교 삼근 <삭제> 죽변 노음	 - 명도2리, 정림2리 - 소곡1리는 부구중학구(기타는 죽변중학구) - 구산3리는 매화중학구	울진중	(남녀공학)	2019. 3. 1.자 삼근초 왕피분교 폐교
울릉군	148) 울릉	울릉 <신설> 남양 <신설> <신설>	 -남양3리는 서면중구와 자유학구 (기타는 서면중학구)	울릉중	(남녀공학)		울릉군	148) 울릉	울릉 저동 남양 천부 현포분교	 <삭제> 	울릉중	(남녀공학)	2020. 3. 1.자 울릉중 신설
울릉군	(149) 서면	남양	-남양3리는 울릉중구와 자유학구	울릉서중	(남녀공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20. 3. 1.자 울릉서중 폐교
울릉군	(150) 울릉북	천부 현포분교		울릉북중	(남녀공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20. 3. 1.자 울릉북중 폐교
울릉군	(151) 우산	저동		우산중	(남녀공학)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020. 3. 1.자 우산중 폐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중학교의 희망 배정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신설></td><td>【별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중학교의 희망 배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중학교)의 중학교군 및 중학구의 배정 대상 학생은 아래 표와 같이 작은 학교(중학교)로도 지원할 수 있다.

【큰 학교(중학교)에서 작은 학교(중학교)로 일방향 이동 가능】

<table>
<tr><th>시군명</th><th>【큰 학교】
(중학교)</th><th>중학교군·
중학구</th><th>【작은 학교】
(중학교)</th><th>중학교군·
중학구</th><th>비고</th></tr>
<tr><td>포항</td><td>신흥중(남녀공학)
포항포은중(남녀공학)
오천중(남녀공학)</td><td>오천중학교군</td><td>장기중(남녀공학)</td><td>장기중학구</td><td></td></tr>
<tr><td>김천</td><td>율곡중(남녀공학)</td><td>율곡중학구</td><td>지품천중(남녀공학)</td><td>지품천중학구</td><td></td></tr>
<tr><td>안동</td><td>풍천중(남녀공학)</td><td>풍천중학구</td><td>풍산중(남녀공학)</td><td>풍산중학구</td><td></td></tr>
<tr><td><후략></td><td><후략></td><td><후략></td><td><후략></td><td><후략></td><td></td></tr>
</table>
</td></tr>
</table>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초등학교의 희망 배정

<table>
<tr><th>현행</th><th>개정안</th></tr>
<tr><td><신설></td><td>【별지】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 초등학교의 희망 배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시행에 따라 큰 학교(초등학교) 통학구역 거주지 내 주소를 둔 학생이 작은 학교(초등학교) 졸업 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배정은 학생이 거주하는 주소지 기준의 초등학교와 졸업한 기준의 초등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table>
<tr><th>시군명</th><th>【큰 학교】
초등학교
(주소지 기준)</th><th>중학교군·
중학구</th><th>【작은 학교】
초등학교
(졸업교 기준)</th><th>중학교군·
중학구</th><th>비고</th></tr>
<tr><td>경주</td><td>경주초
동방초
황성초
흥무초
동천초
유림초</td><td>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
경주시중학교군</td><td>사방초

괘릉초

양동초</td><td>경주시중학교군

불국중학구

안강중학구</td><td></td></tr>
<tr><td><후략></td><td><후략></td><td><후략></td><td><후략></td><td><후략></td><td></td></tr>
</table>
</td></tr>
</table>

●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312회 정례회)

●

2020. 1. 인쇄 / 2020. 1.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